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 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차 례

I. 개 관	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가. 총수입 · 총지출	1
나. 예산안	2
다. 기금운용계획안	3
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4
(1) 2025년도 예산안의 특징	4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특징	5
2. 일반회계	6
가. 세 입	6
나. 세 출	7
(1) 지출성질별 · 프로그램별 내역	7
(2) 증액사업	9
(3) 감액사업	10
(4)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비 현황	11
3. 교도작업특별회계	16
가. 세 입	16
나. 세 출	17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
가. 수 입	19
나. 지 출	20
II. 검토의견	23
1. 일반회계	23

◆ 세 입 ◆	23
가. 기타재산이자수입	23
(1) 예산안 개요	23
(2) 예년 대비 높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증액 편성 필요	23
나. 위약금	26
(1) 예산안 개요	26
(2) 보호일시해제 및 출국명령이행 보증금의 수납 실적 감소분을 고려한 세입 예산 감액 필요	27
◆ 세 출 ◆	32
가. 법무활동	32
(1) 기업환경지수 개선	32
(가) 예산안 개요	32
(나) 사업 간 연계 추진 등을 통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32
(2)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37
(가) 예산안 개요	37
(나) 해외출장 예산의 관행적 편성 지양 필요	37
(3) 법무실 기본경비	42
(가) 예산안 개요	42
(나) 조직개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반영 필요	42
나. 인권활동	49
(1) 법률구조	49
(가) 예산안 개요	49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예산 조정 및 편성 구체화 필요	50
(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및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감액 조정 필요	56
(2)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관련	62
(가) 예산안 개요	62
(나) 실소요를 반영한 국외업무경비 편성 및 계획에 따른 집행 필요	63

다. 출입국관리 활동	67
(1) 이민정책연구원운영	67
(가) 예산안 개요	67
(나) 이민정책연구원 이전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67
(2) 외국인보호관리	72
(가) 예산안 개요	72
(나) 장기공석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산 감액 및 의료인력의 조속한 확충 필요	72
(3) 외국인사회통합지원	77
(가) 예산안 개요	77
(나) 난민생계비의 적정수준 분석 및 지급 방안 마련 필요	77
(다) 조기적응프로그램 목표 교육인원을 충족할 수 있는 수강비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81
(4)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85
(가) 예산안 개요	85
(나) 비자 전환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 및 전환 쿼터 달성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85
라. 검찰활동	92
(1) 검찰 특수활동비	92
(가) 예산안 개요	92
(나)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및 관련 검토 사항	92
(2)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형사부 등 수사지원 등 3개 세부사업)	98
(가) 예산안 개요	98
(나)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99
(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102
(가) 예산안 개요	102
(나)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실적 감소를 고려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재검토 필요	102
(4)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109

(가) 예산안 개요	109
(나) 신규 도입된 검찰 정보화 장비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109
(다) 불요불급하게 신규 편성된 일반수용비 항목 감액 필요	112
(5)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115
(가) 예산안 개요	115
(나) 신규 편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15
(다)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의 최근 집행 실적을 반영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119
(6) 공공수사 사업	123
(가) 예산안 개요	123
(나) 2025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 감액 검토 필요	123
(7)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128
(가) 예산안 개요	128
(나) 신규 편성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 준비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28
(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133
(가) 예산안 개요	133
(나) 연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및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33
(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대응 사업의 적극적 사업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137
마. 국제법무활동	140
(1)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140
(가) 예산안 개요	140
(나)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을 하나의 세부사업에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	140
(2)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46
(가) 예산안 개요	146
(나) 사업 성과 파악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 추가확보 노력 필요	147
바. 교정활동	151
(1) 교도소행정지원	151

(가) 예산안 개요	151
(나) 교정공무원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정신건강회복 지원 예산 비목 변경 필요	152
(다) 교정정책연구비 적정성 검토 필요	158
(2)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162
(가) 예산안 개요	162
(나) 경북북부 교도소 진입교량 보수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 및 정밀안전 진단 횟수 축소 필요	163
(다) 영상감시장비(CCTV) 교체 대상의 종류별 구분 편성 필요	167
(3)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71
(가) 예산안 개요	171
(나) 신규 대체복무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적정성 검토 필요	172
(4) 교정교화	177
(가) 예산안 개요	177
(나)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가진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사업 관리 철저	178
사. 범죄예방활동	183
(1) 소년원생수용 사업	183
(가) 예산안 개요	183
(나) 출원생 외래진료비 지원 활성화 필요	183
(다) 임상연구비 등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187
(2)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195
(가) 예산안 개요	195
(나) 유희병동 운영 재개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	195
(다) 의사 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200
(3) 전자감독 사업	205
(가) 예산안 개요	205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 기준 마련 필요	205

아. 특별감찰관활동	210
(1) 예산안 개요	210
(2)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무실 이전 적극 추진 필요	211
자. 법무교육훈련	216
(1)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	216
(가) 예산안 개요	216
(나)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지연 해소방안 및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216
차.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220
(1)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220
(가) 예산안 개요	220
(나) 청년인턴 사업 개요 및 법무부 청년인턴 운용 현황	220
(다)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의 효과적 충원·운영을 위한 배정 기준 등 개선 필요	222
(라) 2024년 집행실적 및 2025년 집행계획을 고려한 청년인턴 운영 예산(활동 지원비 및 교통비) 감액 조정 필요	225
(2)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230
(가) 예산안 개요	230
(나) 신규 도입된 전산장비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230
(다) 용도 추가된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목적 자산취득비의 세부 편성내역 조정 필요	232
(3) 기관운영 기본경비	236
(가) 예산안 개요	236
(나) 연합뉴스 구독료 신규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236
2. 교도작업특별회계	239
가. 특별회계 개요	239
나. 주요 검토사항	241
◆ 세 출 ◆	241

(1) 직업훈련 사업	241
(가) 예산안 개요	241
(나) 학점은행제 훈련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의종류의 연관성 및 훈련 기관 간의 형평성 유지 필요	241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47
가. 기금 개요	247
나. 주요 검토사항	249
◆ 수 입 ◆	249
(1) 기타재산이자수입	249
(가) 계획안 개요	249
(나) 여유자금 회수 규모를 고려한 세입 증액 편성 필요	249
(2) 일반회계전입금	254
(가) 계획안 개요	254
(나) 법정전입금에 따른 정산절차 이행 및 벌금 예산안과의 연계 편성 필요	254
◆ 지 출 ◆	260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60
(가) 계획안 개요	260
(나)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종사자 교육의 집행 및 실적 개선 필요	262
(2)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265
(가) 계획안 개요	265
(나) 신변보호장치 예산 감액 및 임시안전숙소 예산 증액 조정 필요	266
(다) 민간경호지원사업의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271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277
(가) 계획안 개요	277
(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체계 재검토를 통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예산 일부 감액 조정 필요	278

I.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가. 총수입 · 총지출

-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1조 6,138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192억 원(15.7%) 증가함. 세부적으로, 예산은 1조 6,0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5억 원(15.7%) 증가하고, 기금은 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13.8%) 증가함.
-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4조 4,774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34억 원(2.6%) 증가함. 세부적으로, 예산은 4조 3,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5억 원(2.5%) 증가하고, 기금은 9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원(6.7%) 증가함.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 총지출(내부거래 제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기금		2025년 예산기금 (안) (B)	2024년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B-A)	%
수입	예산	1,389,745	1,389,745	1,608,229	218,484	15.7
	기금	4,931	4,931	5,613	682	13.8
	계	1,394,676	1,394,676	1,613,842	219,166	15.7
지출	예산	4,275,346	4,275,346	4,382,837	107,491	2.5
	기금	88,654	88,654	94,593	5,939	6.7
	계	4,364,000	4,364,000	4,477,430	113,430	2.6

* 자료: 법무부

나. 예산안

-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포괄하는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6,082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84억 8,400만원(15.7%) 증액되었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436억 8,3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1조 3,249억 3,000만원 대비 16.5%에 해당하는 2,187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36억 8,0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1,205억 2,900만원 대비 2.6%에 해당하는 3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포괄하는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조 5,242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01억 1,900만원(2.5%) 증액되었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4,005억 4,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4조 2,935억 7,800만원 대비 2.5%에 해당하는 1,06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36억 8,0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1,205억 2,900만원 대비 2.6%에 해당하는 3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2024년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B-A)	%
세입	일반회계	1,324,930	1,324,930	1,543,683	218,753	16.5
	교도작업 특별회계	120,529	120,529	123,680	3,151	2.6
	계	1,445,459	1,445,459	1,667,363	221,904	15.4
세출	일반회계	4,293,578	4,293,578	4,400,546	106,968	2.5
	교도작업 특별회계	120,529	120,529	123,680	3,151	2.6
	계	4,414,107	4,414,107	4,524,226	110,119	2.5

* 자료: 법무부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지출액은 1,448억 7,700만원으로 2024년도 수입·지출액 1,370억 5,400만원 대비 5.7%에 해당하는 7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안(B)	2024년 대비	
	당초	수정(A)		증감(B-A)	%
수 입	137,054	137,054	144,877	7,823	5.7
지 출	137,054	137,054	144,877	7,823	5.7

* 자료: 법무부 (총계 기준)

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1) 2025년도 예산안의 특징

-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으로 ① 첨단·지능범죄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② 범죄피해자 등의 포용적 인권보호, ③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범죄 대응 역량 제고, 전자감독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정신질환자 심리적 개입 강화 등 스마트한 범죄 예방 실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둘째,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의 서비스를 연계 강화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셋째,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을 위해 외국인력 유치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항만에서의 밀입국 적발활동 강화 및 크루즈관광객 전용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충 등 인구감소 대응 및 국경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특징

-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특징은 범죄 피해자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조력 서비스 확대·내실화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의 예산을 2024년 210억 9,900만원에서 2025년 214억 4,2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둘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24년 373억 5,400만원에서 2025년 394억 1,3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셋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의 예산을 2024년 34억 4,600만원에서 2025년 55억 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2.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조 5,436억 8,300만원은 2024년도 예산 1조 3,249억 3,000만원 대비 16.5% 증액 계상된 것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조 4,719억 6,700만원
- 면허료 및 수수료	593억 700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79억 4,500만원
- 관유물 대여료	11억 1,100만원
- 기 타	33억 5,300만원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2023년 대비	
			증감(B-A)	%
합 계	1,324,930	1,543,683	218,753	16.5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271,964	1,471,967	200,003	15.7
면허료 및 수수료	39,399	59,307	19,908	50.5
기타경상이전수입	9,094	7,945	△1,149	△12.6
관유물 대여료	1,419	1,111	△308	△21.7
기타	3,054	3,353	299	9.8

* 자료: 법무부

나. 세 출

(1) 지출성질별·프로그램별 내역

○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4,005억 4,600만원은 2024년도 예산 4조 2,935억 7,800만원 대비 2.5% 증액 계상된 것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출성질별로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	2조 6,610억 8,000만원	(비중: 60.5%)
- 기본경비	1,677억 3,200만원	(비중: 3.8%)
- 주요사업비	1조 4,829억 7,200만원	(비중: 33.7%)
- 기금전출금	887억원 6,200만원	(비중: 2.0%)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비는 총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법무활동	1,533억 5,600만원	(비중: 3.6%)
- 인권활동	735억 2,200만원	(비중: 1.7%)
- 출입국관리	1,632억 1,400만원	(비중: 3.8%)
- 검찰활동	3,537억 9,600만원	(비중: 8.2%)
- 국제법무활동	61억 1,700만원	(비중: 0.1%)
- 교정활동	4,561억 5,800만원	(비중: 10.6%)
- 범죄예방활동	1,715억 8,400만원	(비중: 4.0%)
- 특별감찰관활동	4억 400만원	(비중: 0.0%)
- 법무교육훈련	81억 5,900만원	(비중: 0.2%)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966억 6,200만원	(비중: 2.3%)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계상내역 및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비중	2024년 대비	
	본예산	비중	추경(A)			증감(B-A)	증감율
합 계	4,176,002	100.0	4,176,002	4,289,857	100.0	113,855	2.7
◇ 인 건 비	2,621,040	61.0	2,621,040	2,661,080	60.5	40,040	1.5
◇ 기 본 경 비	159,954	3.7	159,954	167,732	3.8	7,778	4.9
◇ 주요사업비	1,426,463	33.2	1,426,463	1,482,972	33.7	56,509	4.0
■ 법무활동	121,300	2.9	121,300	153,356	3.6	32,056	26.4
■ 인권활동	70,505	1.7	70,505	73,522	1.7	3,017	4.3
■ 출입국관리	144,332	3.5	144,332	163,214	3.8	18,882	13.1
■ 검찰활동	350,182	8.4	350,182	353,796	8.2	3,614	1.0
■ 국제법무활동	6,542	0.2	6,542	6,117	0.1	△425	△6.5
■ 교정활동	446,830	10.7	446,830	456,158	10.6	9,328	2.1
■ 범죄예방활동	164,395	3.9	164,395	171,584	4.0	7,189	4.4
■ 특별감찰관활동	404	0.0	404	404	0.0	—	—
■ 법무교육훈련	7,782	0.2	7,782	8,159	0.2	377	4.8
■ 행정지원	114,191	2.7	114,191	96,662	2.3	△17,529	△15.4
◇ 기금전출금	86,121	2.0	86,121	88,762	2.0	2,641	4.0

* 자료: 법무부

(2) 증액사업

○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사업 예산이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25억원 증액되었음(증가율 988.1%).
-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 (1631-305)이 기존 출연금 확대 및 연차소요 반영으로 11억 2,3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128.1%).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1232-304) 사업 예산이 외국인력 등 등록수요 증가에 따라 40억 9,2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71.1%).

〈2025년도 주요 증액사업(2024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액 규모 (B-A)	증액율 (%) (B-A)/A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A)				
1	기업환경지수개선 (1032-307)	253	253	2,753	2,500	988.1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강화
2	재범징후선제적감지 및대응력강화(R&D) (1631-305)	877	877	2,000	1,123	128.1	기존 과업 출연금 확대 및 연차소요 반영
3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1232-304)	5,757	5,757	9,849	4,092	71.1	외국인력 등 등록수요 증가

* 자료: 법무부

(3) 감액사업

○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주요 감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타법무시설개보수 및 확충(7039-300) 사업 예산이 리모델링 사업의 국유기금으로의 통·폐합으로 67억 200만원 감액되었음(감액율 61.8%).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7038-300) 사업 예산이 유지보수 사업 이관 등으로 42억 9,300만원 감액되었음(감액율 60.5%).
-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사업 예산이 정책연구용역비 절감 등으로 1억 9,600만원 감액되었음(감액율 50.8%).

<2025년도 주요 감액사업(2024년도 예산 대비 35% 이상)>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감액 규모 (B-A)	감액율 (%) (B-A)/A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1	기타법무시설 개보수및확충 (7039-300)	10,843	10,843	4,141	△6,702	△61.8	리모델링 사업 국유기금 통·폐합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7038-300)	7,096	7,096	2,803	△4,293	△60.5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이관
3	이민정책개발지원 (1231-300)	386	386	190	△196	△50.8	정책연구용역비 절감

* 자료: 법무부

(4)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비 현황

-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활동, 인권활동, 출입국관리, 검찰활동, 국제법무활동, 교정활동, 범죄예방활동, 특별감찰관활동, 법무교육훈련,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등 10개 프로그램 하에 세부사업 77개가 있음.

<2025년도 세부사업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안) (B)	2024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합 계	1,426,463	1,426,463	1,482,972	56,509	4.0
법무활동	121,300	121,300	153,356	32,056	26.4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4,022	4,022	2,961	△1,061	△26.4
국가배상금 지급	100,000	100,000	131,765	31,765	31.8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658	658	678	20	3.0
기업환경지수개선	253	253	2,753	2,500	988.1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5,162	5,162	4,659	△503	△9.7
성장동력확충을위한 기업법제선진화	3,400	3,400	2,595	△805	△23.7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820	820	826	6	0.7
변호사제도의선진화	744	744	779	35	4.7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5,197	5,197	5,283	86	1.7
통일대비법률통합 실질화	766	766	771	5	0.7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안) (B)	2024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78	278	286	8	2.9
인권활동	70,505	70,505	73,522	3,017	4.3
법률구조	64,817	64,817	67,697	2,880	4.4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998	4,998	5,143	145	2.9
인권교육	204	204	191	△13	△6.4
아동인권 증진	245	245	245	-	-
국제인권역량강화	241	241	246	5	2.1
출입국관리	144,332	144,332	163,214	18,882	13.1
이민정책개발지원	386	386	190	△196	△50.8
이민정책연구원운영	2,562	2,562	3,455	893	34.9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	51,419	51,419	55,163	3,744	7.3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5,757	5,757	9,849	4,092	71.1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4,608	24,608	30,410	5,802	23.6
외국인보호관리	22,287	22,287	21,372	△915	△4.1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5,427	15,427	17,939	2,512	16.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11,132	11,132	10,927	△205	△1.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754	10,754	13,909	3,155	29.3
검찰활동	350,182	350,182	353,796	3,614	1.0
검찰청시설운영	82,041	82,041	82,703	662	0.8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924	7,924	7,957	33	0.4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안) (B)	2024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1,021	11,021	12,250	1,229	11.2
국제형사협력지원 (ODA)	2,701	2,701	2,509	△192	△7.1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5,457	25,457	24,208	△1,249	△4.9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연구개발(R&D)	1,800	1,800	2,400	600	33.3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36,839	36,839	33,339	△3,500	△9.5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419	10,419	10,059	△360	△3.5
형사부등 수사지원	86,475	86,475	87,963	1,488	1.7
공공수사	3,276	3,276	3,438	162	4.9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4,644	14,644	15,408	764	5.2
마약수사	8,204	8,204	9,958	1,754	21.4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3,481	3,481	3,704	223	6.4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252	6,252	6,252	-	-
공판활동지원	2,037	2,037	2,037	-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7,262	7,262	7,262	-	-
형사보상	40,000	40,000	42,000	2,000	5.0
형사법정비	349	349	349	-	-
국제법무활동	6,542	6,542	6,117	△425	△6.5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381	381	516	135	35.4
국제거래및국제통상 법률지원	728	728	734	6	0.8
개발도상국법제정비 지원(ODA)	158	158	150	△8	△5.1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275	5,275	4,717	△558	△10.6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안) (B)	2024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교정활동	446,830	446,830	456,158	9,328	2.1
교도소행정지원	48,515	48,515	51,516	3,001	6.2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00,834	100,834	85,596	△15,238	△15.1
대체복무시설개선 및 운영	16,459	16,459	17,241	782	4.8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69,102	269,102	290,348	21,246	7.9
교정교화	11,920	11,920	11,457	△463	△3.9
범죄예방활동	164,395	164,395	171,584	7,189	4.4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5,568	15,568	17,373	1,805	11.6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	877	877	2,000	1,123	128.1
소년원생수용	26,887	26,887	26,971	84	0.3
청소년비행예방	5,447	5,447	5,577	130	2.4
갱생보호활동	48,124	48,124	46,856	△1,268	△2.6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2,680	12,680	12,581	△99	△0.8
보호관찰활동	16,114	16,114	17,102	988	6.1
전자감독	32,427	32,427	36,847	4,420	13.6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6,271	6,271	6,277	6	0.1
특별감찰관활동	404	404	404	-	-
특별감찰활동	404	404	404	-	-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024 예산		2025 예산(안) (B)	2024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법무교육훈련	7,782	7,782	8,159	377	4.8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5,032	5,032	5,437	405	8.0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1,605	1,605	1,577	△28	△1.7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37	137	137	-	-
신임검사양성 및 교육지원	1,008	1,008	1,008	-	-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114,191	114,191	96,662	△17,529	△15.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608	608	608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20	120	120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7,993	17,993	20,107	2,114	11.7
정보기획지원	33	33	37	4	12.1
양성평등정책 지원	233	233	233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39,117	39,117	41,485	2,368	6.1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00	800	811	11	1.4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7,096	7,096	2,803	△4,293	△60.5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9,722	29,722	20,751	△8,971	△30.2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10,843	10,843	4,141	△6,702	△61.8
법무부 기록관 운영	7,626	7,626	5,566	△2,060	△27.0

3. 교도작업특별회계

-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¹⁾에 근거를 두고 있음.

가. 세 입

- 202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1,236억 8,000만원은 2024년도 예산액 1,205억 2,900만원 대비 2.6%(31억 5,100만원)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도소수입	643억 4,300만원	(전년동)
- 기금예탁원금회수	470억 원	(1.1% 증)
- 전년도세계잉여금	93억 8,800만원	(43.1% 증)
- 기금예탁이자수입	27억 4,600만원	(3.5% 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1억 300만원	(전년동)
- 잡수입	1억 원	(72.9% 감)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 (B)	2024년 대비	
			증감 (B-A)	%
합 계	120,529	123,680	3,151	2.6
교도소수입	64,343	64,343	—	—
잡수입	369	100	△269	△72.9
기타경상이전수입	103	103	—	—
전년도세계잉여금	6,560	9,388	2,828	43.1
기금예탁원금회수	46,500	47,000	500	1.1
기금예탁이자수입	2,654	2,746	92	3.5

* 자료: 법무부

나. 세 출

○ 202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 1,236억 8,000만원은 2024년도 예산액 1,205억 2,900만원 대비 2.6%(31억 5,100만원)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도작업	621억 500만원	(5.9% 증)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526억 2,700만원	(0.0% 감)
- 직업훈련	43억 9,900만원	(5.6% 증)
- 시설보완	38억 9,700만원	(12.9% 감)
- 기본경비	6억 5,200만원	(8.8% 증)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2024년 대비	
			증감 (B-A)	%
합 계	120,529	123,680	3,151	2.6
교도작업	58,651	62,105	3,454	5.9
직업훈련	4,164	4,399	235	5.6
시설보완	4,475	3,897	△578	△12.9
기본경비	599	652	53	8.8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52,640	52,627	△13	△0.0

* 자료: 법무부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²⁾에 근거를 두고 있음.

가. 수 입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수입액은 1,448억 7,700만원으로 2024년도 수입액 1,370억 5,400만원 대비 5.7%(78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전입금	887억 6,200만원	(3.1% 증)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05억 200만원	(9.8% 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31억 6,400만원	(16.5% 증)
- 변상금	17억 1,900만원	(4.3% 감)
- 기타재산이자수입	7억 3,000만원	(75.1% 증)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액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기금 (A)	2025년 기금(안) (B)	2024년 대비	
			증감(B-A)	%
합 계	137,054	144,877	7,823	5.7
기타재산이자수입	417	730	313	75.1
변상금	1,797	1,719	△78	△4.3
기타경상이전수입	2,717	3,164	447	16.5
일반회계전입금	86,121	88,762	2,641	3.1
예치금회수	46,002	50,502	4,500	9.8

* 자료: 법무부

나. 지 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지출액은 1,448억 7,700만원으로 2024년도 지출액 1,370억 5,400만원 대비 5.7%(78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출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음.

- 주요사업비 945억 4,500만원 (6.7% 증)
- 통화금융기관 예치 480억 3,900만원 (4.8% 증)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 22억 3,000만원 (10.8% 감)
- 기금운영비 4,800만원 (전년동)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1,500만원 (69.4% 감)

○ 한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사업비 945억 4,500만원은 세부적으로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2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전년 대비 7.9% 증액된 400억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 생계비, 장례비 지원 강화를 위한 증액 편성 및 민간경호 사업 이관 등에 기인함.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전년 대비 5.8% 증액된 545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인상 등에 기인함.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기금(A)	2025년 기금(안)(B)	2024년 대비	
			증감(B-A)	%
합 계	137,054	144,877	7,823	5.7
◇ 주요사업비	88,606	94,545	5,939	6.7
〈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37,060	40,005	2,945	7.9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1,099	21,442	343	1.6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2,500	3,450	950	38.0
■ 범죄피해구조금	10,015	9,573	△442	△4.4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446	5,540	2,094	60.8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51,546	54,540	2,994	5.8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32	1,632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9,413	2,059	5.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2,560	13,495	935	7.4
◇ 기금운영비	48	48	—	—
◇ 통화금융기관 예치	45,851	48,039	2,188	4.8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	2,500	2,230	△270	△10.8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49	15	△34	△69.4

* 자료: 법무부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세 입 ◆

가. 기타재산이자수입

(1) 예산안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이자 수입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6,700만원(△20.2%) 감액된 2억 6,400만원이 계상됨.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554	331	264	△67	△20.2

(2) 예년 대비 높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증액 편성 필요

- 동 세입 수납실적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이며, 2025년 국고보조 이자 수입은 2024년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

게 되므로 2024년 금리에 영향을 받음.

- 법무부의 최근 5년 간 동 세입 수납실적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액은 연도별로 유사하게 편성(2020년~2024년 중 319백만원~331백만원 수준)되는 반면, 실제 수납액은 금리 변동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특히, 2024년의 경우 2023년 1월 3.50%까지 인상 후 2024년 10월까지 유지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2024년 9월까지의 수납실적이 예산액 대비 606.3%인 20억 700만원에 달하고 있음.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 연도별 예산액 대비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2020	339	437	430	127.0	7
2021	339	189	182	53.7	7
2022	319	147	140	43.9	7
2023	331	561	554	167.4	7
2024.9월말	331	2,136	2,007	606.3	129
2025 예산안	264	—	—	—	—

* 자료: 법무부

- 그럼에도 법무부는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을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의 평균 수납실적을 토대로 편성한바, 2024년 예산액 대비 오히려 6,700만원이 감액된 2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수납실적이 예산액의 절반 수준이었던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각각 수납실적에 영향을 준 전년도(2020년 및 2021년) 기준금리

수준이 0.50%~1.25%였고, 5억 5,400만원이 수납된 2023년의 경우 전년도(2022년) 기준금리 수준이 1.25%~3.25%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5년의 경우 수납실적 기준인 2024년 금리가 3.25%~3.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바,³⁾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소한 2023년 수납실적(5억 5,400만원) 이상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경과〉

발표날짜	기준금리	이전대비
2019. 7. 18.	1.50%	-25bp
2019. 10. 16.	1.25%	-25bp
2020. 3. 16.	0.75%	-50bp
2020. 5. 28.	0.50%	-25bp
2021. 8. 26.	0.75%	+25bp
2021. 11. 25.	1.00%	+25bp
2022. 1. 14.	1.25%	+25bp
2022. 4. 14.	1.50%	+25bp
2022. 5. 26.	1.75%	+25bp
2022. 7. 13.	2.25%	+50bp
2022. 8. 25.	2.50%	+25bp
2022. 10. 12.	3.00%	+50bp
2022. 11. 24.	3.25%	+25bp
2023. 1. 13.	3.50%	+25bp
2024. 10. 11.	3.25%	-25bp

* 자료: 한국은행

3) 2024년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지만,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연내 금리 동결 의견을 내는 등 2024년 중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기사 : 이데일리, 「금통위원 6명 중 5명, “내년 1월까지 추가 금리인하 없을 것”」, 2024. 10. 14.

나. 위약금

(1) 예산안 개요

- 위약금(12-57-572)은 「출입국관리법」⁴⁾상 보호일시해제제도 및 출국명령이행제도 보증금의 국고귀속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⁵⁾상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분(위약금 성격) 및 지체상금 등 법령과 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수입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8,500만원

4)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18.5%)이 증액된 1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위약금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위약금 (57-572)	1,494	1,541	1,826	285	18.5

(2) 보호일시해제 및 출국명령이행 보증금의 수납 실적 감소분을 고려한 세입예산 감액 필요

○ 위약금은 2021년을 기점으로 수납액이 크게 증가(2020년 수납액 3억 9,000만원, 2021년 수납액 16억원)하였음. 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각국이 한국 등 해외로부터의 자국민 입국마저 제한하여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의 과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가 동 보호시설 내 감염 예방 및 과밀도 해소를 위해 운영한 ‘보호일시해제제도’ 및 ‘출국명령이행보증제도’ 관련 보증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즉, ① 「출입국관리법」 제65조6)의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일시해제 조건 위반에 따른 보증금 및 위약금 등의 귀속 사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고, ② 2021년부터 신규 도입된 출국명령이행보증제도7)의 경우 출국조건 위반자의 예치금을 국고로 귀속

6)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서 위약금 세입이 발생한 것임.

〈연도별 위약금(57-572) 예산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2020	687	400	390	56.7	10
2021	687	1,610	1,600	232.8	10
2022	687	2,384	2,383	346.9	1
2023	783	1,495	1,494	190.8	1
2024.9월말	1,541	558	536	34.7	22
2025 예산안	1,826				

* 자료: 법무부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의 내용〉

- 보호일시해제보증금 제도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하는 제도(「출입국관리법」 제65조)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호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출입국관리법」 제66조)
-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키고 보호조치 없이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하는 제도(「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

7)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예치금을 내면 보호시설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한 후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을 기점으로 위약금(57-572) 수납액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앞 페이지 표 참조), 2024년의 경우 세입 예산 1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월말 기준 수납실적은 5억 3,600만원(34.7%)에 불과함.

이러한 세입 수납액의 감소는 2023년 이후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의 귀속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15억 6,100만원, 23억 1,700만원에 달했던 보증금 국가귀속액은 2023년 13억 8,200만원, 2024년 9월말 기준 4억 9,0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연도별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예치액 및 귀속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예치액	귀속액	예치액	귀속액	예치액	귀속액	예치액	귀속액	예치액	귀속액
보호일시해제보증금	2,393	255	4,735	1,287	2,856	1,591	2,187	1,273	1,729	380
출국명령이행보증금	-	-	1,053	274	1,070	726	1,047	109	506	110
합 계	2,393	255	5,788	<u>1,561</u>	3,926	<u>2,317</u>	3,234	<u>1,382</u>	2,235	<u>490</u>

* 자료: 법무부

- 연도별 보호일시해제보증금과 출국명령이행보증금의 예치 실적 및 위반 건수 역시 202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보호일시해제보증금 예치건수 및 위반건수 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예치건수	위반건수			
		합 계	출석요구 불응	출국기한 위반	거주지 조건 위반
2018년	111	18	15	3	-
2019년	94	11	9	2	-
2020년	176	51	44	6	1
2021년	321	102	84	18	-
2022년	240	125	112	13	-
2023년	147	10	10	-	-
2024년 9월말	134	31	19	8	4

* 자료: 법무부

〈연도별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예치건수 및 위반건수 발생 현황〉

(단위: 건)

연 도	예치건수	위반건수				
		합 계	보증금 예치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1	226	69	69			
2022	202	134	54	80		
2023	166	54	3	27	24	
2024. 9월말	104	31			18	13

* 자료: 법무부

- 그럼에도 법무부는 위약금 세입 예산을 두 제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보증금 예치 및 국고귀속 실적이 가장 높은 해인 2021년 및 2022년을 포함한 3개년(2021~2023)의 평균 수납실적을

토대로 2025년 세입예산을 편성한바, 제도 운영 현황을 감안했을 때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세입 예산은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 이후 보호일시 해제제도와 출국명령이행보증제도의 실제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세 출 ◆

가. 법무활동

(1) 기업환경지수 개선

(가) 예산안 개요

-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은 국제세미나, 서울 국제컨퍼런스,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5억원(988.1%) 증액 편성된 27억 5,300만원임.

〈2025년도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업환경지수 개선	222	253	2,753	2,500	988.1

(나) 사업 간 연계 추진 등을 통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내역사업인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 해결분야 역량 강화”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320-01) 방식으로 이루어짐.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 8)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⁹⁾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조¹⁰⁾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 25억원은 전액 동 내역사업에 신규 편성되었음.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내역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 내역	합계
전문인력 확보	- 사무국 전문인력(중재사건처리 변호사) 1,100,000 = 33,333*12월*1명 + 25,000*12월*1명 + 16,667*12월*2명 - 홍보/운영인력 200,000 = 6,667*12월*1명 + 4,167*12월*1명 + 2,917*12월*2명 -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 = 417*12월*20명	1,400,000
사업비	-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개최 100,000 = 메인콘퍼런스 25,000 + 행사위탁(계약) 40,000 + 운영비 35,000 - 한국국제중재 홍보 200,000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영문자료 제작 200,000*1년 -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 = (해외전략 대상국가 설명회 임차료 30,000 + 여비 13,600 + 운영비 6,400) + (해외중재기관 개최 행사 참석 및 홍보 여비 61,200 + 참가비 22,800 + 홍보비 66,000) -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사업 100,000 = 강사사례금 500*5회*10명 + 자료집 5,000*5회 + 운영비 8,000*5회+행사안내 2,000*5회 - 중재전문인력 양성 100,000 = Vis Pre-Moot 행사 50,000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50,000	700,000
운영비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400,000*1년	400,000
합계		2,500,000

* 자료: 법무부

- 8)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9)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서, 기존 평가방식인 Doing Business(DB)에서 2023년도부터 새로운 평가방식인 신 기업환경평가 Business Ready(Business-Ready)로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되어, 2025년에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1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 다만, 신규 편성된 동 내역사업 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법무부는 2024년에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재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25억 7,8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음.

〈연도별 · 사업별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세부사업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1033-304)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1033-304)	기업환경지수 개선 (1032-307)
내역사업	중재산업 활성화				중재산업 활성화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예산액	2,524	2,365	2,365	2,578	1,771	2,500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2개 세부사업의 구체적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두 사업은 모두 해외 설명회·세미나 등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즉, 기존 세부사업의 경우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와 중재안내서·영문저널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증액된 별도 세부사업도 국제중재센터 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중재 관련 영문자료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기존 세부사업은 ‘국제중재 실무자 교육’ 및 ‘신규 위촉 중재

인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세부사업 역시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에 나뉘어 편성된 국제중재 홍보 및 교육 예산을 사업 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 세부사업별 보조금 예산 편성내역 비교〉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가. 사업비 (421,200천원) 1) 해외설명회 (20,000천원) 2) 국제중재 행사 개최 (80,000천원) - 국제중재 주간(Seoul Arbitration Week) 3) 중재 콘텐츠 강화 (136,000천원) - 중재인내서, 영문저널, 홈페이지 개선 등 4) 중재전문 인력 양성 (185,200천원) - 국제중재 실무자 교육, 신규 위촉 중재인 전문성 강화 교육, 중재전문 인력 관리 나. 운영비 (1,349,341천원) - 임차료, 관리비, 회의수당, 국제중재센터 시설 개선 등	가. 국제중재센터 전문인력 확보 (1,400,000천원) 1) 사무국 전문인력(국제중재사건 처리 변호사) 사무총장급, 수석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1,100,000천원) 2) 국제중재센터 홍보/운영인력 (200,000천원) 3) 국제중재센터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천원) 나. 사업비 (700,000천원) 1)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대륙법계 아시아 중재기관 연합 컨퍼런스) 개최 (100,000천원) 2) 한국 국제중재 홍보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관련 영문자료 제작 (200,000천원) 3)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천원) 4)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 사업 (100,000천원) 5) 중재전문 인력 양성 (100,000천원) - Vis Pre-Moot 행사 주최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다. 운영비(국제중재센터) (400,099천원) -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1,770,541천원	2,500,099천원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1033-307)” 홍보 예산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해외 중재기관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을 위한 것이고,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사업 예산의 경우 우리 중재 시스템과 중재기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해외기업의 국내 기관 중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달라 양자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중재사건 유치와,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을 활용한 국제중재 활성화는 상호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 사업은 동일하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사업 목적·방향 및 국제중재 홍보, 중재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를 감안할 때, 2025년도 각 세부사업의 수행은 개별 사업단위의 예산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국제중재 기능의 강화를 통한 기업환경평가 대응이라는 신규 내역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 중 국제중재 홍보,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등 사업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가) 예산안 개요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¹¹⁾을 주관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600만원(1.7%) 증액 편성된 52억 8,300만원임.

<2025년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4,439	5,197	5,283	86	1.7

(나) 해외출장 예산의 관행적 편성 지양 필요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외업무여비(220-02) 1,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1)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여야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이 주어짐.

〈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달러)

편성내역	원화	외화
가. 뉴질랜드 (검사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6일)	19,364	\$ 5,336
○ 항공료 3,000,000원*4명	12,000	
○ 경비 (\$30*4명)*8일	1,325	\$ 960
○ 숙박비 (\$106*4명)*7박	4,096	\$ 2,968
○ 식비 (\$44*4명)*8일	1,943	\$ 1,408
나. 계수조정	271	
단수조정	△176	
합계	19,459	\$ 5,336

*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의 해외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독일 국가 사법시험의 디지털시험 시행 참관 및 오스트리아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관련 면담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1,945만원을 초과한 2,245만원을 집행하였음.

2022년에는 영국, 2019년에는 노르웨이·스웨덴을 방문하였으나,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의 제한, 2023년에는 변호사시험 CBT 시행 준비 비용 충당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임.

〈2019년 ~ 2024년 국외출장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국가명	일자	방문기관	출장내용	편성내역	집행내역 12)
2024	독일, 오스트리아	'24.6.2. ~ '24.6.10.	독일 사법시험청,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자 시험센터, 오스트리아 빈 대학 법학부 등	독일 사법시험의 디지털 시험 시행 참관, 사법시험 응시제한,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제도 운영 관련 면담, 오스트리아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관련 면담	19,459	22,459
2023	—	—	—	—	19,459	0
2022	영국	'22.10.31. ~ '22.11.6.	런던시티대 로스쿨, 법정 변호사 기준 이사회, 런던 시험센터 등	영국 CBT 프로그램 시범 이용, CBT 진행방식 관련 면담 및 시험장 방문 등	19,132	13,572
2021	—	—	—	—	21,258	0
2020	—	—	—	—	21,000	0
2019	노르웨이, 스웨덴	'19.6.1. ~ '19.6.10.	오슬로대, 노르웨이 변호사협회, 스톡홀름 델피 사무소 등	노르웨이 법학교육 과정 및 재응시 제한, 시험출제 등 면담, 스웨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관련 면담, 변호사 수급 등 면담	23,471	19,692

* 자료: 법무부

- 다만, 예산 편성 시 출장 계획과 실제 출장대상국 및 목적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최근 5년 간 동 사업 국외업무 여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호주 캔버라 및 스위스 제네바, 2023년에는 호주 캔버라, 2024년·2025년에는 뉴질랜드 방문 계획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대로

12) 2024년의 경우 2024.9.기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 2023년 변호사시험 CBT 시행 준비 비용 부족으로 국내여비로 조정하여 집행(법무부)

수행되지 못하였음.

〈2022년~2024년 국외업무여비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 호주 캔버라 (검사 1명, 사무관 2명, 6일)	8,650	가. 호주 캔버라 (검사 1명, 사무관 2명, 6일)	6,335	가. 호주 캔버라 (검사 1명, 사무관 2명, 6일)	18,883	가. 뉴질랜드 (검사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6일)	18,936
1) 항공료	4,831	1) 항공료	2,769	1) 항공료	12,000	1) 항공료	12,000
2) 일비	690	2) 일비	644	2) 일비	1,238	2) 일비	1,248
3) 숙박비	2,069	3) 숙박비	1,932	3) 숙박비	3,829	3) 숙박비	3,858
4) 식비	1,060	4) 식비	990	4) 식비	1,816	4) 식비	1,830
나. 스위스 제네바(검사급 1명, 책임관 2명, 8일)	12,542	나. 스위스 제네바(검사급 1명, 책임관 2명, 8일)	12,033	나. 계수조정	576	나. 계수조정	523
1) 항공료	4,852	1) 항공료	4,852				
2) 일비	2,333	2) 일비	786				
합계	21,258	합계	19,132	합계	19,459	합계	19,459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국외출장 소요가 발생하여 예외적으로 출장 대상국 및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연례적으로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출장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① 인터넷·E-mail 또는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② 해외공관이나 주재관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출장을 제한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¹³⁾

-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법무부는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시, 매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과거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출장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38

(3) 법무실 기본경비

(가) 예산안 개요

-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법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1,900만원 (20.1%) 증액 편성된 7억 900만원임.

〈2025년도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실 기본경비	546	590	709	119	20.1

(나) 조직개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법무부는 2023. 8.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공포·시행에 따른 직제 변경으로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기존 인권국 소속이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실로 변경하였음.¹⁴⁾(2

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감독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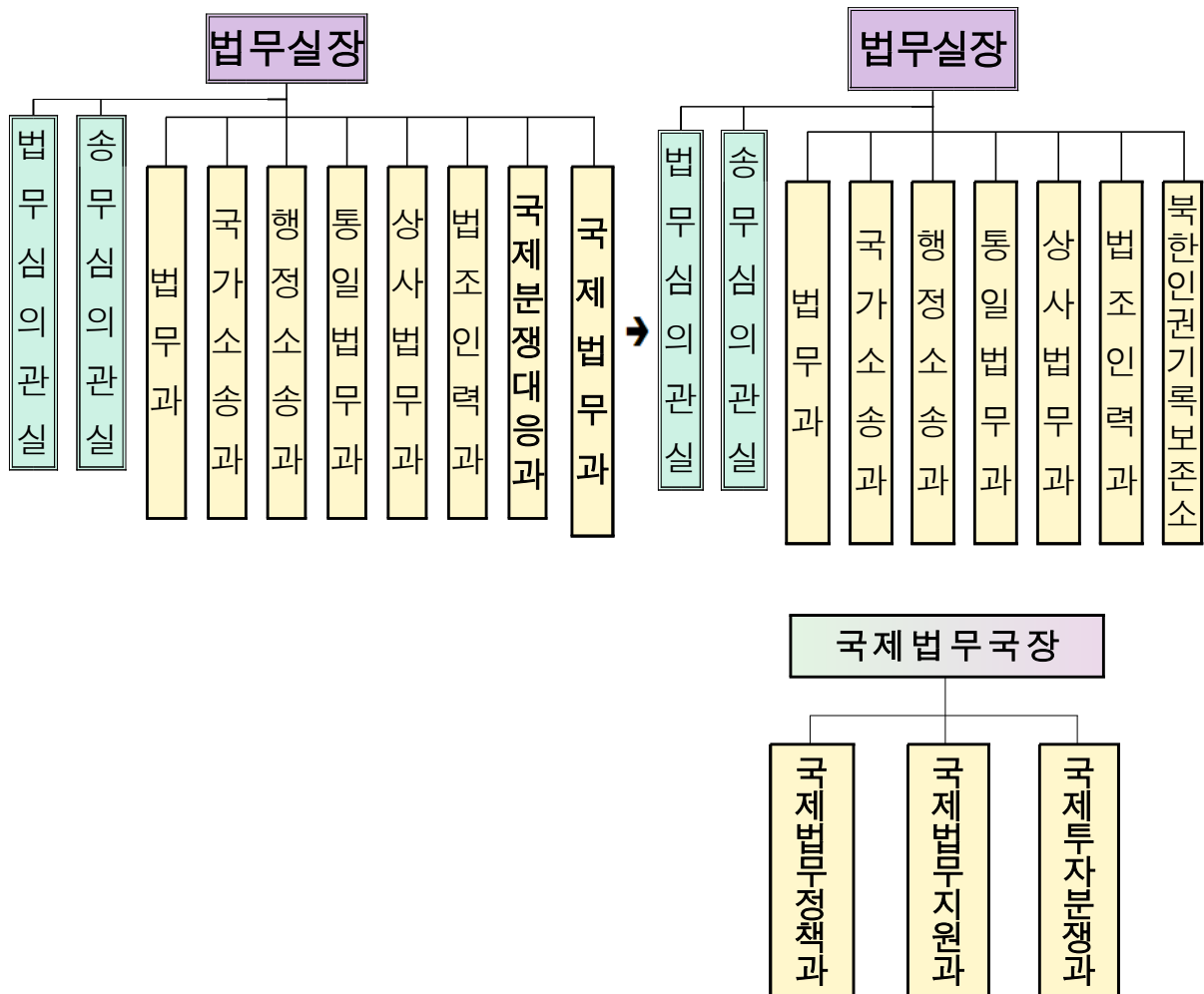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심의관 8과 → 2심의관 6과 1소)

〈법무부 조직개편 전 · 후 조직도 변화〉

－조직개편 전 (법무실: 2심의관 8과)

－ 조직개편 후 (법무실: 2심의관 6과 1소
국제법무국 신설 :3과)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기존 법무실에 속해 있던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가 각각 국제법무정책과, 국제투자분쟁과로 변경되어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되고, 민사·상사 분야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을 위한 국제법무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으며(1국 3과 체제), 법무실 통일법무과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2024년에는 법무부 예산안 중 국제법무 기본경비(7011-266) 사업이 신설되면서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430-01) 3,725만원과 우편, 통신요금[공공요금및제세(210-02)] 7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인권국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북한인권기록소 자산취득비(430-01) 400만원과 전 화료·우편료 등 공공요금(210-02) 700만원이 법무실기본경비로 이관되었음.
- 그러나, 법무실기본경비 중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430-01), 우편 및 통신요금(210-02)은 기존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가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산출근거와 그 금액이 같고, 2025년도 예산안도 2024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조직개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기존의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가 국제법무

국으로 이관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 편성 · 집행내역〉

	2023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편성내역	집행내역	편성내역	집행내역	편성내역
법무실 기본경비 (7011-253)	[210-02] 공공요금및제세				
	○ 우편요금 12월*1,000,000원 = 12,000천원	○ 우편요금 = 20,989천원	○ 우편요금 12월*1,000,000원 = 12,000천원	○ 우편요금 = 14,085천원	○ 우편요금 12월*1,000,000원 = 12,000천원
	○ 전화 등 통신요금 12월*2,000,000원 = 20,000천원	○ 전화 등 통신요금 = 9,012천원	○ 전화 등 통신요금 12월*2,000,000원 = 20,000천원	○ 전화 등 통신요금 = 5,699천원	○ 전화 등 통신요금 12월*2,000,000원 = 20,000천원
	[430-01] 자산취득비				
	○ 사무용 집기류 = 43,555천원	○ 사무용 집기류 = 62,225천원	○ 사무용 집기류 = 43,555천원	○ 사무용 집기류 = 41,429천원	○ 사무용 집기류 = 43,555천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 4,000천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 집행내역 없음 ⁵⁾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 4,000천원
인권국 기본경비 (7011-263)	[430-01] 공공요금및제세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 7,000천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 2,811천원			
	[430-01] 자산취득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210-02] 공공요금및제세				
			○ 국제법무국 우편, 통신요금 = 7,200천원	○ 국제법무국 우편, 통신요금 = 4,400천원	○ 국제법무국 우편, 통신요금 = 7,200천원
	[430-01] 자산취득비				
			○ 국제법무국 사무용 집기류 = 37,250천원	○ 국제법무국 사무용 집기류 = 27,787천원	○ 국제법무국 사무용 집기류 = 37,250천원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5) 2024년의 경우 9월 기준이며,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은 11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임.

- 법무부에 따르면, 우편 및 통신요금(공공요금및제세)과 관련하여, 국제법무국 신설 이전 구 국제분쟁대응과, 국제법무과의 우편 및 통신요금은 2022년도~2023년도에 연평균 약 30만원 내외를 집행하고 있어, 전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였음.

또한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자산취득비)과 관련하여, 2023년도 국제법무국 신설로 법무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8,711천원($\{43,555 \text{천원}/10\text{과}\} \times 2\text{과}$)을 배분하였고, 2024년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편과 아포스티유 공무원 2명 증원에 따른 필수 집기류 및 전산기기 등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2023년도 법무실 소속 각 부서에서는 내용 연한이 경과한 집기류 등을 교체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2023년도에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은 구 국제분쟁대응과 및 국제법무과의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음에도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867만원 초과집행한 점, 2024년 예산부터 기존 인권국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산취득비가 법무실 기본경비로 이관되어 편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예산안부터는 최소한 국제법무국(구 국제분쟁대응과 및 국제법무과)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의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실 기본경비 중 국제법무국 소관 과에 해당하는 경비를 분리하여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국제분쟁대응과 및 국제법무과 등 국제법무국 소관 집기류 구입을 위한 집행액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내역에 한하여 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법무실 기본경비 중 국제법무국 관련 집행내역〉

(단위: 원)

2023		2022		2021	
날짜	내용 및 집행액	날짜	내용 및 집행액	날짜	내용 및 집행액
3.6.	국제법무과 텔레비전 구매 (1,519,000)	12.15.	국제법무과 종이편칭기 구매 (1,370,000)	3.4.	국제분쟁대응과 사무용 집기(책상) 구매 (175,000)
11.23.	국제법무정책과 사무용품 구매 (17,671,000)				
11.27.	국제법무국 IP전화기 구매 (3,762,000)				
합계	22,952,000 (법무실 예산액 중 집행액 : 5,281,000) ¹⁶⁾	합계	1,370,000	합계	175,000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법무실 기본경비 중 국제법무국 관련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7만5천원 및 137만원을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집행하였고, 2023년의 경우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액 중 528만원을 집행하였음.

- 따라서 법무실 기본경비 중 2025년 예산안은 최근 3년간 국제법무국 소관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집행액의 평균인 228만원의

16) 법무부는 국제법무국 신설로,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사무용품(책상, 의자 등) 구입 소요를 위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자산취득비 17,671,000원을 자체 전용하여 충당하였다는 입장임.

감액 조정이 필요함.

〈2025년도 법무실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견〉

(단위: 백만원, %)

비목명	2025년 예산안(A)	조정의견 (B)	증 감 (B-A)	비 고
자산취득비(430-01)	56	54	△2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28만원 감액

나. 인권활동

(1) 법률구조

(가) 예산안 개요

- 법률구조(1131-300)는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를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법률구조 사업비를 수지차 보전 방식¹⁷⁾으로 보조하고,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제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8억 8,000만원 (4.4%) 증액 편성된 676억 9,700만원임.

〈2025년도 법률구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B-A)	(B-A)/A
법률구조	59,795	64,817	67,697	2,880	4.4

17)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임.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예산 조정 및 편성
구체화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동 사업을 통해 기본급, 상여금, 법정부담금, 퇴직기금전출금 등 인건비를 수지차 방식으로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실제로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급여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 적립의무액(A)	퇴직급여적립액(B)	퇴직급여 적립율(B/A)
2013년	27,241	19,947	73.2
2014년	31,923	20,909	65.5
2015년	37,408	22,391	59.9
2016년	39,879	22,452	56.3
2017년	44,731	25,187	56.3
2018년	48,821	25,545	52.3
2019년	53,072	24,356	45.9
2020년	57,103	24,065	42.1
2021년	59,520	20,941	35.1
2022년	65,803	17,862	27.1
2023년	65,631	15,809	24.1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기타	자본총계	
2013년	118,761	888	27,241	28,129	-	90,632	90,632	31.04
2014년	120,646	1,131	31,923	33,054	-	87,593	87,593	37.74
2015년	119,697	1,874	37,376	39,250	-	80,448	80,448	48.79
2016년	121,200	1,798	39,776	41,574	-	79,626	79,626	52.21
2017년	123,678	2,036	44,590	46,626	-	77,052	77,052	60.51
2018년	123,217	1,695	48,551	50,246	-	72,971	72,971	68.86
2019년	125,116	2,089	52,944	55,033	-	70,083	70,083	78.53
2020년	124,597	1,777	56,779	58,556	-	66,041	66,041	88.67
2021년	115,295	2,188	59,520	61,708	-	53,587	53,587	115.15
2022년	104,311	1,501	65,803	67,304	-	37,007	37,007	181.87
2023년	92,535	1,785	65,631	67,416	-	25,119	25,119	268.39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특히, 지난 10년간 법률구조 사업에서 장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당초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해왔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적립액은 당초 예산 편성분 만큼 적립되지 못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퇴직급여적립액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퇴직급여적립액		증감(B-A)
	당초 예산(A)	수정 예산(A)	
2013년	1,625,156	1,869,648	244,492
2014년	1,418,141	948,588	△469,553
2015년	1,368,022	918,022	△450,000
2016년	1,797,964	1,922,527	124,563
2017년	1,800,000	968,613	△831,387
2018년	1,800,000	470,989	△1,329,011
2019년	1,994,000	273,445	△1,720,555
2020년	1,994,000	934,927	△1,059,073
2021년	1,994,000	357,872	△1,636,128

2022년	1,994,000	1,407,004	△586,996
2023년	1,800,000	1,166,317	△633,683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무부에 “인건비가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신규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퇴직적립금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음.¹⁸⁾
- 이에 대해 법무부 및 공단은 예산총칙 개정을 통해 퇴직적립금전출금 전용을 법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하여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퇴직금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건비 절감 방안¹⁹⁾과 호봉제 보수체계의 직무급적 연봉제로의 개편 등을 추진 중이며,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중단하는 등 지적사항을

18)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명: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지양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 축소 운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이 급격히 감소함. 공단은 지난 10년간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퇴직급여적립액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 기준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시정요구유형: 시정
-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가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신규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퇴직적립금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

19) 임기제 변호사제도 운용, 간부급 직원의 공통처우개선분 동결, 퇴직자 공석에 대한 신규인력 미채용, 임금피크제 진입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년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 인건비 절감 방안 시행 중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안의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례적으로 결원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편성된 인건비는 실소요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과 퇴직기금전출금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 등”으로 편성하고 있어 당해연도 편성 예산에 따라 적립될 퇴직급여적립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즉, 2025년도 법률구조 사업에 편성된 공단의 인건비 예산 664억 5,700만원은 781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평균적으로 71.8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의 인건비는 실소요 대비 10%가량 과다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24년도 및 2025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건비 예산(안)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내역	산출근거	금액	내역	산출근거	금액
1) 인건비		64,572,000	1) 인건비		66,457,000
가 기본급	776명*3,601,115원 *12월=	33,533,583	가 기본급및퇴직기금전출금 등	36,316,999,000원=	36,316,999
나 상여금 등	776명*2,246,467원 *12월=	20,919,101	나 상여금 등	21,496,999,000원=	21,496,999
다 법정부담금	776명*469,855원 *12월=	4,375,290	다 소송성과급	2,265,000,000원=	2,265,000
라 퇴직기금전출금	1,854,026,000원=	1,854,026	라 법정부담금	4,493,006,000원=	4,493,006
마 24년 장의증안력(2명 반영)	50,000,000원=	50,000	마 24년 장의증안력(2명 반영)	51,000,000원=	51,000
바 소송성과급 이관	104명*5,444,712원 *4회=	2,265,000	바 25년 장의증안력(3명 반영)	99,000,000원=	99,000
사 법률구조 공통처우개 선분(2.5%)	1,575,000,000원=	1,575,000	사 혁신계획 정원 감축 44명	-201,000,000원=	△201,000
			아 25년 공통처우개선분(3%)	1,936,000,084원=	1,936,000
			자 계수조정	-4,000원=	△4

- 또한, 2024년도까지 구분되어 편성되던 기본급과 퇴직기금 전출금이 2025년도에는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 등”으로 묶어서 편성되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편성된 인건비 내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공단의 2025년 인력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현원 및 결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국회 예산 확정 후 공단의 세부 예산명세 편성 시에는 편성된 총 인건비 예산 내에서 2025년 예상 현원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감액조정하고, 해당분만큼을 퇴직기금전출금으로 증액편성하며, 기본급과 퇴직기금전출금을 정확한 소요액별로 분리하여 편성·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건비 예산 세부 명세 편성 계획(안)〉

- '25년 퇴직적립금 의무액 예상치(4,653백만원)의 **80% 수준인 3,722백만원 편성 예정**
 - 최근 5년간 퇴직적립금 의무액 연평균 증가율 적용하여 '25년 퇴직적립금 의무액 4,653백만원 산출

연평균증가율	
'19~'23년	1.5%
'20~'24년	1.4%



예상 퇴직적립금의무액	
'24년	4,588백만원
'25년	4,653백만원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비중, 결산액, 결원 등을 고려하여 퇴직적립금 전출금을 3,72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기본급 등을 조정 예정

(단위 : 천원)

'25년 명세(710명 ²⁰ 기준)		산출 내역	
인건비	66,457,000	정부안 편성 총인건비	
기본급	37,025,000	'24년 기본급 실집행액에 처우개선비 3.0% 반영	
상여금	3,057,000	최근 3년 인건비 예산 평균 비중(4.6%) 적용	
제수당	11,127,000	소송성과급 포함	
복리후생비	4,453,000	최근 3년 인건비 예산 평균 비중(6.7%) 적용	
기타직보수	1,800,000	개방형 1명 및 임기제 21명(현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	
퇴직기금전출금	3,722,000	'25년 예상 퇴직적립금 의무액의 80% 적용	
법정부담금	5,273,000	최근 3년 평균 결산액 반영	

* 자료: 법무부제출 자료 가공

- 따라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계획대로 2025년도 공단의 세부 예산명세 편성 시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현원 및 일부 결원비중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고, 그 차액을 퇴직적립금 목적으로 재편성하는 등 퇴직적립금 고갈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인력운용계획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단 세부 예산명세 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되는 각목명세서에도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국회가 예산심사 시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의 확정 편성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20) 202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원 781명 중 결원 71명 예상하여 710명 기준으로 인건비 세분화 ('21. ~ '24. 10. 16.까지 평균 결원 71.8명)

(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및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비에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와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사업비”가 각각 1억 2,400만원, 4억 6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그동안의 실집행내역, 사업의 효과성·필요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25년도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목명세서상 4,900만원은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7,500만원은 “제도조사”를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각목명세서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24년 예산액	' 25년 예산안	증감
합계	124	124	—
1)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	49	49	—
2) 제도조사	75	75	—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해당 예산의 최근 6년 간 편성 및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을 배정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체 상세 명세서에는 당초 예정된 목적인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 및 “제도조사”와는 다르게 “일반수용비” 및 “교육훈련비”로 재편성되어, 각종 간담회, 워크숍,

해외기관 방문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확정을 위해 제출된 각목명세서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불요불급한 행사 등에 집행되어 왔음.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각목명세서 및 공단 예산명세서 세부 편성 내역 비교〉

〈법무부 각목명세서〉	2023년	2024년	〈공단 예산명세서〉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		예산	결산 21)	예산	결산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137	124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137	39	124	21
1)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	49	49	1) 일반수용비	60	11	60	17
2) 제도 조사	88	75	2) 교육훈련비	77	28	64	3

* 자료: 법무부

〈2019년도-2024년도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실집행내역〉

지출일	지출내용	지출액	과목(목)
2019. 06.	2018년 경영실적 평가 용역 계약금	11,000,000	일반수용비
2019. 07.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간담회	2,144,500	일반수용비
2019. 09.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무부장관 간담회	234,200	일반수용비
2019. 11.	변호사 실무수습과 공단 법률구조업무와의 연계방안 연구용역 선금	11,000,000	일반수용비
2019. 11.	법률구조 사례집 제작	92,400	일반수용비
2019. 11.	연구용역비 선금(지엔디정보센터)	12,000,000	일반수용비
2019. 04.	지부장 회의	1,487,780	교육훈련비
2019. 07.	공단발전협의회	843,974	교육훈련비
2019. 0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규임용 심사관 간담회	399,660	교육훈련비
2019. 11.	2019년도 해외법률구조기관 방문	18,732,781	교육훈련비
2019. 1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워크숍	5,760,400	교육훈련비
2019. 12.	분쟁조정교육훈련	3,305,500	교육훈련비
2019. 12.	19년도 법률구조세미나	20,153,550	교육훈련비
2020. 01.	연구용역 잔금(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0	일반수용비
2020. 02.	연구용역 잔금(지엔디정보센터)	6,000,000	일반수용비
2020. 06.	2019년 경영실적 평가 용역	11,000,000	일반수용비
2020. 08.	법률구조 연구자료 제작 등	258,800	일반수용비
2020. 11.	제도조사 관련 물품구입	206,000	일반수용비
2020. 12.	연구용역비 선금(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5,000,000	일반수용비
2020. 0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규임용자 간담회	1,113,800	교육훈련비
2020. 10.	인공지능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TF	840,975	교육훈련비
2020. 11.	법률구조등 우수사례 발표대회	1,971,800	교육훈련비
2020. 12.	현안과제 토론회	1,721,300	교육훈련비

21)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지차기관으로 국고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데, '23년 자체 수입 부족으로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지출을 축소하여 예·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지출일	지출내용	지출액	과목(목)
2020. 12.	분쟁조정교육훈련	5,140,204	교육훈련비
2021. 05.	2020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 관련 인쇄비	1,093,620	일반수용비
2021. 06.	연구용역비 잔금(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7,000,000	일반수용비
2021. 07.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용역대금	11,000,000	일반수용비
2021. 11.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비	37,000,000	일반수용비
2021. 02.	현안과제토론회	3,396,180	교육훈련비
2021. 0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1,593,576	교육훈련비
2021. 05.	지소 화상상담 설명 및 간담회	260,000	교육훈련비
2021. 05.	전국 지부장 회의	234,310	교육훈련비
2021. 05.	분쟁조정교육훈련	3,790,650	교육훈련비
2021. 06.	전략수립워크숍	902,341	교육훈련비
2021. 11.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비	28,450,000	교육훈련비
2021. 11.	예산등 주요현안 설명 및 토론회	11,894,186	교육훈련비
2021. 12.	법률구조등우수사례발표대회	374,196	교육훈련비
2021. 12.	제1차 공단 예산개선 현안 간담회	1,250,000	교육훈련비
2021. 12.	제2차 공단 예산개선 현안 간담회	1,250,000	교육훈련비
2021. 12.	공단 예산개선 현안 간담회	5,026,543	교육훈련비
2022. 02.	전략기획부 연구도서 구입	153,500	일반수용비
2022. 06.	2021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	1,056,000	일반수용비
2022. 06.	ADR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 업무협약	231,400	일반수용비
2022. 08.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용역대금	11,000,000	일반수용비
2022. 11.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공단 방문	1,729,280	일반수용비
2022. 04.	신규임용 직원 간담회	1,580,840	교육훈련비
2022. 07.	전국 지부장·고객지원부장 회의	1,312,910	교육훈련비
2022. 08.	분쟁조정교육훈련	3,306,670	교육훈련비
2022. 1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차량대여	4,483,110	교육훈련비
2022. 12.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일본사법지원센터등 방문	20,001,100	교육훈련비
2022. 12.	법률구조등 우수사례 발표대회	1,744,952	교육훈련비
2022. 12.	공익소송활성화	1,156,140	교육훈련비
2022. 12.	임기제변호사간담회	1,350,000	교육훈련비
2023.08.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1,000,000	일반수용비
2023.12.	법률구조제도 및 형사법무정책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77,850	일반수용비
2023.06.	일본사법지원센터등 방문(외국 법률구조제도조사연구)	13,879,783	교육훈련비
2023.09.	공익소송 및 법률 복지 포럼	6,567,000	교육훈련비
2023.08.	본부 관리자 워크숍	3,404,570	교육훈련비
2023.07.	제1차 및 제2차 법률구조 라운드테이블	3,393,700	교육훈련비
2023.12.	법률구조등 우수사례 발표대회	768,920	교육훈련비
2024.03.	의사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사례집 제작 용역 대금 지급	5,000,000	일반수용비
2024.08.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간담회	1,745,050	일반수용비
2024.08.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1,000,000	일반수용비
2024.03.	전국지부장간담회	1,607,600	교육훈련비
2024.07.	전국 지부장,고객지원부장 간담회	1,672,880	교육훈련비

* 자료: 법무부

- 한편, 2025년도 “청사취득 및 관리비” 예산안에는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사업비” 4억 60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신규 편성 되었는데, 이는 2024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적인 무사항인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4억 600만원의 집행이 완료된 후, 2025년도에는 해당 금액분을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사업비로 편성한 것임.

〈청관사 취득 및 관리비 예산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23년 예산액	' 24년 예산액	' 25년 예산안	증감
합계	3,712	4,502	7,183	2,681
1) 임차보증금	765	765	3,446	2,681 ²²⁾
2) 임차료	1,634	1,662	1,662	—
3) 시설장비유지비	1,313	1,669	2,075	406
4) 휴게시설 설치	—	406	—	△406

* 자료: 법무부

-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5년에는 4억 600만원을 활용하여 상담자 수가 많은 부산 및 대구지부의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 누설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39 개기관의 상담실을 모두 사생활보호형 상담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2) 2024년도까지 예·결산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임차보증금 회수·집행액을 2025년도에는 세입·세출로 편성하여 임차보증금 예산이 26억 8,100만원 증액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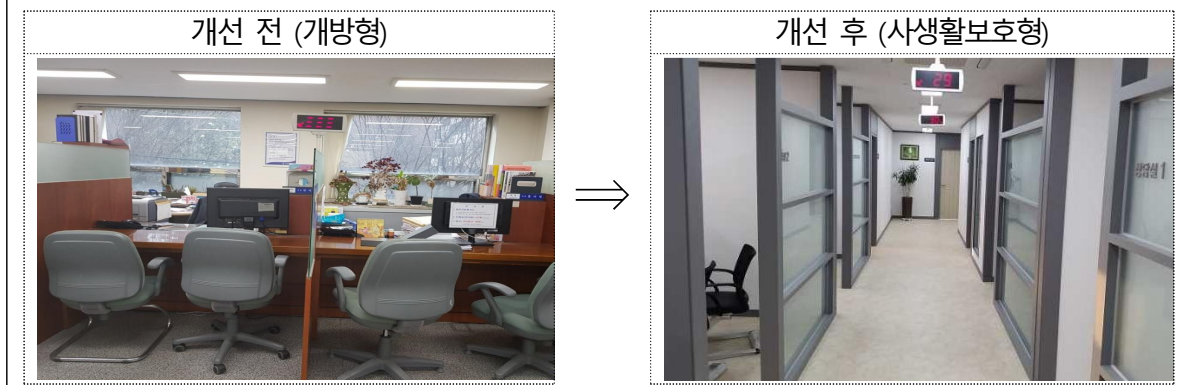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추진계획〉

○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추진계획

- '25년 부산지부('11년 구축), 대구지부('10년 구축) 우선 변경 후, '26년 광주지부('12년 구축), 대전지부('13년 구축) 사무실 변경 예정

⇒ **부산지부 소요예산 231백만원, 대구지부 소요예산 158백만원**

- ※ 18개 지부(전국 지방법원·검찰청 단위), 7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서울, 수원,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42개 출장소(전국 지원·지청 단위) 67개 소속기관 중 **39개 기관 사생활보호형 상담실로 변경 필요**



* 자료: 법무부

-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체수입 부족으로 1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사업이 축소 운영되고 있고, 퇴직적립금 마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기관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담실 전체를 모두 사생활보호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관당 약 2억원, 향후 39개 기관 기준 약 80억원 가량의 리모델링 예산의 편성·집행이 필요한 바, 전체 변경 계획이 필요하고 적정한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오히려 간단한 일상적 상담은 현재의 개방형 상담실에서 진행하고, 이혼,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심층적

상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회의실이나 공용으로 마련된 사생활보호형 상담실로 이동하여 상담하는 것이 상담직원의 안전보호 및 효율적인 상담관리와 사업예산절감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부별로 2~3개의 공용 사생활보호형 상담실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매년 계획과 상이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를 실제 편성 목적인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 및 “제도조사”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하고, 상담실 리모델링은 사업의 효과성·필요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부별 2~3개로 축소하여 동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조정(안)²³⁾ >

'25년 추진 예정	전체 상담실 변경	지부별 3개 상담실 변경		
		일반직 16명 * 변호사는 폐쇄형 상담실 사용중	3개실	49.8백만원
부산지부	231백만원	일반직 17명 * 변호사는 폐쇄형 상담실 사용중	3개실	49.8백만원
대구지부	158백만원			
총 계	389백만원	일반직 23명	6개실	99.6백만원

23) 가장 최근 시행한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비용('21년 서울중앙지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담실 개당 구축 예산 산출

① 서울중앙지부 총구축비 627,036,120원 / 구축 상담실 41개 = 15,293,564원

② '22~'23년 건설공사비지수 증감률('22년 6.0%, '23년 2.3%)* 적용 = 16,584,035원

* 국가통계포털 공시 건설공사비지수 중 건축보수 부문 전년 대비 증감률

(2)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관련

(가) 예산안 개요

- 인권국 기본경비(7011-263)는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여비, 사업지원 경비가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억 4,600만원(15.3%) 증액 편성된 10억 9,900만원임.

<2025년도 인권국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권국 기본경비	967	953	1,099	146	15.3

- 국제인권역량강화(1139-300)는 국제인권 이슈에 대응하고, 정부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위원 및 영문 에디터 채용, 국제인권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인권정책개선 연구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500만원(2.1%) 증액 편성된 2억 4,600만원임.

<2025년도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인권역량강화	206	241	246	5	2.1

(나) 실소요를 반영한 국외업무경비 편성 및 계획에 따른 실집행 필요

- ‘인권국 기본경비’ 및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의 2025년 예산안에는 인권국에서 수행하는 국제업무 및 해외시찰을 위한 해외출장비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 상세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5년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편성내역〉

세부사업	출장목적	금액 (천원)
국제인권 역량강화	합계	30,000
	1.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스위스)	15,000
	2. UN기업과 인권 포럼	15,000
인권국 기본경비	합계	115,867
	1.UN인권이사회 참석(스위스)	26,673
	2.UN인권,민주주의,법치 포럼 참석(스위스)	14,623
	3.UN초국적회의 실무그룹 참관(스위스)	12,247
	4.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15,412
	5.유럽 범죄피해자지원협회 연례 회의(포르투갈)	18,684
	6.해외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미국)	14,392
	7.여성아동인권 관련 해외법제 및 제도운영 실태 파악(영국)	13,836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최근 6년 간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출장대상국 및 목적이 예산안 편성 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계획된 출장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수차례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출장대상국 및 목적과 유사해 2025년도에도 계획과 다른 대상국·출장목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2018-2023년도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편성 목적 및 실적행 내역〉

구분	예산 편성 목적		실집행 내역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목적
2018	스위스 제네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스위스 제네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제17,18,19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인권이사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기업과 인권포럼 참가		
	미국 뉴욕	UN총회 참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국제인권심포지엄 외빈 초청
	타이완	선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스웨덴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회의의 참석	스웨덴 체코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회의의 참석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방문
	프랑스	유럽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스위스 제네바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		
	미국 LA	해외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태국	AIOHR주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회의 참가 및 법률구조·범죄피해자 지원 회원국 협의
			홍콩	제16회 세계 피해자학 학회 참석
			호주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 해외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사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영국 런던	영국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 예방 실태 파악 기관 방문
			태국	태국의 여성·아동대상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자료 수집
			영국	여성·아동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영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증진
2019	스위스 제네바	UN아동권리협약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인권이사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정부대표단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기업과 인권포럼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인민 민주주의, 법치주의 포럼 참가		
	미국 뉴욕	UN총회 참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국제인권심포지엄 외빈 초청
	일본	선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파리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회의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과 2030 의제 회의 참석 및 국제인권 협력체계 개선방안 논의
	미국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미국 LA	해외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타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아세안 협력강화 추진
2021	미국 뉴욕	경제실종방지협약 서명식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포럼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민주주의 법치 포럼 참석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베를린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회의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		
	미국 LA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프랑스 스페인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보호 실태 등 파악
2022	스위스 제네바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 기업과 인권포럼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등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독일 베를린	유럽 범죄피해자지원 회의		
	미국 워싱턴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미국 LA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미국 워싱턴	제2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회 참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민주주의 법치 포럼 참석 등
2023			캐나다	캐나다 피해자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협력 사례 등 파악
	스위스 제네바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심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 자유권규약 심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영국 런던	유럽 범죄피해자지원 회의		
	미국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미국 LA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없었으므로 생략

* 자료: 법무부

- 구체적으로 2025년도 계획안의 ‘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유럽 범죄 피해자지원협회 연례 회의’, ‘해외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여성아동인권 관련 해외법제 및 제도 운영 실태 파악’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미 실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예산 편성 당시와 달리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도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편성 목적 및 미 실시 유사사례〉

세부사업	2025년도 국외업무여비 편성 목적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 실시 유사사례*
국제인권 역량강화	합계	—
	1.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스위스)	—
	2. UN기업과 인권 포럼	—
인권국 기본경비	합계	—
	1.UN인권이사회 참석(스위스)	—
	2.UN인권,민주주의,법치 포럼 참석(스위스)	—
	3.UN초국적회의 실무그룹 참관(스위스)	—
	4.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 2018년 6인 계획 3인 초청 - 2019년 5인 계획 2인 초청 - 2021년 4인 계획 미 실시 - 2022년 6인 계획 미 실시 - 2023년 6인 계획 미 실시
	5.유럽 범죄피해자지원협회 연례 회의(포르투갈)	유럽 범죄피해자지원 회의 - 2019년(프랑스) 미 실시 - 2021·2022년(독일) 미 실시 - 2023년(영국) 미 실시
	6.해외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미국)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 2018년(프랑스) 미 실시 - 2019·2022·2023년(미국) 미 실시
	7.여성아동인권 관련 해외법제 및 제도 운영 실태 파악(영국)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 2021·2022·2023년(미국) 미 실시

* 자료: 법무부

※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없었으므로 사례에서 제외하였고, 코로나 미집행을 제외하고 2018년~2023년까지 2회 이상 계획변경으로 미 실시된 경우만을 적시하였음.

- 실집행 과정에서 연중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국외출장 소요가 발생하여 예외적으로 출장 대상국 및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연례적으로 유사한 목적의 출장이 편성되고 계획이 변경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실소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① 인터넷·E-mail 또는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② 해외공관이나 주재관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을 제한하고 있고,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삭감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예산안 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과 차년도 국외출장 소요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외업무여비가 당초 출장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출입국관리 활동

(1)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가) 예산안 개요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1231-302)은 국가 간 이주현상 분석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종합적·중장기적 이민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억 9,300만원 (34.9%) 증액 편성된 34억 5,500만원임.

〈2025년도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이민정책연구원운영	2,268	2,562	3,455	893	34.9

(나) 이민정책연구원 이전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이민정책연구원(IOM移民政策研究院, 영어: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 MRTC)은 국제이주기구(IOM)

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으로 이민정책 개발 및 학술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임.²⁴⁾

- 이민정책연구원은 현재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현 임차청사는 2024년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및 2025년 본공사 예정으로, 임대기관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연구원 이전을 추진할 예정임.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 청사 임차 시 도심외 지역 건물, 공공청사 및 지방교육기관 등의 유허건물 활용 우선 검토 등 임차료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²⁵⁾ 이민정책연구원은 퇴거요청을 통보받은 2023년 2월부터 서울대학교,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재산 또는 공공시설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면적 또는 임대기간 등이 적합하지

24) ※ 기관 개요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3층('20. 5월 이전)
- 정원 : 28명('24. 9. 기준) (원장 1, 부원장 1, 연구직 15명, 행정직 11명)
- 이사회 : 이사장, 원장 외 법무부·IOM·기재부·외교부·행안부·서울시·경기도에서 지명한 이사 9명(이상 이사)으로 구성(총 11명)

※ 설립 및 운영 경과

- '09. 12.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IOM과의 협정에 따라 IOM의 협력 연구원으로 설립(개원)
※ 법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
- '1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19. 1.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소규모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실익 부족)
- '23.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설립 근거 마련(제22조의2)

※ 주요 기능

- 이주 정책 및 외국 법률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교환
-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 이주 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교류, 학회 및 연구 지원 활동
- 학술자료,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서적의 발간 및 보급
- 기타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사업

2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5

-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내역사업인 “연구원 운영비”의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억 3,800만원 증액한 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2025년 3월 내 이민정책연구원 이전계획을 감안하여 시설임차 및 관리비를 현청사의 경우 1제곱미터당 14,600원 2개월분, 이전청사 1제곱미터당 30,400원 10개월분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음.
- 입주를 위한 공사비는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 공사에는 이전 예정 청사 948제곱미터에 대한 가설공사, 수장공사, 전기·소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연구원 청사 이전 관련 예산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 내역	합계
시설 임차 및 관리비	현청사 23백만원($777\text{m}^2 \times 14.6\text{천원} \times 2\text{월}$) + 이전청사 287백만원($948\text{m}^2 \times 30.4\text{천원} \times 10\text{월}$) = 310백만원 (+174백만원)	309,777
임차보증금	$948\text{m}^2 \times 332.2\text{천원}$	315,000
이사비	$28\text{명} \times 0.78\text{대} \times 1.2\text{백만원}$	26,208
입주공사비	$948\text{m}^2 \times 236.3\text{천원}$	224,000
합계		874,340

* 자료: 법무부

- 이민정책연구원은 2025년 2월 말까지 현 청사에서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임. 따라서 입주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및 선정, 입주공사와 이사의 전 과정이 2개월 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민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 업무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임차청사의 퇴거가 지연될 수 있고, 실제 입주 이전 이전청사 등에 대한 임차료가 먼저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5년 2월 이전 입주를 위한 공사 및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외국인보호관리

(가) 예산안 개요

- 외국인보호관리(1233-300)는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급식·피복·의료 관리 등 적정 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9억 1,500만원 (△4.1%) 감액 편성된 213억 7,200만원임.

〈2025년도 외국인보호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외국인보호관리	20,977	22,287	21,372	△915	△4.1

(나) 장기공석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산 감액 및 의료인력의 조속한 확충 필요

-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외국인보호시설 근무 의무관에 대한 임상연구비 2,736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바, 이는 화성·청주·여수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개소에 대한 각 912만원 일반연구비(260-01)의 합임.

의무관에 대한 임상연구비 지원은 외국인 보호시설 등의 특수한 진료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문제들을 인식하고, 보호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하여 의무관의 임상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권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법무부 훈령 제1496호)²⁷⁾ 및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법무부 이민조사과-6117호)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2023회계연도의 경우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고, 2024년도 예산 역시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각 시설별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의무관 임상연구(화성)		의무관 임상연구(청주)		의무관 임상연구(여수)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20	9,120	9,120	9,120	8,882	9,120	9,348
2021	9,120	—	9,120	9,120	9,120	9,120
2022	9,120	9,120	9,120	8,208	9,120	—
2023	9,120	—	9,120	—	9,120	—

* 자료: 법무부

27)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2조(연구비 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 의무과장의 공석(청주, 여수) 등으로 임상연구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임상연구비 편성 예산 2,700만원은 외국인보호소의 공공요금 비용으로 충당하였으며, 특히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배속된 의무인력은 2022년부터 장기간 공석 상태로, 2024년 10월 현재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2020년~2023년 의무관 임상연구 수행 현황〉

구분		연구 제목
화성 외국인 보호소	2020	보호외국인의 의료처우에 대한 미연방 규범과의 비교고찰
	2021	미실시('21. 4. 12. 의무과장 퇴직)
	2022	보호외국인들의 의무과 진료 방해 행태 및 의료갈등 개선방안 고찰
	2023	미실시(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청주 외국인 보호소	2020	보호외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정신 건강 문제
	2021	국내 외국인 전문보호시설 외부진료 환자에 대한 조사연구(공동)
	2022	보호외국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영성에 대한 고찰
	2023	미실시(의무과장 휴직) ²⁸⁾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2020	의료네트워크를 활용한 급·만성 정신질환 보호외국인의 협력적 치료관리 방안
	2021	국내 외국인 전문보호시설 외부진료 환자에 대한 조사연구(공동)
	2022	미실시(의무과장 퇴직)
	2023	미실시(의무과장 퇴직)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의무관의 장기공석 상태를 감안할 때,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의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의

28) 2023. 12. 31. 복직

무관 임상연구비 예산을 감액하고, 차년도 이후 의무관의 충원에 맞추어 해당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호시설별 입·퇴소 현황 및 평균 보호기간 등〉

구 분	보호시설	입소자(명)	퇴소자(명)	평균 보호기간(일)	일 평균 보호 인원(명)
2020	화성	4,825	4,551	24	320
	청주	2,619	2,498	24	171
	여수	2,014	1,910	26	145
	계	9,458	8,959		
2021	화성	3,030	3,210	31	258
	청주	2,282	2,345	26	161
	여수	1,462	1,541	39	155
	계	6,774	7,096		
2022	화성	2,731	2,573	27	201
	청주	1,815	1,683	22	111
	여수	1,189	1,070	27	89
	계	5,735	5,326		
2023	화성	11,879	11,581	12	381
	청주	2,732	2,714	12	88
	여수	4,986	4,786	14	191
	계	19,597	19,081		
2024.9.	화성	8,716	8,336	12	389
	청주	3,802	3,642	12	161
	여수	2,692	2,601	14	134
	계	15,210	14,579		

* 자료: 법무부

- 이와 더불어,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그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 보호 외국인 수용 인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등 외국인 보호시설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외국인보호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견〉

(단위: 백만원, %)

비목명	2025년 예산안(A)	조정의견 (B)	증 감 (B-A)	비 고
일반연구비(260-01)	27	18	△9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의무관 임상연구비 912만원 감액조정

(3)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가) 예산안 개요

-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은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난민 등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5억 1,200만원 (16.3%) 증액 편성된 179억 3,900만원임.

〈2025년도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3,280	15,427	17,939	2,512	16.3

(나) 난민생계비의 적정수준 분석 및 지급 방안 마련 필요

- 「난민법」 제40조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생계비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는데,²⁹⁾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난민 생계비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29)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생계를 보장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 법무부는 내역사업인 “난민업무 지원”을 통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3억 4,900만원(61.4%) 증액된 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이후 난민신청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2024년 예상 난민신청자 수인 19,164명에 최근 5년간 난민신청자 수 대비 지급인원 비율인 2.5%를 곱하여 산출된 479명에 대한 예상 지급 금액임.

〈난민생계비 지원제도 및 예산 편성 · 집행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안)
난민 신청건수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4,062	
생계비 지원 신청자수(명)	717	460	78	225	568	378	
생계비 지급인원(명)	542	262	42	177	379	175	
신청자 대비 지급인원 비율	75%	57%	53%	78%	66%	46%	
생계비 예산(A) (산출근거)	793백만 (523명× 3.50개월× 433천원)	839백만 (591명× 3.28개월× 433천원)	839백만 (591명× 3.28개월× 433천원)	839백만 (591명× 3.28개월× 433천원)	710백만 (500명× 3.28개월× 433천원)	568백만 (292명× 3.33개월× 583천원)	917백만 (479명× 3.28개월× 583,400원)
생계비 집행(B)	711백만 (542명× 3.03개월× 433천원)	546백만 (262명× 4.81개월× 433천원)	52백만 (42명× 2.86개월× 433천원)	247백만 (177명× 3.22개월× 433천원)	568백만 (379명× 3.28개월× 433천원)	390백만 (175명× 3.82개월× 583천원)	
집행률(B/A)	90%	65%	6%	29%	80%	69%	

*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의 난민신청자별 지원액은 난민지원 시설 비이용자인 1인 가구 생계비 583,4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무부고시인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³⁰⁾에 근거한 것임.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91,700	489,000	629,200	768,150	903,65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자료: 법무부 고시

- 생계비 지원액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 난민 생계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81.8% 수준인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한시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현 생계비 지원액이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이후 매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와의 격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30) [시행 2023. 1. 1.] [법무부고시 제2023-9호, 2023. 1. 12., 제정.]

〈연도별 난민신청자 생계비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금액〉

(단위 :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무부 난민신청자 생계비	432,900	432,900	432,900	488,800	583,400	583,400
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41,900	454,900	488,800	583,400	623,300	713,100

* 자료: 법무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호-272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협약³¹⁾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난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서울고등법원 역시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인정 신청일 이후 취업허가가 부여되지 않는 6개월 동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지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음.³²⁾
- 따라서 법무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낮은 수준인 난민신청자 생계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에게 필요한 최소한 생계비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생계비 지원액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생계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발효일 1993. 3. 3] [다자조약, 제1166호]

32) 서울고등법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난민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난민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어서 난민생계비 지원 신청자로서는 그 선정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6934 판결 난민생계비미지급처분취소).

(다) 조기적응프로그램 목표 교육인원을 충족할 수 있는 수강비
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러
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³³⁾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
도, 의료·교통·통신 등의 필수 사회적응 정보 제공 등 사회통합 교
육을 수행하는 사업임.³⁴⁾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연예인은 동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그밖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재정착 난민은 자율적인 이수가 가능함.

2024년까지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 등(공통과목) 2시
간,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특수과목)³⁵⁾ 1시간을 더해 총 3시간을
교육하였는데, 2025년도부터는 이에 더해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과 ‘산업안전 기초교육과정’³⁶⁾을 각 1시간씩 추가하여 총 5시

33)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불어, 인도네
시아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카자흐어, 벵골어, 라오어 등 18개 언어로 교육을 실시중임.

3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
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
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
부장관이 정한다.

35) 외국인 유학생(유학생 필수정보),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중도입국 청소년(미래 진로), 외국국적동
포(국내정착), 외국인연예인(인권보호), 계절근로자(계절근로자 필수정보), 외국인근로자(안전수칙 및 인권
보호), 재정착난민(국내정착)

간을 이수하게 됨.

- 이에 따라, 법무부는 동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12억 5,500만원 (130%) 증액한 2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교육시간 증가(3시간→5시간)에 더하여, 목표 교육인원을 2024년 대비 높게 설정하여 강사료가 10억원 이상 증액 편성된 데 주요 원인이 있음.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2024년 및 2025년 예산 편성내역 비교>

(단위 : 천원)

민간경상보조 (320-01)	2024년도 예산 편성내역	202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증감액
강사료	~~1,720회~~ ×117천원×3시간 = 601,920천원	~~2,700회~~ ×126천원×5시간 = 1,701,000천원	1,099,680
교재비 등	~~39,000명~~ ×3.5천원 = 136,318천원	~~81,000명~~ ×3.5천원 = 290,312천원	153,994
운영비	4개기관×2,185천원×12월 = 104,912천원	4개기관×2,185천원×12월 = 104,912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4개기관×1명×2,516,000원×12월 = 120,768천원	4개기관×1명×2,559,400원×12월 = 122,851천원	2,083
합계	963,918	2,219,075	1,255,157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목표 교육인원인 81,000명은, 2023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2024년 외국인력 쿼터 증가분인 78,000명의 50%를 단순 합계하는 방식으로 추산하였으며 (42,000 + 78,000/2 = 81,000), 목표 교육인원 81,000명을 1회 당 교

36) 법무부에 따르면, 2024. 6. 24.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사상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로, 입국 초기의 산업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음.

육인원 30명으로 나눈 2,700회의 강사료를 편성하였음.

〈연도별 교육대상·인원 및 2025년도 예산편성 상세내역〉

(단위 : 명,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	2025년 소요(안)
교육 대상	신규외국인 등록자 수	294,000	119,000	105,000	208,000	282,000	72,000	360,000*
	(전년대비 증가율)	—	(△59.5)	(△12.0)	(98.3)	(35.5)		(27.7)
교육 인원	프로그램 참여자수	51,000	6,000	7,000	30,000	42,000	9,000	81,000**
	(수강비율)	17.4	5.6	6.9	14.2	15.1	12.5	22.5
			(△87.1)	(9.3)	(308.4)	(43.4)	(-)	(92.8)

* '23년 대비 외국인력 쿼터 증가분 78천명 반영 (282천+78천=360천)

** '24년 외국인력 쿼터 증가분 78천명의 50% 수준 반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물량(A)	단가(B)	계(A×B)
2024	강사료	1,720회(39천명/23명)×3시간	117천원	602
	교재비 등	39천명	3.5천원	136
	인건비	4명×12월	2,516천원	121
	운영비	4개기관×12월	2,185천원	105
	계			964
2025	강사료	2,700회(81천명/30명)×5시간	126천원	1,701
	교재비 등	81천명	3.5천원	290
	인건비	4명×12월	2,559천원	123
	운영비	4개기관×12월	2,185천원	105
	계			2,219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추산하게 되면 2025년의 신규 외국인 등록자 수 대비 참여자 수의 비율은 22.5%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수강비율인 11.8%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에 해당함.

실제로, 2024년 9월 기준 신규 외국인 등록자 수는 197,053명, 조기 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등록자 수의 15%인 29,890명에 해당하

는바, 이를 감안할 때 2025년도 예산안의 목표 교육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³⁷⁾

〈2024. 9. 기준 신규외국인 등록자 수 및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신규등록외국인 수	참여자 수	참여비율(수강비율)
197,053명	29,890명	15.2%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2025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목표 교육인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안내는 사회통합정보망홈페이지,³⁸⁾ 리플렛 제작·배포, 조기적응 운영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더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대상 확대,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수강비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7)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그간 신규 등록외국인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충분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입장임.

38) www.socinet.go.kr

(4)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가) 예산안 개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1233-304)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및 국내정착 관련 정보 취득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 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및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1억 5,500만원(29.3%) 증액 편성된 139억 900만원임.

<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511	10,754	13,909	3,155	29.3

(나) 비자 전환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 및 전환 쿼터 달성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 신규사업인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은 기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가 숙련인력으로 계속 거주(정주화)하면

서 국익에 기여하도록 필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 과정(0~5단계, 515시간) 중 초급 교육과정인 215시간(0~2단계)의 교육으로 이루어짐.³⁹⁾

- 정부가 2023년 9월에 발표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은 ①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방향을 비숙련·단기순환형(E-9등 단순노무인력)에서 숙련·정주형(E-7-4)으로 전환하고, ② 전환 규모를 35,000명 수준(2023년 대비 30,000명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됨.

39)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문화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국내체류외국인 대상 표준 교육프로그램임.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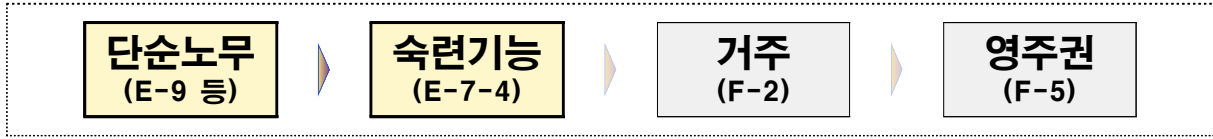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발급 단계〉



이에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가지(①일반형, ②조선업 현장 방문형)에 더하여 외국인력 유입 급증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 증가, 특히 예정 쿼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숙련·정주형 외국인력인 E-7-4 인력에 대해 언어·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임.

〈종류별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

구 분		일반형 (2009년~현재)	조선업 현장 방문형 (2024년 ~ 현재)	숙련기능인력 특별반 (2025년 추진예정)
대상	자격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등록 後)	희망 조선업체 내 외국인근로자	합법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
	교육인원	일반외국인 57천명	조선업 취업외국인 6.5천명	외국인근로자 13.4천명
교육내용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전반	한국어 기초	한국어 기초
교육 상세	장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지정기관	조선업체 사업장 내 교육장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지정기관
	시간	515시간(7개 과정) * 사전평가결과에 따라 이수시간 차등 적용	115시간	215시간
	수강방식	지정기관 출석 교육	강사가 업체 직접방문	지정기관 출석 교육
비자 혜택		①영주권 신청시 우대 ②국적필기시험 면제	—	숙련기능(E-7-4)비자 전환시 우대

* 자료: 법무부

-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 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13,423명 560개반(반별 인원 24명)에 대하여 215시간 분량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비로 구성되며, 교육대상 13,423명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분(30,000명)과 동반가족 수($17,430 = 30,000 \times 58.3\%$ ⁴⁰⁾)를 더한 값에 기초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비율 28.3%⁴¹⁾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예산 편성 상세내역〉

(단위: 명, 천원)

구 분	물량(A)				단가(B)	계 (A×B)
	총수요	교육대상	강좌수	시간	강사료	
본인 (E-7-4)	30,000 —	8,490 (30,000명×28.3%)	354 (8,490명/24명)	215 —	26 —	1,978,860
동반가족 (F-3)	17,430 (30,000명×58.1%)	4,933 (17,430명×28.3%)	206 (4,933명/24명)	215 —	26 —	1,151,540
합 계	47,430	13,423	560	215	26	3,130,400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2024년 9월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된 인력은 9,397명으로 2024년 목표 쿼터 35,000명 대비 27% 수준에 불과하여, 2025년까지 목표 쿼터의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 숙련기능인력(E-7-4) 목표 쿼터 및 그에 따른 동반가족 수가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보임.

40) 외국인 1인당 동반가족비율

41)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이 필요한 외국인 및 동반가족 중 기초 한국어교육 필요 비율로, '23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인 28.3%를 적용하였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임.

〈2021년~2024년 비자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1.~9.
합계		1,218	1,781	12,035	9,397
비전문취업 (E-9)	제조업(E-9-1)	1,090	1,482	11,083	8,651
	건설업(E-9-2)	4	7	46	83
	농업(E-9-3)	71	155	581	558
	어업(E-9-4)	25	78	135	90
선원취업(E-10)		28	59	190	13
방문취업(H-2)		0	0	0	2

* 자료: 법무부

- 또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의 수강대상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단순노무인력(E-9) 비자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데, E-9 인력이 기존 조선업체 등에 근무하여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면,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과정의 일부를 기(既)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목표 수강인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 9월 기준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E-9, H-2 비자 소지자 수는 약 1,300명 수준임.

〈2024.9.기준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구분	과정 참여 인원
E-7	5,385명
E-9	1,293명
H-2 등 기타	90명
합계	6,768명

* 자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평가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해당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형 (최대 515시간)						
	조선업 현장 방문형 (115시간)						
	숙련기능인력 특별반 (215시간)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9월까지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6,768명인바, 이들은 이미 115시간(0단계+1단계)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들이 추후에 숙련기능인력 특별반에서 수강할 경우, 100시간(2단계)만의 추가 교육으로 해당 사회통합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현황〉

(단위: 명)

총 계	'09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9월
515,226	117,408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58,028	68,781
(일반형)	(158,908)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57,040)	(62,013)
(조선업종)	(-)	(-)	(-)	(-)	(-)	(-)	(-)	(988)	(6,768) ⁴²⁾

* 자료: 법무부

42) 총 272개 과정

- 따라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 현황을 바탕으로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의 예상 수강인원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목표 수강인원의 215시간 일괄 수강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100시간 수강 분의 예산 편성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차년도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기존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23년에 계획한 숙련인력비자(E-7-4) 전환 쿼터를 달성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검찰활동

(1) 검찰 특수활동비

(가) 예산안 개요

- 특수활동비(230목)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⁴³⁾로써, 2025년도 검찰활동 특수활동비는 총 7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8억원(11.1%) 증액된 80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등 7개 세부사업	7,209	8,009	800	11.1

(나)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및 관련 검토 사항

-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7개 세부사업에 편성·집행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2025년의 경우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1335-303)” 및 “마약수사(1335-304)” 2개 세부사업에서 각각 전년대비 3억원, 5억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5개 세부사업의 경우 모두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4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42

2개 세부사업의 증액사유를 보면,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사업의 경우 ①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2억원), ②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처벌 등 금융·증권범죄 대응(0.5억원), ③「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 7)에 따른 시세조종, 무신고 거래소, 예치금 사기 등 가상자산범죄 대응(0.5억원) 등의 목적이며, “마약수사” 사업의 경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및 마약류 위장거래자금 활용 등의 목적임.

〈2025년 특수활동비 증액 편성 현황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 (A)	2025안 (B)	증감 (B-A)	증액사유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24	1,624	300	•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2억원 • 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처벌 등 금융·증권범죄 대응 +0.5억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에 따른 시세조종, 무신고 거래소, 예치금 사기 등 가상자산범죄 대응 +0.5억원
마약수사	248	748	500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및 마약류 위장거래자금 등 +5억원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임. 2024년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8억원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2025년 특수활동비 예산안은 다시 2023년 수준으로 편성(80억 900만원)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2023년과 2025년 예산안의 특수활동비 구성은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즉, 검찰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7개 세부사업 중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1335-303)” 및 “마약수사(1335-304)” 사업은 2023년과 비교하여 각각 1억 5,300만원, 4억 7,3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그 외 5개 세부사업은 모두 2023년 대비 감액편성된 것임.

〈2023년, 2024년과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세부사업별 편성 비교〉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2024 대비	2023 대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536	482	482	-	△54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22	110	110	-	△12
형사부 등 수사지원	5,074	4,567	4,567	-	△507
공공수사	356	320	320	-	△36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471	1,324	1,624	300	153
마약수사	275	248	748	500	47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75	158	158	-	△17
합 계	8,009	7,209	8,009	800	-

* 자료: 법무부

○ 한편, 2020년 이후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를 보면, 2020년 93.7억원에서 2024년 72.1억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2025년 특수활동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원 증액하여 2023년 특수활동비 수준(8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13억 5,800만원(△14.5%) 감액된 것으로, “마약수사” 세부사업이 2020년 대비 4억 2,6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세부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음.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연도별(2020~2025) 편성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예산	2021 예산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전년	2020
							대비	대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627	565	536	536	482	482	-	△145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43	129	122	122	110	110	-	△33
형사부 등 수사지원	5,934	5,341	5,074	5,074	4,567	4,567	-	△1,367
공공수사	416	374	356	356	320	320	-	△96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720	1,548	1,471	1,471	1,324	1,624	300	△96
마약수사	322	290	275	275	248	748	500	426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205	184	175	175	158	158	-	△47
합 계	9,367	8,431	8,009	8,009	7,209	8,009	800	△1,358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특수활동비 증액 사유 및 연도별 편성 추이를 토대로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의 특징을 보면,

2020년 이후 특수활동비의 전반적인 감액 편성 기조는 유지하되, 마약범죄,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가상자산 및 금융·증권범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피해 및 파급력이 큰 범죄수사에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특정 세부사업에 한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특수활동비 증액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예산안 심사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마약범죄,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된 특정 세부사업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증액 편성한 결과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달리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안의 전체 규모가 전년 대비 증액된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 사건(인지사건 등)의 증감 추이를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검찰 직접 인지사건 현황〉

(단위: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
건 수	9,114	7,724	6,542	4,447	3,927	5,138	3,413

* 주: 처리시점 기준

* 자료: 법무부

- 둘째,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24년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제기한바,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정보공개소송 대법원 판결⁴⁴⁾로 일부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

4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9728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비 지출 내역 중 일부에서 정해진 특활비 목적 외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언론·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적정한 집행을 시정하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할 것”을 시정요구(시정)로 채택한바 있음.

(2)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형사부 등 수사지원 등 3개 세부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⁴⁵⁾ 및 제4조의2⁴⁶⁾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공을 요구한 수사기관이 부담함.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매년 반기별로 통보비용 청구 현황을 취합하여 검찰 등에 송부하고, 검찰 등은 그 비용을 정산하고 있음.⁴⁷⁾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35-306), “검찰청운영 기본경비”(7018-252) 등 3개 세부사업에 관련 예산(일반수용비)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은 전년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47) 금융결제원이 취합하는 대상은 제1금융권이며, 그 외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자체적으로 통보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과 동일한 4억 4,96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3년	2024년	2025년(안)	산출내역
형사부 등 수사지원	435,100	305,100	305,100	152,550건×2,000원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 수사	200,000	140,000	140,000	70,000건×2,000원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5,000	4,500	4,500	3,000건×1,500원
합 계	710,100	449,600	449,600	225,550건

* 자료: 법무부

(나)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020년 이후 3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한 것으로 확인됨.
- 국회는 2024년도 법무부 예산안 심사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에 대해 ①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 ② 등기우편(2,000원) 대비 단가가 낮은 전자문서(SNS 및 문자, 500원)를 이용한 모바일통보서비스⁴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점⁴⁹⁾ 등을 감안하여 3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을 2023년 대비 2억 6,000만원 감액한바 있음.

48) 2021년 8월부터 개시

49) 전체 통보건수 대비 모바일 통보건수 비중 : 2021년 0.43% → 2022년 6.74% → 2023년 7.78%

그러나 감액편성된 2024년에도 9월말 기준 전체 예산 4억 4,960만원 중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및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된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형사부 등 수사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만 9,245만원 집행되는 등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20.6%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세부사업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9월말)
형사부 등 수사지원	435,100	-	435,100	-	435,100	61,419	435,100	-	305,100	92,445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200,000	265,158	200,000	172,656	200,000	25,062	200,000	169,407	140,000	-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75,000	-	75,000	-	75,000	-	75,000	-	4,500	-
합 계 (집행률)	710,100	265,158 (37.3%)	710,100	172,656 (24.3%)	710,100	86,481 (12.2%)	710,100	169,407 (23.9%)	449,600	92,445 (20.6%)

* 자료: 법무부

- 반복적인 예산 집행 부진의 원인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예산 상 통보 건수가 실제 통보 건수보다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

수사 과정에서의 금융거래정보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여유분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2024년 예산 및 2025년 예산안에 법무부와 검찰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예상 통보 건수를 222,550건(우편통보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최근 검찰의 실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는 매년 10만 건 안팎이며, 최근 5년 간 통보 건수가 가장 많은 2019년에도 약 16.7만 건이었음. 이를 감안하면, 2025년 예산안은 여전히 실소요대비 예산이 과대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연도별 검찰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

(단위: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보 건 수	167,528	109,967	49,544	67,342	106,695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2025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은 최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 및 예산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바, “형사부 등 수사지원”(2025년안 3억 510만원 편성),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2025년안 1억 4,000만원 편성) 두 세부사업에 편성된 통보비용 예산을 각각 일정비율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⁰⁾

50) 법무부와 검찰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수사 활동 증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감액비율을 논의할 때 참고할 여지가 있음.

(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1333-302)은 DNA 감식, 법화학감정, 음성·영상분석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개발을 통하여 과학수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며, 국제과학수사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2,900만원(11.2%) 증액된 1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학수사인프라구축	8,797	11,021	12,250	1,229	11.2

(나)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실적 감소를 고려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재검토 필요

- 영상녹화조사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⁵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5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검찰청은 2004년부터 동 세부사업 예산으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여 2023년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총 903실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음.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	838	841	885	890	890	899	903

* 자료: 법무부

2025년도 영상녹화조사실 관련 예산안은 전년대비 3,750만원(9.2%) 증액된 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된 영상녹화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500만원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된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 비용이 전년대비 증액된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영상녹화조사 관련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비목	2024 예산	2025 예산안	증감
영상녹화조사실 유지관리	210-09	19,400	19,400	—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	210-09	105,616	105,616	—
영상녹화장비 구매	430-01	282,500	320,000	37,500
합 계		407,516	445,016	37,500

* 자료: 법무부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 비용이 증액된 것은 내용연수 도과와 고장 등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장비 교체 수량이 2024년 113세트에서 2025년 128세트로 증가하였기 때문임.⁵²⁾

그러나,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이 크게 낮아지는 추세에서,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검찰의 영상녹화 조사실적은 4,001건으로, 전체 조사건수 대비 6.4%로 나타나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를 하회하고 있음.

〈연도별 영상녹화 조사실적〉

(단위: 건, %)

구 분	전체 조사건수(A)	영상녹화 조사건수(B)	영상녹화 조사비율(B/A)
2017년	227,415	37,007	16.3
2018년	212,324	24,145	11.4
2019년	184,479	19,768	10.7
2020년	111,763	6,553	5.9
2021년	64,991	4,902	7.5
2022년	57,938	4,694	8.1
2023년	62,564	4,001	6.4

* 자료: 법무부

-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 부진은 ① 공판과정에서 영상조사

⁵²⁾ 교체물량 128세트 × 단가 250만원 = 3억 2,000만원

녹화물의 「형사소송법」상 독립적 증거능력 불인정,⁵³⁾⁵⁴⁾ 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수단으로써 영상녹화물 활용 불가(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⁵⁵⁾), ③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 변경⁵⁶⁾ 등으로 인한 검찰의 직접조사 범위 축소 등의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이러한 사유들은 검찰의 영상녹화조사제도와 관련한 형사사법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하는바, 영상녹화장비 규모 대비 영상녹화조사 수요 부족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구조적인 요인으로 판단됨.⁵⁷⁾

53)[대법원 2014.7.10.선고 2012도5041판결]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4) 2020. 2. 4.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21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개정(2022. 2. 4.시행) 이후에도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촬영된 피의자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함.

55)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삭제되었음.

56) 직접조사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뀜(「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신설(2020.2.4.))

57) 다만,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10. 12. 시행)에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일정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부분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 수사에 대해 영상녹화조사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망
- 나. 외국 거주
-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 라. 소재불명
-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해 타용도 전환 모색 등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채택한 바 있음.

- 영상녹화조사 실적의 구조적 감소 요인, 국회 결산심사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는 현재 법무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① 내용연수 도과 여부 ② (도과하더라도) 고장 및 노후화 상태 등 장비 특성적 요소 외에도, 장비를 보유한 검찰청사에 “설치된 영상녹화조사실 규모 및 사용 실적”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장비 교체 주기를 늘리고, 보유 수량도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예산안의 경우, 영상녹화장비를 다수 보유하여 일부 장비를 교체주기에 맞추어 교체하는 대신,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기하더라도 영상녹화조사실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검 단위 청사(18개 청)의 교체 계획 예산(53개 장비, 1억 3,250만원)은 일부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⁵⁸⁾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 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8)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각 검찰청에 대한 실사조사를 바탕으로 내구연한 도래 장비 중 실제 정상작동이 어려운 장비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각 급 검찰청사(대검 제외) 영상녹화장비 교체 수량 및 영상녹화 실적>

(단위: 개소, 대, 회)

구분	영상녹화실 수	영상녹화장비 총 보유 대수	영상녹화장비 교체 수량		영상녹화 실시 횟수	
			2024년 9월말 현재	2025년 (계획)	2023년	2024년 9월말 현재
서울고검	9	6	9	0	0	1
수원고검	5	5	0	0	0	1
대전고검	2	2	4	0	18	8
대구고검	2	2	0	0	1	2
부산고검	3	3	0	0	25	8
광주고검	3	3	0	0	0	1
서울중앙지검	71	86	27	8	179	178
서울동부지검	42	43	23	0	102	51
서울남부지검	37	37	0	1	136	52
서울북부지검	26	27	0	3	71	60
서울서부지검	29	28	0	4	77	21
의정부지검	22	22	0	4	65	11
고양	17	18	0	3	8	18
남양주	9	9	0	0	36	54
인천지검	44	44	0	4	219	55
부천	20	20	8	1	147	223
수원지검	49	50	1	3	74	85
성남	19	20	3	2	20	30
여주	6	7	0	2	14	4
평택	13	13	0	6	13	46
안산	22	22	13	0	42	33
안양	17	17	0	8	196	181
춘천지검	10	10	0	2	37	39
강릉	8	11	0	2	151	118
원주	5	5	4	0	42	113
속초	4	4	0	1	12	18
영월	6	6	1	2	2	8
청주지검	18	19	0	5	164	117
충주	6	6	0	1	11	2
제천	4	4	0	2	5	7
영동	2	2	0	0	0	8
대전지검	19	21	0	3	125	54
홍성	7	7	0	3	57	39
공주	4	4	0	1	2	5
논산	4	5	1	1	4	3
서산	7	9	0	4	30	38
천안	13	13	7	1	109	510
대구지검	22	26	0	3	188	30
안동	6	6	0	3	2	3
경주	5	5	0	1	27	5
김천	7	7	4	1	27	9
상주	4	4	2	0	1	4
의성	3	3	1	1	42	18
영덕	3	3	0	0	88	2
포항	8	8	5	2	62	15
서부	16	16	0	3	62	18
부산지검	40	48	0	2	135	91
동부	15	15	0	1	79	95

구분	영상녹화실 수	영상녹화장비 총 보유 대수	영상녹화장비 교체 수량		영상녹화 실시 횟수	
			2024년 9월말 현재	2025년 (계획)	2023년	2024년 9월말 현재
서부	15	15	0	4	26	42
창원지검	18	18	0	2	101	74
진주	5	5	0	1	38	46
통영	9	9	0	2	49	60
밀양	5	5	0	2	7	2
거창	3	3	0	1	4	1
마산	9	9	0	0	36	21
울산지검	15	15	0	2	47	215
광주지검	23	25	0	3	64	49
목포	15	15	0	0	60	15
장흥	3	3	0	1	4	6
순천	14	14	0	2	166	54
해남	4	4	0	3	16	7
전주지검	19	19	0	4	40	21
군산	10	12	0	2	29	63
정읍	4	4	0	3	8	2
남원	3	3	0	2	6	0
제주지검	16	17	0	0	27	71
합 계	903	946	113	128	3,635	3,241

* 자료: 법무부

(4)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사업(1334-500)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찰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일선 검찰청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PC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5억원(△9.5%) 감액된 333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30,811	36,839	33,339	△3,500	△9.5

(나) 신규 도입된 검찰 정보화 장비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동 세부사업에서 각급 검찰청사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정보보안장비, 고속스캐너 등을 리스계약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입한 기존 정보화 장비에 대한 당해연도 리스료와, 2025

년 신규 도입하는 정보화 장비 리스료를 포함한 임차료(210-07) 60억 7,774만원이 편성되었음.

〈검찰 정보화 장비 도입 리스료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비고
2019년 도입분	464,818	—	2024년 종료
2020년 도입분	1,200,102	669,177	2025년 종료(6~9개월분만 편성)
2021년 도입분	1,421,497	1,421,497	
2022년 도입분	984,920	984,920	
2023년 도입분	943,472	865,502	실제 리스료 반영
2024년 도입분	<u>538,485</u>	<u>1,471,867</u>	계약시점 고려, 3~6개월분만 편성(24년)
2025년 도입분	—	665,350	계약시점 고려, 3~6개월분만 편성(25년)
(계수조정)	△494	△571	
합 계	5,553,788	6,077,742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은 2024년 예산에 PC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보안장비 도입 등을 위해 5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음. 각 정보화 장비는 5년 단위 리스계약이기 때문에, 2024년 신규 구입 분에 대해 2025년에도 1년 치 리스료가 편성되어야 하는바, 법무부와 검찰은 2025년 예산안에 2024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14억 7,187만 원을 편성함.

그러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①노후 전산장비 교체, ②정보

보안장비, ③고속스캐너의 경우 예산안 국회 제출 후인 2024년 10월 현재 실제 리스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 예산에는 실제 계약에 근거한 정확한 리스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노후 전산장비 교체”의 경우, 2024년 예산상 리스료(회당)는 1억 7,826만원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회당 1억 7,079만원에 체결된바, 2025년에 실제 리스료는 1년 기준 6억 8,317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2025년에 편성된 ‘2024년 노후 전산장비 교체’ 리스료 예산 7억 1,302만원 중 2,985만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24년 도입 장비 예산 대비 실제 리스료를 기반으로 한 25년 예산 조정안〉

(단위: 천원)

구분	계획 (`24 예산)	실제 계약	2025년 리스료		
	리스료(회당)	리스료(회당)	예산안(a) (`24예산기준)	수정안(b) (실제 계약기준)	증감 (b-a)
노후 전산장비 교체	178,256	170,794	713,023 (178,256×4회)	683,176 (170,794×4회)	△29,848
업무용 소프트웨어	51,448	발주진행중	205,792 (51,448×4회)	좌동	—
정보보안체계	28,763	28,546	115,052 (28,763×4회)	114,184 (28,546×4회)	△868
형사절차 전자화 고속스캐너 임차	36,500	28,119	438,000 (36,500×12회)	337,428 (28,119×12회)	△100,572
합 계			1,471,868	1,340,580	△131,287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현재 계약 체결이 완료된 “정보보안체계”, “고속스캐너”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2025년에 편성되는 ‘2024년 도입분 정보화 장비

리스료’는 총 13억 4,058만원을 실제 납부하게 되므로, 예산안(14억 7,187만원) 대비 1억 3,129만원 감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불요불급하게 신규 편성된 일반수용비 항목 감액 필요

-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는 ‘전문가위원 기념품’ 구입 예산 105만원, ‘음원이용료’ 예산 198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일반수용비(210-01) 상세 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1. 전산소모품	88,730	120,906	32,176
2. 정보화사업 평가경비	13,200	28,400	15,200
3. 검찰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비	21,100	21,100	—
4.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3,680	4,076	396
5.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	1,100	1,100	—
6. 정보통신 전문화 교육	43,000	43,000	—
7.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비	1,000	1,000	—
8. 조달수수료	17,300	22,927	5,627
9. 전문가위원 등 기념품		1,050	신규
10. 음원이용료		1,980	신규
11. 계수조정	△33	△11	22
합 계	189,077	245,528	56,451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전문가위원 기념품’의 경우 정보화사업 자문위원 및 정보통신 전문화 교육 강사 등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원이용료’의 경우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구내방송(전관방송⁵⁹⁾)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에 송출할 계획인 음원의 사용료 지불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자문위원 및 교육 강사에게는 근거 법령에 따른 자문료 및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기념품을 구입·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⁶⁰⁾

스마트폰과 음원플랫폼 및 송출장치(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발달로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각자 선호에 맞는 음원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내방송을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용 음원을 송출하기 위한 사업은 직원의 수요와 의사, 일괄적 송출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그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두 항목의 예산은 총 303만원으로 소액이나, 일반수용비(210-01)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이 원칙⁶¹⁾

59) 학교,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 등 다수 건물에 거주·근무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소리를 방출하기 위한 음향설비 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 아파트 안내방송, 학교 수업 중, 대형 건물 화재경보 등에 활용.

60) 필요시 검찰국 기본경비로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타 사업·행사시 제작한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함.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이므로, 해당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두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가 2025년 전년대비 5,342만원(28.3%) 증액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기념품 구입 및 음원이용료가 필요한 경우 편성된 일반수용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61)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7

(5)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1335-301)은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활동 경비와 수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수사보조인력인 검사실 사무보조원과 속기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 8,800만원(1.7%) 증액된 87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형사부 등 수사지원	85,223	86,475	87,963	1,488	1.7

(나) 신규 편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심의 수당으로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제12조제1항⁶²⁾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⁶³⁾에 따라 공개 청구

6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심의 기구임. 검찰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대검 예규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대검찰청 및 산하 고검·지검·지청 등 67개 검찰청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해오고 있음.

- 한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객관적·중립적 운영을 위해 심의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해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⁶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당초 전체 심의회 위원 7인⁶⁵⁾ 중 2인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 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65) 대검은 예규에 따라 7인으로 구성되나, 각급 검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각 청

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검찰은 2024년 7월 예규를 개정하여 법 취지에 맞게 대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를 3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음.⁶⁶⁾ 또한 검찰은 향후 예규를 추가 개정하여 외부전문가를 ‘3인 위촉’에서 ‘3인 이상 위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각급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도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임.⁶⁷⁾

- 신규 편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1억 5,100만원)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에게 지급되지 않던 참석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⁶⁸⁾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공개심의회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고자 하는 편성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최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을 고려할 때, 신설된 외부위원 수당이 다소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1억 5,100만원은 외부위원 3인, 참석 수당 15만원/회를 기

사정에 맞추어 정보공개심의회를 5인~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66)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444호, 2024. 7. 10. 전부개정)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한다.
④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법조계·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67) 전체 위원이 7인인 경우 외부전문가 3인 이상, 전체 위원 5인인 경우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운영하되, 검찰은 현재 전체 위원 5인으로 운영하는 지청 단위의 경우에도 전체 위원 7인,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68) 검찰은 외부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2024년 7월 예규 전부개정시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444호, 2024. 7. 10. 전부개정) 제7조(수당 및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준으로 계산할 경우 각급 검찰청(67개)별 연간 5회씩 총 335차례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규모임.

그러나 최근 3년간 각급 검찰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22년 190회(기관 당 2.8회), 2023년 191회(기관 당 2.9회)에 그쳤으며, 2024년의 경우 9월말 현재 194회(기관 당 2.9회)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연간으로 환산시 259회(기관 당 3.9회) 수준으로 2025년 예산상 기준(335회, 기관 당 5회)에 미치지 못함.

〈최근 3년간 각급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

(단위: 회, 명)

2022년			2023년			2024년(9월말)		
개최 실적	기관당 평균	회당 평균 참석인원 (전체/외부)	개최 실적	기관당 평균	회당 평균 참석인원 (전체/외부)	개최 실적	기관당 평균	회당 평균 참석인원 (전체/외부)
190	2.8	6.6/2.1	191	2.9	6.3/2	194	2.9	6.2/2

* 자료: 법무부

- 또한 검찰이 향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외부위원 비중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나, 현재 일부 지청 단위 검찰청⁶⁹⁾은 여전히 정보공개심의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 경우 외부위원을 2인으로 위촉하고 있음.

즉, 지침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외부위원 3인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 것 역시 예산이 실소요보다 과다하게

69) 검찰에 따르면 67개 기관(대검, 고검, 지검, 지청) 중 약 20개 지청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계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검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예산은 최근 개최 실적(200회 미만) 대비 2025년 개최 목표 횟수(335회)가 다소 높게 책정된 점, 일부 청은 여전히 외부위원을 2인으로 운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만, 추후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3인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감안하여 구체적 감액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⁷⁰⁾

(다)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의 최근 집행 실적을 반영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검찰은 2003년 7월부터 검찰 업무에 정통하면서 민원인들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일반인)을 “국민 소통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형사 절차, 사건 민원 등에 대한 상담·질의에 응대하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70) 예를 들어, 검찰의 적극적 확대 의지를 감안하여 외부인원의 예산상 기준 인원을 3명 → 3.5명으로 상향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수를 2024년 실적을 감안하여 335회→260회로 하향할 경우, 10%(1,500만원) 가량 감액 조정이 가능함.

* 260회 × 3.5인/회 × 15만원 = 약 1억 3,600만원 (정부안 대비 △1,500만원)

〈국민 소통 옴부즈만(시민 옴부즈만) 제도 개요〉

- **임기 및 인원** : 임기(1년, 연임가능), 인원(각 청별로 자율 선정)
- **근무지 및 보수** : 검찰청 내 별도 사무실, 무보수(실비 지급 가능)
- **접수유형** : 직접대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각청 홈페이지), 서면 등
-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례** : 최우선 상담자 지정
 - ※ 최우선 상담자 :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가정·성폭력 피해자, 기타 영세민
- **소통 방법** : 민원인은 옴부즈만에게 형사 절차, 사건민원 등 관련 상담, 질의, 의견제시
→ 옴부즈만은 민원인을 상담하고 상세 내용 안내
 - ※ 옴부즈만은 상담 관련 내용을 검찰 관계자에게 문의 가능, 검찰은 수사보안 및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 없는 범위에서 설명 / 검찰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민원인 직접 면담하고 설명 가능
- **자격** : 50세 이상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법률·검찰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민단체·지자체·변호사회 등 법조계·법학 교수회 등의 추천 받은 자
 - 변호사 등 법률 자격 소지자 또는 법률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검찰에 10년 이상 근무한 덕망 있는 전직 원로 검사·수사관
 - ※ 법조 직역에 종사하여 사건 관계인으로 될 우려 있는 사람은 제외
 - ※ 가급적 상담 분야에 능통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
- **위촉 절차**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후보자 선정
 - 기관장이 후보자 중 적임자 선발

* 자료: 법무부

위촉·활동하는 옴부즈만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으나, 국가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예산집행지침⁷¹⁾에 따라 실비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도 동 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 명목으로 예년

71)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151

과 동일한 2억 3,47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시민 옴부즈만 운영 실적 및 사례금 집행 실적을 보면, 2021년 및 2022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민원인 방문 상담 및 옴부즈만 출근일이 감소하여 운영 실적이 크게 저조하였으나, 2023년부터 집행액 등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옴부즈만을 위촉한 검찰청은 17개로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도 2개 감소하였으며, 위촉 옴부즈만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국민 소통 옴부즈만(시민 옴부즈만) 운영 및 예산 집행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옴부즈만 위촉 청	19	19	19	18	17	17
위촉 옴부즈만 수(명)	88	87	78	73	71	70
운영실적(상담건수)	3,039	2,036	948	1,039	1,895	1,305
예산액(천원)	234,700	234,700	234,700	234,700	234,700	234,700
집행액(천원)	213,462	142,692	101,162	137,875	192,987	142,010

* 자료: 법무부

특히, 2019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사례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시민 옴부즈만’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콜센터’가 2019년 6월 개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검찰콜센터는 전국 검찰 민원전화번호를 ‘1301’로 통합하여, 사건·

벌과금 문의 등을 전담하는 검찰청 공식 콜센터로, 검찰국 소관 다른 세부업인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콜센터 운영지원 1억원(일반수용비), 공공요금 1억원(공공요금 및 제세), 콜센터 장비 유지보수 1억 8,500만원(시설장비유지비), 콜센터운영 위탁용역비 3억 4,500만원 등 7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이처럼 2019년 6월 개소한 검찰콜센터가 기초적인 사건 상담 및 벌과금 상담, 보이스 피싱 상담, 기록 열람/등사 및 불기소이유고지서 등을 유선으로 상담하게 되면서,⁷²⁾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 예산은 2019년 이후 동일하게 2억 3,47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바, 검찰콜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20년 이후에는 옴부즈만 사례금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2억원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에 편성된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은 검찰콜센터 개소 이후 전반적인 상담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최근 옴부즈만 위촉 청 및 위촉 옴부즈만 수의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2)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 검찰소개 - 1301검찰콜센터

(6) 공공수사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공공수사 사업(1335-302)은 선거사범·국가안전위해사범·불법집단 행동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200만원(4.9%) 증액된 3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공수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수사	3,106	3,276	3,438	162	4.9

(나) 2025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정치자금법」 제54조⁷³⁾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⁷⁴⁾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

73)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7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에 매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안에도 전년과 동일한 4,512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매년 예산 집행 및 지급 실
적이 크게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한 차례
(43.56%)를 제외하고는 선거범죄포상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나
타남. 전국단위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진 올해의 경
우에도 9월말까지 검찰이 접수한 선거범죄포상금 신청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지급 결정은 0건으로 2023년에 이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집행률 0.0%).

〈연도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해당연도 주요 공직선거	예산	지 급		
			인원	금액	집행률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50,000	1	30	0.06%
2018	제7회 동시지방선거	50,000	1	21,780	43.56%
2019		50,000	0	0	0%
2020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45,000	0	0	0%
2021		11,120	1	80	0.72%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동시지방선거	45,121	1	380	0.84%
2023		45,121	0	0	0%
2024 (9월기준)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45,121	0	0	0%

* 자료: 법무부

-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직선거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⁷⁵⁾에 근거하여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선거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초기 신고, 제보, 포상금 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편성하는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과 당해연도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대통령선거(1133-300), 국회의원선거(1133-301), 전국동시지방선거(1133-302), 재보궐선거(1133-303) 등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신고포상금을 운영·지급하고 있음. 2020년 이후 집행 실적을 보면, 지급 인원 수, 지급액, 예산집행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법무부보다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급		
			인원	금액	집행률
2020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1	19,000	95.00%
	국회의원선거관리	298,000	43	257,650	86.46%
2021	위법행위예방활동	31,073	7	29,600	95.26%

75)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급		
			인원	금액	집행률
2022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1	15,000	75.00%
	대통령선거관리	185,000	4	6,400	3.46%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50,000	0	0	0%
	재보궐선거관리	13,200	0	0	0%
2023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2	18,800	94.00%
	재보궐선거관리	4,000	0	0	0%
2024 (6월기준)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3	4,100	20.50%
	국회의원선거관리	200,000	12	103,200	51.60%
2025 예산안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특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었던 2022년의 경우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 6,800만원까지 편성하였다가, 재보궐선거 외에 공직선거가 없었던 2023년에는 2,400만원까지 축소 편성하는 등 중앙선관위는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연도인지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⁷⁶⁾

2025년의 경우에도 중앙선관위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안에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만 2,000만원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편성하고 있는바, 오히려 검찰이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보다 2.3배 가량 많이 편성(4,512만원)하고 있음.

76) 2023년의 경우 오히려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4,512만원)이 중앙선관위(2,400만원)보다 88% 가량 많이 편성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①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②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축소 등 예산을 탄력적·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채택한바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은 저조한 집행실적과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취지,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무부와 검찰도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었던 2021년에는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1,112만원으로 축소 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감액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021년 수준으로 편성시 3,400만원 감액).

(7)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1335-303)은 주가조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경제형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6,400만원(5.2%) 증액된 15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2,474	14,644	15,408	764	5.2

(나) 신규 편성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 준비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025년 동 사업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으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예산 2억 8,000만원(일반수용비)이 편성되었음.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검사·수사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증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협의하여 교육기간 2년의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과정이 개설되면 2025년부터 매년 20명 규모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훈련 파견 없이 야간 및 주말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수료하도록 할 예정임.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능화고도화되는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금융·증권 분야 우수인력 양성

□ 사업 필요성

- 금융·증권 분야는 법체계가 복잡하고 실무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전문적인 교육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할 수 있는 위탁교육 실시 필요

□ 사업 내용

- 교육 기간 : 2년 석사 과정
 - ※ 야간 및 주말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선발 대상자의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 위탁교육 기관 :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 세부 학과 명칭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 협의 중
- 주요 커리큘럼
 - ‘기업회계와 재무보고’, ‘가상자산 실무연구’, ‘금융시장론’ 등 금융·증권 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 예정
 - 수료 요건 등 구체적인 학과 일정 및 내용은 법무부-서울대 협의 중
- 교육 대상자 선발 규모 : 매년 20명(검사 15명, 수사관 5명) 선발 예정
- 선발 시기 및 일정 : 예산 확정 후 서울대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 소요 예산

- 2025년 : 일반수용비 2억 8,000만원
 - 14,000천원 × 20명 = 280백만원
 - ※ 1인 총 교육비 年 2,000만원 중 1,400만원 지원(교육생 자부담 600만원)
- 2026년 이후 : 2년 과정이므로 연간 교육생 40명에 대해 5억 6,000만원 매년 투입 예정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정리

- 지능화·고도화되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관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현재 법무부와 서울대 간 업무 협의 진행 상황, 예산 확정 후 선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을 2025년 1학기부터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학과 명칭, 운영 비용 부담, 수료 요건 및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또한, 위탁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를 선발해야하는데, 법무부·검찰 차원의 내부 선발절차 뿐만아니라, 선발된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시 서울대학교의 별도 입학사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을 모두 거쳐야 함.

그러나 법무부·검찰의 내부 선발절차가 예산 확정 이후에 가능하고,⁷⁷⁾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사일정⁷⁸⁾상 2025년도 1학기 교육대상자는 일반적으로 2024년 12월 초 입학지원서 접수, 12월 중순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2025년 1월 초에 합격자가 확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5년 1학기 학사 일정에 맞추어 그 전에

77)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기인사, 선발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하반기 중 내부 선발이 완료되어야 함.

78)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개설·운영되고 있는 수리정보과학과(계약학과)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기준

서울대 입학사정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계약학과) 2025년 신입생 입학전형〉

구분	일시	비고
1. 입학지원서 접수	2024. 12. 02.(월) 10:00 ~ 12. 06.(금) 17:00까지	인터넷접수
2. 지원 서류 제출	2024. 12. 02.(월) 10:00 ~ 12. 06.(금) 17: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3. 면접 및 구술고사	2024. 12. 13.(금) 15:00	
4. 합격자 발표	2025. 01. 10.(금)	
5. 합격자 등록	2025. 02. 03.(월) ~ 02. 07.(금) 17:00 까지	
6. 총원 합격자 발표	2025. 02. 10.(월)	
7. 총원 합격자 등록	추후공지	

* 자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https://convergence.snu.ac.kr/>)

○ 한편, 검찰국 내 다른 세부사업인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1334-501)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 계약학과)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⁷⁹⁾ 해당 과정이 최초 개설된 2013년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학기 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신규 편성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은 사업 준비

79) 디지털수사 역량 강화 및 법학·정보기술 분야 융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13년 개설하였으며, 매년 10명의 교육생을 선발, 1인 당 1,4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함(2025년 20명(재학생10명, 신입생10명)에 대한 훈련지원비로 일반수용비 2억 8,000만원 편성).

상황 및 교육생 선발 절차 소요 시간, 타 교육과정 선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첫 해인 2025년에는 2학기부터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반영하여 교육비 지원 예산은 한 학기 분인 1억 4,000만원으로 50% 감액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1335-305)은 성범죄(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사범 수사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2,300만원(6.4%) 증액된 37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4,244	3,481	3,704	223	6.4

(나) 연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및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예술치료⁸⁰⁾를 지원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580만원이 편성되었음.

80) 개인의 정신/심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예술매체(미술, 소리, 동작, 연극 등)를 사용하는 현대 정신치료의 한 분야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예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상담사⁸¹⁾에게 직접 의뢰하거나, 대표상담사를 통해 지역별 예술심리상담사를 연계하여 심리·예술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의 최근 실적을 보면, 2019년 33건, 2020년 18건 실시하였으나, 이후 치료 실적이 크게 떨어져 2022년에는 치료 실적이 없었고, 2023년 및 2024년(9월말 기준)의 경우 단 1건의 심리·예술치료를 실시하였음.

〈연도별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실적〉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월말
33	18	3	—	1	1

* 자료: 법무부

또한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비용으로 지출되는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19년 이후 매년 예산 집행실적이 크게 저조하여 예산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예산은 30% 이상 집행된 적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는 3.8%만 집행되고 2022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부진한 집행 실적을 반영

81) 검찰청사에 직접 배치되는 심리·예술치료 상담사로, 재경지검 및 수원지검에 총 3명의 대표상담사가 배정되어있음. (서울남부·동부지검 1인, 서울동부·수원지검 1인, 서울중앙·북부지검 1인)

하여 2019년 7,000만원 규모였던 심리·예술치료 예산은 2023년 2,280만원, 2024년에는 1,580만원이 편성되는 등 2019년 대비 4분의 1 이하로 크게 축소되었음.

〈연도별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9월말)	2025(안)
예산액	70,000	70,000	60,000	60,000	22,800	15,800	15,800
집행액	15,760	18,266	2,291	0	3,254	1,200	
집행률	22.5	26.1	3.8	0.0	14.3	7.6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 실적 부진 원인에 대해 일선청의 제도 인지 부족 및 검사실 사건처리 부담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경지검 및 수원지검 관련 부서에 심리·예술치료 제도 안내자료를 배포 및 적극 활용을 요청하였고(2024. 2월), 전국 청에도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이 2,280만원으로 크게 감액된 2023년에도 집행률은 14.3%에 그쳤고, 예산이 추가로 감액 편성(1,580만원)된 2024년도 9월말까지 집행률이 7.6%에 그치는 등 예산의 축소 편성에도 집행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현재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는 일반회계에서 검찰이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⁸²⁾에 근거하여 법무부 인권국이 소관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범죄피기금 사업은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운영⁸³⁾하고, 범죄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또는 심리상담 후 그 치료 비용을 청구하면 그 실비를 지원⁸⁴⁾하는 방식임.

검찰의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와 달리 범죄피기금 사업의 경우 예산이 대부분 집행⁸⁵⁾되는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는 범죄피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반회계로 추진 중인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은 극히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관련 예산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83) 2025년 예산안에 전국 17개소 설치된 스마일센터 운영예산(민간경상보조)으로 85억 7,100만원 편성

84) 2025년 예산안에 범죄피해자 치료비(신체·정신) 지원 목적으로 20억 9,960만원 편성

85) 2023년 스마일센터 운영 예산 98.6% 집행,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 98.9% 집행

(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대응 사업의 적극적 사업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 일반수용비(210-01)로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관련 전문화 교육’(이하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과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은 전국 5개 권역별 고등검찰청 산하 성폭력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사교육 자료집 제작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예년과 동일한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토킹범죄 수사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등 제작을 목적으로 2023년 신규 편성한 사업이며, 2025년 예산안에는 2023년·2024년과 동일한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교제살인 등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는 상황과, 해당 범죄의 심각성 및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효과적 대응 및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두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취지 및 예산 편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의 경우 2021년 40.5% 집행된 이후 매년 집행률이 하락하여 2024년 9월말 기준 3.6% 집행에 그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최초 편성된 2023년 2.2%만 집행되었고, 2024년 9월말 기준 집행률은 0.2%에 불과함.⁸⁶⁾

〈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 및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2021	2022	2023	2024 (9월말)	2025(안)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	예산액	91,000	91,000	91,000	91,000	91,000
	집행액	36,812	11,060	7,122	3,315	
	집행률	40.5	12.2	7.8	3.6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예산액	—	—	67,000	67,000	67,000
	집행액	—	—	1,441	163	
	집행률	—	—	2.2	0.2	

* 자료: 법무부

- 두 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3년 상반기까지 집합

86) 검찰은 2024년 11월 중 ‘스토킹처벌법 벌칙 해설서’를 발간하여 1,485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집행액은 1,501만원, 집행률 22.4% 수준에 그침.

교육·워크숍 개최 등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와 무관한 2024년의 집행실적이 오히려 2023년보다 더욱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두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은 코로나19 외에도 예산 과다편성, 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 관련 수사부서의 사업 인지도 부족, 검사실 업무부담에 따른 참여 및 협조 부족 등의 원인이 중첩된 결과라고 판단됨.

- 디지털성범죄 및 스톱킹범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과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각 범죄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라는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제 집행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현재 편성된 예산안 규모(‘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 9,100만원,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6,700만원)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국제법무활동

(1)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가) 예산안 개요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은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법률지원 기능 강화 및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3,500만원 (35.4%) 증액 편성된 5억 1,600만원임.

〈2025년도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	381	516	135	35.4

(나)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을 하나의 세부사업에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

- 내역사업인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법률지원 강의 등을 개최하고, 온라인 법률지원, 외국정부와의 MOU 등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한 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의 대상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의 2024년 및 2025년 예산 편성내역 비교〉

(단위 : 천원)

	2024년도 예산 편성내역	202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증감액
일반수용비 (210-01)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 (76,000천원)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 (65,000천원)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 (116,000천원)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 (65,000천원) ○ 해외진출기업(중견기업 등) 온라인 법률지원 (89,000천원)	129,000
국외업무 여비 (220-02)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 설명회 참석 (24,000천원) ○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MOU 체결 (25,000천원)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 설명회 참석 (24,000천원) ○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MOU 체결 (25,000천원)	—
사업추진비 (240-01)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다과비 등 (4,800천원) ○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업무추진 (7,020천원)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다과비 등 (4,800천원) ○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업무추진 (7,020천원)	—
임차료 (210-07)		강연장 대관료 2건×3,000천원 (6,000천원)	6,000
합계	202,000	337,000	135,000

* 자료: 법무부

- 2024. 6. 3. 경제관계장관회의('24. 6. 3.)에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⁸⁷⁾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절벽을 겪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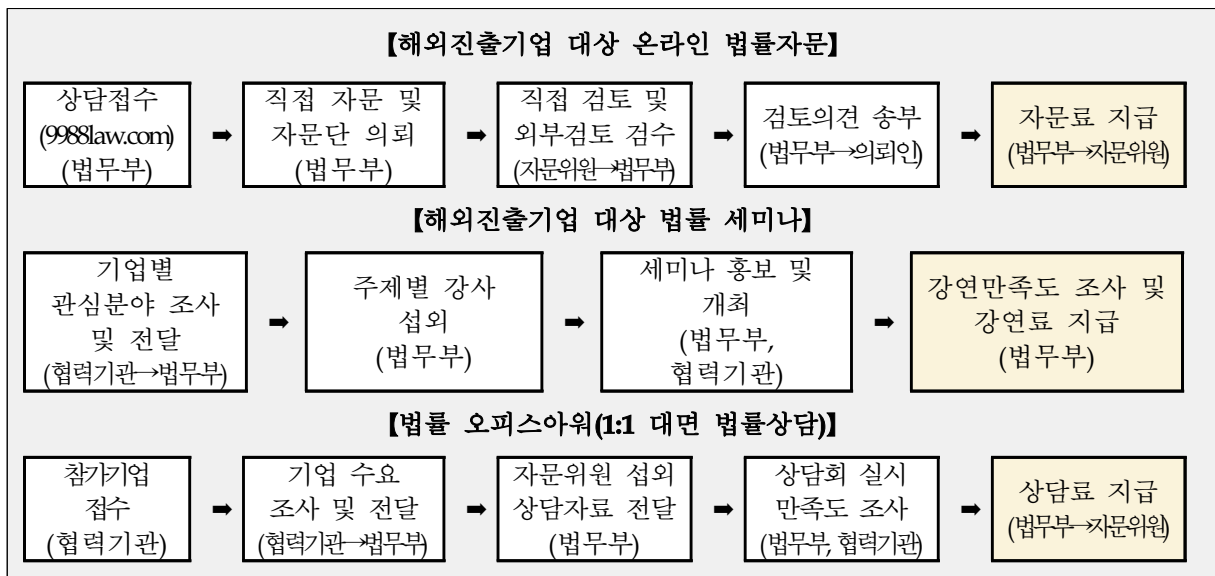
87) (법률 자문)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지원대상을 초기 중견기업(3년)*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산업·중기부)와 연계강화

* (현행) 중소기업만 대상 → (개선) 중소기업 + 초기 중견기업(졸업 후 3년 이내)

안을 검토한바 있음.

그에 따라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2024. 7. 1.)하여 중견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법률자문 상담을 2024년 40개 기업에서 2025년 60개 기업으로 확대하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자문, 세미나 등 진행과정>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법무부는 이미 타 세부사업인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지원(1431-301)” 사업을 통하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법무 분야 전문가(213명)들로 구성된 자문위

원단임.

자문위원단의 법률자문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자문료 7,100만원[일반자문(30만원)×170건 + 전문자문(100만원)×20건]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온라인 법률자문만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각 세부사업별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지원 사업 편성내역 비교〉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 일반수용비(210-01) : 270,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 (116,000천원) · 강사료 36만원×12회=4,320천원 · 법률자문 상담료 등 150천원×60개기업×12회= 108,000천원 · 동시통역비용 등 2,000천원×2회=4,00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 (65,000천원) · 원고료 5,000천원×5종=25,000천원 · 인쇄비 등 16천원×500부×5종=40,000천원 다. 해외진출기업(중견기업 등) 온라인 법률지원 (89,000천원) · 일반자문료 80건×300천원+50건×500천원 = 49,000천원 · 전문자문료 1,000천원×40건 = 40,000천원 ○ 임차료(210-07) : 6,000천원 · 강연장 대관료 2건×3,000천원 = 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9,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 설명회 참석 (24,000천원) · 6,000천원×4회=24,00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MOU 체결 (25,000천원) · 필리핀 1,375천원×2명=2,750천원 · 사우디아라비아 5550천원×4명=22,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다과비 등 (4,800천원) · 400,000원×12회=4,80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업무추진 (7,020천원) · \$5,400×1회×1,300원=7,02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6,6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81,000천원) · 자문료 : 374천원×190회=71,000천원 · 자료발간 : 10,000천원×1회=1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간담회 (1,000천원) · 1,000천원×1회=1,000천원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따라서, 현재 국제법무국에서 수행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세부사업에서 수행중인 1:1 대면 법률자문과,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세부사업에서 수행중인 온라인 법률자문으로 이원화되어 진행중인바, 전자의 세부사업 소관 부서는 국제법무지원과이고 후자의 경우 국제법무정책과임.

이에 더하여, 법무부는 2025년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온라인 법률 자문 예산을 기존 온라인 법률자문 수행 사업인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사업이 아니라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에 추가 편성하였음.

-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자문은 사업 수행방식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의 차이가 있을 뿐 목적·취지·성과목표 등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짐. 같은 사업을 사업수행주체가 다른 서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은 사업 수행과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중복 편성·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사업은 실제로 하나의 부서(국제법무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국 신설로 인한 조직개편과정에서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이 병행되지 못하여 예산이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성과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지원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규정」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국제법무지원과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세부사업을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⁸⁾

88)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산하에 둔다.

(2)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가) 예산안 개요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431-301)은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해외 법무 요인 등과의 법무분야 국제협력, 기업·청년 해외 진출지원, FTA, BIT⁸⁹⁾ 등 통상·투자 협정 관련 법률지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⁹⁰⁾ 아동반환을 위한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0.8%) 증액 편성된 7억 3,400만원임.

〈2025년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거래 및 국제통 상 법률지원	621	728	734	6	0.8

89)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 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보장협정) : 외국인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

9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계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나) 사업 성과 파악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 추가확보 노력 필요

- 내역사업인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청년법조인들에게 국제업무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법조인 대상 국제업무 전문 교육과정인 ‘O.K. 아카데미’⁹¹⁾ 및 국제기구·로펌 실습 프로그램인 ‘글로벌 펠로우십’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해외 로펌, 국제기구 등에 한국의 청년법조인(1~10년차)을 파견(3개월~1년)하여 현지 법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O.K. 아카데미 수료 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2024년 10월부터 제10기 O.K. 아카데미가 진행중임.

〈O.K. 아카데미 실시 현황〉

구분	교육기간	수료생
제1기	2014. 9. ~ 2015. 7.	57
제2기	2016. 3. ~ 2016. 6.	70
제3기	2017. 3. ~ 2017. 7.	45
제4기	2018. 3. ~ 2018. 7.	32
제5기	2019. 3. ~ 2019. 6.	36
제6기	2020. 9. ~ 2020. 12.(온라인)	66
제7기	2021. 10. ~ 2021. 12.(온라인)	36
제8기	2022. 9. ~ 2022. 12.(온라인)	23
제9기	2023. 10. ~ 2024. 1.	77
제10기	2024. 10. ~ 2024. 12.	진행중

* 자료: 법무부

91)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의 약자임.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동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360만원, 교육 및 홍보자료 발간 등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2023년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신설을 계기로 개편된 해외인턴 파견사업으로, 이전까지는 장·단기 해외인턴 파견사업⁹²⁾으로 운영되던 중,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상 중단되었던 사업을 전면 개편한 것임.

동 사업은 2015년 이후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이전까지 장기 해외인턴이 점차 감소하였고, O.K. 아카데미 수료 여부와 무관한 예비법조인 대상 단기 해외인턴 파견 위주로 운영되는 등 사업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하여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법조인 현황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점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⁹³⁾

〈장·단기 해외인턴 파견 현황〉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3	개편	2024
장기 해외인턴	7	5	3	3	1	코로나19 로 중단	글로벌 펠로우십	15
단기 해외인턴	47	46	38	38	46		단기 해외인턴	24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92) 단기 해외인턴(2주)은 예비법조인(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며, 장기 해외인턴은 청년법조인을 대상으로 3개월~1년간 파견하는 프로그램임.

93) 국회 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p.94

-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국제법무지원과가 신설되면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되었던 청년법조인 해외 진출 사업 중 장기 해외인턴 파견사업을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 중으로, 2024년에 10개국 19여 곳의 파견기관을 마련하여 총 6개국 11개 기관에 15명을 파견하였으며, 파견기관 역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2024년 제1회 글로벌 펠로우십 파견기관 및 선발 현황〉

국가	지역	파견기관	모집 인원	선발 인원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2명	1명
프랑스	파리	Arche Legal	1명	0명
폴란드	카토비체	KBZ Legal	1명	1명
UAE	두바이	Al tamimi	2명	2명
	두바이	지음 두바이사무소	1명	1명
베트남	하노이	세종 하노이사무소	2명	2명
	하노이	김·장 법률사무소	1명	1명
	호치민	세종 호치민사무소	2명	2명
	하노이 등	화우 베트남 사무소	1명	1명
	호치민 등	광장 베트남 사무소	1명	0명
인도	뉴델리	Buddtree Management	3명	1명
러시아	모스크바	율촌 러시아사무소	1명	0명
중국	베이징	광장 베이징사무소	2명	0명
	베이징	세종 베이징사무소	1명	0명
	베이징	King & Wood Mallesons	1명	0명
	상하이	King & Wood Mallesons	1명	0명
싱가포르	싱가포르	피터앤김 싱가포르	1명	0명
대한민국	서울	율촌	2명	2명
	서울	피터앤김	1명	1명
총계			총 10개국 27명	총 6개국 15명

* 주: 제1회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공고 당시 총 10개국 19개 기관(총 27명)을 섭외하였으며, 로펌 측 선발, 중복 합격자의 철회 등 과정에서 최종 15명(6개국, 11개 기관) 파견 완료

* 자료: 법무부

- 다만, 내역사업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O.K.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교육자료 예산 560만원만을 편성하고 있을 뿐,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외 파견기관 섭외 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사업의 목적이 청년법조인의 해외 취업임을 감안할 때, 파견된 청년법조인이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종료 이후 해당 또는 별도의 해외기관에 정식 취업하였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기존 ‘장기 해외인턴 파견’ 사업이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파견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⁴⁾

94) 법무부는, 현재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제1회 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 대화방 개설 등 SNS를 활용한 수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파견자 사전 간담회 실시, ▲월간 업무 일지 제출·관리, ▲파견처·파견자 대상 상시 점검, ▲취업 현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바. 교정 활동

(1) 교도소 행정지원

(가) 예산안 개요

-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1531-300)은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과 야근자 건강검진 등 직원 근무지원,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0억 100만원(6.2%) 증가한 515억 1,600만원임.

〈2025년도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도소 행정지원	47,406	48,515	51,516	3,001	6.2

- 동 사업은 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전국 교정기관 시설 및 장비 임차, 사무실 개보수를 위한 “교정기관 행정지원”, 2)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프로그램 운영, 야근자 건강검진, 교정공무원 여비, 사업추진비를 지원하는 “교정공무원 업무지원”, 3)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4)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재정효율화 정책연구를 위한 “교정정책 연구(순증)”, 5) 2025년 아태교정본부장 회의 개최를 위한 “국제행사 지원(순증)”, 6)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민간이전사업”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교도소행정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도소행정지원	47,406	48,515	51,516	3,001	6.2
· 교정기관 행정지원	3,771	4,830	4,830	—	
· 교정공무원 업무지원	4,411	3,466	4,192	726	20.9
· 공무원 처우개선	26,511	27,384	29,533	2,149	7.8
· 교정정책 연구	—	—	300	300	
· 국제행사 지원	—	—	298	298	
· 민간이전 사업	12,713	12,835	12,363	△472	△3.7

* 자료: 법무부

(나) 교정공무원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예산 비목 변경 필요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수용자에 의한 폭행, 수용자 자살 등 폐쇄적 공간인 교도소에서 수용자 관리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생기는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음나래 프로그램”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외부전문상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구성〉

■ 마음나래 프로그램

외부전문상담	외부 상담 전문가를 통한 가족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 조직적응 등에 관한 대면, 전화, 온라인(화상) 상담 실시
긴급 심리지원	수용자·교정공무원 자살(자살 기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피해 등 교정관련 사고 발생 시 교정기관 방문 및 개별 센터방문을 통한 긴급 개인심리지원
정신과 진료비 지원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전국 교정기관 방문,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 교육, 뇌파·맥파 검사를 통한 심리진단 및 상담, 피지컬 상담 실시

■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비대면 및 대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 비대면 프로그램: ‘ZOOM’ 프로그램
- 신규교도관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 장기근속자 자긍심 회복 프로그램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자료: 법무부(<https://maumnarae.co.kr>)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15억 3,600만원 대비 7억 550만원 증액(46%)된 2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 2억 5,800만원 (163.8%), “자살 및 병사 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 4억 4,750만원(426.2%)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천원, %)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1,536,702	2,242,202	705,500	45.9
·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57,500	415,500	258,000	163.8
· 자살 및 병사 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05,000	552,500	447,500	426.2
· 심리치료 프로그램	238,502	238,502	—	—
· 직무스트레스 해소 관련 교육	344,500	344,500	—	—
· 현장근무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691,200	691,200	—	—

* 자료: 법무부

-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마음나래 프로그램” 중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교정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수용자 자살,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발생한 경우 전화 스크리닝 후 긴급상담을 통해 심리지원을 하고, 폭행피해 관련 상담을 받은 자에게 진료 및 치료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임.
- 연도별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 “마음나래 프로그램” 중 ‘찾아가는 심신케어’ 실적은 2022년 2,211명에서 2023년 4,332명과 2024년 9월기준 4,836명으로, ‘외부 전문상담’ 실적은 2022년 902명, 2023년 893명, 2024년 9월 기준 1,232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긴급 심리지원’(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022년 276명에서 2023년 285명과 2024년 9월 기준 265명으로 비교적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 7억 550만 원을 증액하였음. 이는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에 보다 집중 지원하려는 예산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① 마음 나래 프로 그램	외부 전문상담	418	478	720	902	893	1,232
	긴급 심리지원	211	111	16	276	285	265
	찾아가는 심신케어	2,151	코로나-19 미운영	2,774	2,211	4,332	4,836
②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300	코로나-19 미운영	785	1,029	1,540	1,080
계		3,080	589	4,295	4,418	7,050	7,305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세출각목명세서 상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자살 및 병사 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 관리는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는 바, 2025년의 경우 증액한 예산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 집행될 것인지 확

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9월 기준)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57,500	503,499	157,500	314,310	415,500
자살 및 병사 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05,000		105,000		552,500
심리치료 프로그램	238,502		238,502		238,502
직무스트레스 해소 관련 교육	344,500	493,000	344,500	316,176	344,500
현장근무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691,200	549,154	691,200	384,851	691,200
합계	1,536,702	1,545,653	1,536,702	1,015,337	2,242,202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⁹⁵⁾에 따라 교정공무원 폭행 사건이나 수용자 자살 사건 뿐만 아니라,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겪는 폭언,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위협 등 정신적 문제⁹⁶⁾가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 장은 해당 교정공무원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지원 받도록 하거나, 교정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여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는데, 트라우마극복 프로그램 예산 7억 550만원의 증액 취지에 맞게 긴급

95) 법무부예규 제1330호(시행 2023.11.27.)

96) 김광훈, 박종익, 이수정, 장광호,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4p., 2017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트라우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보장⁹⁷⁾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주기에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⁹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2025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프로그램 사업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있는 바, 2024년의 경우 프로그램을 위탁·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매월 위탁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구조이므로, 2025년도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⁹⁹⁾에 따라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 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97) 법무부가 조사한 개인상담 만족도 결과 종합평균(5점 만점 척도) 4.6점 이상 나타남

98) 김묘연·김형빈,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PTSD)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26권제4호, 2023.2

9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3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사업 의 일반용역비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등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한 것으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 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다) 교정정책연구비 적정성 검토 필요

-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 증가와 경상경비 증가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었는 바, 국가재정 효율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정정책연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그런데, 2025년 세출각목명세서에 편성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명시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고 있음.

〈정책연구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교도소 행정지원	정책연구비(260-02) 1.교정정책 연구용역	300,000,000원=	300,000

* 자료: 법무부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⁰⁰⁾에 따르면, 정책연구비는 행정 및 제도개선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무부의 다른 실·국 사업 중 정책연구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사업의 정책연구는 ‘법률시장 효율성 제고 및 법조 공익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을, ②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사업의 정책연구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등 법률지원 관련 연구용역’, ‘법률시장 및 서비스 개방대비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연구용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명시하여 과제별로 정책연구비를 각각 산출하고 있음.

〈타 실국의 정책연구비 편성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 근거		
	정책연구과제명	산출내역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법률시장 효율성 제고 및 법조 공익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2건*10,000,000원=	20,000
	2.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1건*20,000,000원=	20,000

100)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8

통일대비법률 통합실질화	1.북한 및 남북법령 연구개발비	22,000,000원*3개소위 *1회=	66,000
	2.남북법률통합 연구개발비	26,500,000원*2회=	53,000
	3.통일대비 법무계획 연구개발비	30,000,000원*2회=	60,000
외국인사회 통합지원	1.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351,000,000원=	351,000
	2.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성과분석 및 평가	210,000,000원=	210,000
	3.불법체류외국인 발생의 제도적 원인 및 고용실태 분석을 통한 감축방안 연구	60,000,000원=	60,000
	4.국내 유입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 한 유치지원 기관에 관한 법제 연구	50,000,000원=	50,000
	5.국내 이민 2~3세대 사회통합 정책 방향성 연구	40,000,000원=	40,000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1.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등 법률지원 관련 연구 용역	10,000,000원*1회=	10,000
	2.법률시장 및 서비스 개방대비 국제 경쟁력 강화 관련 연구용역	10,000,000원*1회=	10,000
	3.헤이그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구용역	10,000,000원*1회=	10,000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정책 연구용역과제로 ‘교정기관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과 ‘교정공무원 조직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위 2건의 연구용역에 편성된 3억원은 다른 실·국의 정책연구비와 비교할 때 정책과제의 목적·내용·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⁰¹⁾에 따르면, 용역과제 선정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10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8

시스템」(www.prism.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걸러내도록 하는 취지인 바, 2025년 추진 예정인 ‘교정공무원 조직진단’이라는 연구용역과제는 지난 2019년의 「교정기관 인력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¹⁰²⁾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바, 기존 연구용역 내용과 유사중복되지 않았는지, 몇 년만에 새로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법무부로 하여금 정책연구 용역과제의 목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단가를 산출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예산안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02)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과제명: 교정기관 인력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비공개)
- ☐ 수행기관 및 수행연구원: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 ☐ 계약방식 및 계약금액: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9,400만원
- ☐ 연구기간: 2019. 4. 4~2020. 3.31
- ☐ 연구 주요내용
 1. 교정기관의 인력운영 적정성 검토 및 분석- 교정기관 규모(교도소/구치소), 규모(수용정원), 경비처우등급에 따른 인력운영 현황 조사·분석
 2. 국내외 유사조직 직원 정원 산정모델 비교·분석- 경찰, 소방 등 국내 유사조직 인력산정 방식 및 관련법령 조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 교정조직 인력운영 기준안 조사·분석
 3. 교정조직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법무부 기능분류표, 법무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정기능 및 조직의재설계안 제시
 4. 교정시설의 운영에 소요된 업무시간을 바탕으로, 기관기능, 수용규모, 경비처우등급 등 공통변수와 인력보충계수(SRF)를 적용하여 현행 교정기관의 적정인력과 신설기관의 인력산출모델 개발
 5. 실무자의 업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산출모델 프로그램화

(2)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1531-302)은 전국 교정기관의 노후시설·장비 유지보수,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수용거실 출입문 자동화 등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52억 3,800만원(15.1%) 감소한 855억 9,600만원임.

〈2025년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94,303	100,834	85,596	△15,238	△15.1

- 동 사업은 1)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정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각종 시설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교정기관 재난·안전 관련 시설 유지관리”, 2) 교정시설의 주요 기반시설 및 노후 수용동 등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3) 의료·취사 장비 예산을 지원하는 “수용처우 장비”, 4) 행정사무용 및 난방장비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사무 장비”, 5) 마약반입 차단 등 침단장비 도입 예산을 지원하는 “보안장비 현대화”, 6) 호송차량 교체예산을 지원하는 “노후 호송차량 교체”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음.

〈2025년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00,834	85,596	△15,238	△15.1
· 교정기관 재난·안전 관련 시설 유지관리	12,487	14,338	1,851	14.8
·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64,089	45,730	△18,359	△28.6
· 수용처우 장비	5,988	5,988	—	—
· 행정사무 장비	9,349	9,433	84	0.9
· 보안장비 현대화	4,921	6,107	1,186	24.1
· 노후 호송차량 교체	4,000	4,000	—	—

* 자료: 법무부

(나) 경북북부 교도소 진입교량 보수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 및 정밀안전진단 횟수 축소 필요

-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주요 기반시설 및 노후 수용동 등의 개보수를 위해 45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경북북부 교도소¹⁰³⁾ 진입교량인 광덕교¹⁰⁴⁾의 보수·보강을 위해 22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103)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루어져 있음

104) 경북북부 교도소에 진입가능한 유일한 교량임

〈광덕교 보수·보강 공사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공사비	800m ² ×2.5백만원	2,013
설계비	2,013백만원×4.72%	95
감리비	2,013백만원×1.36%	27
시설부대비	2,013백만원×0.36%	7
정밀안전진단비	86백만원×2회(착공 전후 각 1회)	172
합계		2,314

* 자료: 법무부

○ 청송지역 교정시설 진입 교량인 광덕교 보수공사는 2023년 하반기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당 교량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D등급을 통보¹⁰⁵⁾받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¹⁰⁶⁾에 따라 해당 교량의 보수·보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광덕교 보수공사의 건설비 산출 근거와 관련하여 공사비 단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해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광덕교 보수공사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에 근거하여 단위공사비를 m²당 2,516,000원으로 추정하여 공사비를 20억

	시설물 명	관리주체	관리부서	소유자	시설물 종류	안전등급
105)	광덕교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법무부	국유재산	도로교량	D등급

1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후보지 선정, 개발계획(안)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검토 시 필요한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을 위하여 기 발주한 사업지구 및 최근의 설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¹⁰⁷⁾이므로 이 추정자료만으로 광덕교 보수공사 공사비 단가로 활용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사비 산출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자료 중 「2022 도로업무편람」상 교량(고속국도 4차로기준)형식 별 평균단가가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상 공사비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교량 공사 단가별 비교 및 교차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교량은 보수·보강 공사임에도 일부 산출자료는 신설 공사의 비용에 준하여 산출한 부분이 있는 바, 이를 면밀하게 구분하여 단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7)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하고, 기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기타시설공사 단위공사비, 조사설계비, 조성예비비등을 명시하고 있음

〈「2022 도로업무편람」상 교량 평균단가〉

(단위: 백만원)

○ 고속국도 건설(구조물별)							
(단위: 천원, 제잡비 포함)							
구 분		평 균 단 가					
교량 (고속국도 4차로 기준)	교량 형식	Rahmen 계열	PSC거더 계열			Preflex 계열	강합성 계열
			일반형 (s≤35m)	개량·보강형 (35m<s≤50m)	분절형 (s>50m)		
	m ² 당	3,471	2,259	2,221	2,326	2,557	3,238
터널 (NATM 공법)	구분	2차로			3차로		
	m당	15,560			20,218		

〈 비 고 〉

- 본 자료는 '최근 설계준공된 고속도로 설계단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표준공사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text{교량 평균공사비} = \sum_{i=1}^n C_i L_i \quad (C: \text{구조물별 평균단가}, L: \text{해당공종의 면적})$$

$$\text{터널 평균공사비} = \sum_{i=1}^n C_i L_i \quad (C: \text{구조물별 표준단가}, L: \text{터널의 설계연장})$$

- 2013년부터 교량계열별로 재분류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특정교량형식 공사비 산출시 별도 검토 필요
- 교량 평균단가는 전체공사비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상부슬래브 공사비 산출시 별도 검토 필요

* 자료: 국토교통부 「2022 도로업무편람」 p170.

- 둘째, 법무부는 광덕교 보수공사 착공 전후 각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1억 7,200만원(8,600만원×2회)을 편성하였음.
-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¹⁰⁸⁾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이후 관리주체인 교정기관에서

¹⁰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 정밀안전진단¹⁰⁹⁾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보수·보강공사 착수 전 결함 원인 등을 조사하는 절차라 할 수 있음.

- 광덕교 보수·보강공사 착공 전후 각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2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착공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1회 분 경비 8,6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다) 영상감시장비(CCTV) 교체 대상의 종류별 구분 편성 필요

-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영상감시장비(CCTV) 교체시 보안 성능인증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2024년 대비 7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10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5년 영상감시장비(CCTV) 교체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노후 영상감시장비 교체	1,530	2,250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보안용 CCTV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 총 19,274대이고, 그 중 2025년 교체 예정인 CCTV는 2007년 구축 후 16년이 경과된 거실용 390대, 구내용 1,021대, 실외용 137대로 총 1,548대가 교체대상이라고 밝힘.

〈2025년 영상감시장비(CCTV) 교체 대상 현황〉

(단위: 대)

대상기관 (2007년 구축)	거실용		구내용		실외용		CCTV 보유량 (A+B+C)	25년 교체 수량 (가+나+다)
	전체수량 (A)	교체대상 (가)	전체수량 (B)	교체대상 (나)	전체수량 (C)	교체대상 (다)		
천안교도소	104	102	294	288	41	37	439	427
진주교도소	92	88	210	200	35	29	337	317
대구구치소	75	64	140	135	22	18	237	217
충주구치소	78	77	155	154	29	27	262	258
통영구치소	50	49	138	133	16	15	204	197
평택지소	23	10	115	111	11	11	149	132
합계	349	331	799	777	127	111	1,275	1,244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를 보면, ‘보안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중 노후영상감시장비(CCTV) 교체 예산은 종류별 CCTV 단가가 상이함에도 종류별 단가와 대수를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고 CCTV 1000대를 종류별 단가 합계의 평균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산출하였음.

<2025년 영상감지장비(CCTV) 종류별 당초 교체 계획에 따른 예산 소요액>
(단위:천원, 대)

교체대상	교체 물량	단가	소요예산
거실용 CCTV	390대	1,450	565,500
구내용 CCTV	1,021대	1,950	1,990,950
실외용 CCTV	137대	3,350	458,950
합계	1,548대		3,015,400

* 자료: 법무부

[2025년 노후영상감지장비(CCTV) 교체 예산안 산출 근거]

$$1,000대 \times \{ (1,450\text{천원(거실용 CCTV)} + 1,950\text{천원(구내용 CCTV)} + 3,350\text{천원(실외용 CCTV)}) \div 3 \}$$

$$= 2,250,000\text{천원}$$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CCTV 교체 등 보안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평균 교체 수량 및 단가를 적용하였고, 2025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예산 30억 1,500만원보다 낮은 예산이 편성·반영되었는 바, 향후 집행시 교체 수량을 확정된 예산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CCTV 교체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은 평균 교체 수량 및 단가를 적용하여 확정하였으나, 집행규모는 상시적으로 이를 초과하고 있음. 이와 같이 매년 책정된

CCTV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써, 동 사업 내 다른 ‘수용처우 장비’나 ‘행정사무 장비’ 등의 유형자산(자산취득비) 취득은 거의 불가능한 바, 반복하여 당초 확정된 CCTV 교체에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의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CCTV 구입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예산	교체 대상	물량	단가	집행액	
2022	1,530백만원 (1,000대 × 1,530천원)	거실용 CCTV	427대	987,037원	421	1,588
		구내용 CCTV	640대	1,452,113원	929	
		실외용 CCTV	90대	2,639,156원	238	
2023	1,530백만원 (1,000대 × 1,530천원)	거실용 CCTV	392대	1,463,171원	574	1,944
		구내용 CCTV	605대	1,969,893원	1,192	
		실외용 CCTV	52대	3,431,769원	178	
2024.8	1,530백만원 (1,000대 × 1,530천원)	거실용 CCTV	292대	1,482,019원	433	2,089
		구내용 CCTV	694대	1,956,509원	1,358	
		실외용 CCTV	87대	3,422,058원	298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내역사업 별 유형자산(자산취득비) 등 편성시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편성 내역과 집행액간 오차를 줄이고, ‘수용처우 장비’ · ‘행정사무 장비’ 등 유형자산 취득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3)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가) 예산안 개요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1531-304)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의 대체복무역을 위한 합숙 복무시설을 개보수하고,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 공공요금, 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7억 8,200만원(4.8%) 증가한 172억 4,100만원임.

〈2025년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3,287	16,459	17,241	782	4.8

- 동 사업은 1)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대체복무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운영경비”, 2) 대체복무 예비군 소집에 따른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예비군”, 3)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합숙시설 및 업무지 등 개보수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시설개선”, 4) 대체복무 요원 및 운영기관의 물품구입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물품구입” 등 4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6,459	17,241	782	4.8
· 대체복무 운영경비	13,170	14,659	1489	11.3
· 대체복무 예비군	25	113	88	352
· 대체복무 시설개선	2,948	2,438	△510	△17.3
· 대체복무 물품구입	316	31	△285	△90.2

* 자료: 법무부

(나) 신규 대체복무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적정성 검토 필요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은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제1항110)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 하도록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복무법”)을 2019년 12월 31일

110)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현역을 마친 사람
 -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 1) ~ 10) (생략)
 -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제정하여 2020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고, 동 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 사업이 편성되었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요지〉¹¹¹⁾

구분	주요내용
위헌여부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남.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막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하는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병역종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개선시한	○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 종류와 각 병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일체의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 ○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병역법 제5조제1항은 2020. 1. 1.부터 효력상실

-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대체복무시설은 전국 교정시설 54개 기관(구치소 포함) 중 3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3개 기관에 대체복무시설이 추가 될 예정임.

111)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전원재판부 결정

〈대체복무시설 운영기관 현황(2025년 신규 포함)〉

(단위: 명)

연번	기관	대원 정원	예비군 정원	연번	기관	대원 정원	예비군 정원
1	목포(교)	54명	6명	18	김천소년(교)	40명	
2	대전(교)	96명	8명	19	전주(교)	40명	
3	의정부(교)	42명		20	울산(구)	38명	
4	군산(교)	56명	5명	21	영월(교)	48명	6명
5	천안(교)	78명	8명	22	영월교육센터	—	
6	부산(교)	42명	6명	23	청주(교)	51명	
7	대구(구)	42명		24	춘천(교)	48명	
8	포항(교)	50명	6명	25	화성직훈(교)	72명	6명
9	안동(교)	48명		26	여주(교)	78명	6명
10	충주(구)	42명		27	통영(구)	36명	
11	서울(구)	96명		28	인천(구)	66명	6명
12	원주(교)	48명		29	제주(교)	30명	6명
13	진주(교)	48명		30	서울남부(구)	77명	6명
14	순천(교)	66명		31	서울남부(교)	62명	
15	경북2(교)	36명		32	광주(교)	43명	6명
16	경북1(교)	36명		33	서울동부(구)	44명	6명
17	공주(교)	46명		34	수원(구)	44명	6명
○ 대체복무 운영기관 : (2024) 31개 기관 → (2025) 34개 기관(+3개 기관) ○ 대체복무 인원 : (2024) 1,612명 → (2025) 1,743명(+131명) ○ 대체복무 예비군 소집예정인원 : (2024) 160명 → (2025) 700명(+540명)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2025년에 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3개 기관에 총 131명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에도, 대체복무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2024년도 대비 90%이상 감액¹¹²⁾되어 대체복무시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112) 법무부는 예산 편성 시 2020년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반 여건이 안정화되고 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설명함.

〈2025년도 대체복무시설 자산취득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체복무시설 자산취득비	316	30	△286	△90.5

* 자료: 법무부

- 대체복무시설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동생활하는 생활관으로 보통 6~8인이 1실을 사용하고, 생활관 1실 기준으로 TV·냉장고·에어컨 등 전자제품과 공용세탁실에 세탁기 등을 비치하고, 복지시설로 체력단련실, 교육/회의실, 휴게실 등을 구성하고 있음.

법무부는 대체복무시설 1기관 당 기본시설과 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 소요예산을 약 1억원 이상으로 추산하였는 바, 대체복무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체복무시설 1기관 당 운영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물량	단가	금액	단가 산출 근거
기본 시설	침대(1인용)	1기관 × 50개	340	17,000	나라장터 쇼핑몰(우드메탈)
	매트리스(1인용)	1기관 × 50개	352	17,600	" (비엠비)
	(군용)사물함	1기관 × 50개	480	24,000	" (우드그린)
	텔레비전(107cm)	1기관 × 8대	562	4,496	" (대우써머즈)
	냉장고(289L)	1기관 × 8개	499	3,992	" (삼성전자)
	세탁기	1기관 × 6개	1,300	7,800	" (LG전자)
	건조기	1기관 × 6개	1,150	6,900	" (LG전자)
	냉방기(에어컨)	1기관 × 8개	764	6,112	" (삼성전자)
	합계		(A)	74,888	
복지	공용 PC	1기관 × 10개	570	5,700	" (서버엔컴퓨터)
	PC용 모니터	1기관 × 10개	240	2,400	" (한성컴퓨터)

시 설	프린터	1기관 × 4개	245	980	" (삼성전자)
	PC용 책상	1기관 × 10개	108	1,080	" (크로바가구)
	사무용 의자	1기관 × 10개	176	1,760	" (탐체어)
	회의용 탁자	1기관 × 6개	343	2,058	" (인퍼스)
	책장(6단)	1기관 × 3개	820	2,460	" (다나, 3열 6단)
	물품보관용 캐비닛	1기관 × 20개	155	3,100	" (평화사무용가구)
	소파	1기관 × 4개	1,580	6,320	" (코알타소파, 4인용)
	운동기구	1기관 × 1식	11,504	11,504	2023년 공주교도소 견적가 적용
	합계		(B)	100,538	
합계(A+B)				125,262	통상 1개 기관당 소요예산

* 자료: 법무부

(4) 교정교화

(가) 예산안 개요

- 교정교화 사업(1532-301)은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운영비·구호 및 교정비·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 교화 시설과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6,300만원(3.9%) 감액한 114억 5,700만원임.

〈2025년도 교정교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B-A)	(B-A)/A
교정교화	9,638	11,920	11,457	△463	△3.9

- 동 사업은 1)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운영비와 구호 및 교정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2) 노후 교화시설과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개선”, 3) 수용자 각종 정보 수집 및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보보안활동¹¹³⁾을 지원하는 “교정 정보보안활동”, 4) 무위탁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무위탁 출소자 지원”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113) 기존 특수활동비를 정보보안활동비로 전환

〈2025년도 교정교화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교화	11,920	11,457	△463	△3.9
·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019	9,036	20	0.2
·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개선	1,824	1,239	△585	△32.0
· 교정 정보보안활동	571	676	105	18.4
· 무의탁 출소자 지원	506	506	—	—

* 자료: 법무부

(나)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가진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 법무부는 마약류·스토킹 범죄 등 이수명령 대상 범죄가 추가 신설되고, 심리치료 대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정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¹¹⁴⁾할 계획임. 이에 따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수행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재범 경험’, ‘피해자 공감’, ‘협오 자극’ 등 심리치료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비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1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행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25년 예산안
VR 개발(연구용역)	63백 ¹⁾ ×10개 프로그램 ²⁾	630
VR 장비 도입	6백 ¹⁾ ×2대 ³⁾ ×10개 기관 ⁴⁾	120
계		750

* 자료: 법무부

1) 프로그램 개발 건적 단가 적용

2) 디지털 성폭력, 소년 성폭력, 아동학대, 중독, 가정폭력, 스토킹, 이상동기범죄, 정신질환, 우울특화, 자기통제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10종

3)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2명씩 활용(통상 수용자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4) 심리치료센터(남부·포항·밀양·청주·정읍) 5개 기관, 심리치료과(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 5개 기관

- 법무부는 기존의 집합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인원이 많아질수록 공간과 인력 등의 제약이 많아 심층교육이 곤란¹¹⁵⁾해지고, 형 집행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사례가 발생하며, 수형자 개인의 범죄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어렵고, 교육진행자의 설명에 의존하여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설계 방식임. 반면,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개별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치료가 가능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할 경우 범죄유발상황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대처하는 훈련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설명함.¹¹⁶⁾

115) 기관별 심리치료 시행기관이 달라 수형자 이송을 수반하고 교육 대상자의 개별 형기 차이에 따른 교육 계획 수립의 어려움과 대규모 교육장의 필요, 모든 교육대상자에 대한 1:1 상담 진행으로 직원의 소진이 야기되고 있음.

116)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가상현실 프로그램 관련 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0),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서 치료집단의 재범률(26.8%)이 비치료집단 재범률(30.2%)보다 3.4% 낮음
- 동국대학교(2022),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에서 성폭력 심리치료 참여자의 재범가능성이 60%이상 감소

-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년 현재 심리치료 대상 수형자의 일반(공통)적 특성인 폭력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범죄 유형별 고유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임.
- 현재 마약류·스토킹·가정폭력 등 이수명령 부과 대상 범죄가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이수명령 대상인원이 52% 증가하고, 주요 심리치료 대상 수형자도 18% 이상 증가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빈발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는 심리치료 수요와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심리치료의 다양화·전문화·고도화는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요 심리치료 대상인원*		20,364	21,343	22,401	23,631	24,124
이수명령 대상인원	성폭력	5,324	5,417	5,643	5,934	6,315
	아동학대	113	120	193	279	284
	마약류	—	—	73	848	1,351
	가정폭력	—	—	5	40	63
	스토킹	—	—	11	95	299
	계	5,437	5,537	5,925	7,196	8,312

* 성폭력, 아동학대, 중독(마약류·알코올), 정신질환, 가정폭력, 스토킹, 이상동기범죄, 우울증 등
자료: 법무부

- 류창현, 연성진(2016), 「충동조절장애의 환자들에 대한 뇌파(EEG) 맵핑(mapping) 분석을 통한 분노조절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서 매회 1시간 30분씩, 총 6회 분노조절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를 진행. 4개 척도도구 및 뇌파(EEG) 등을 사용하여 사전사후로 평가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됨

-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7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개발한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2018년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 약 5,000명에게 가상현실(VR)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¹¹⁷⁾하였음.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사업]

□ 개요

- (추진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 17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VR HMD) 개발” 공모·선정 (' 17. 2.)
- (사업기간) ' 17. 4. ~ 11.
- (사업금액) 10억원(계약금액 964,701,400원)
- (사업자) (주)메딕션 컨소시엄

□ 사업 내용

- 가상현실(VR HMD) 기반의 알코올 중독사범 케어 콘텐츠 개발
 - 환경별, 상황별, 조건별 알코올 문제인식 및 대처능력 등 다양한 유형을 3차원 컴퓨터그래픽(3D CG)·애니메이션(3D Motion and Animation)으로 제작하여 현실감, 생동감, 흥미감 유발 콘텐츠 개발
- 알코올 중독사범 치료를 위한 사용자 및 운영자 소프트웨어개발
 - 사용자·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
 - 사용자 이력정보, 체험정보, 결과정보 등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 보호관찰소에 가상현실(VR HMD) 기반의 치료실 내 시스템 설치
 -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수강집행센터) 내 시스템 설치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가상현실 치료 실시로 인한 심리치료 및 재범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정성적 효과
 - 피치료자 중심의 프로그램 전환, 1인 집행 가능,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로 국민안전 확보 등

자료:법무부 보도자료(2017.12.18)

117) 법무부 보도자료(2017.12.18),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 본격 시행..재범률 낮춘다’

- 그러나, 위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사업’에 따른 가상현실(VR) 치료 프로그램 사업은 이용자들의 음주에 대한 변화 의지나 서비스 활용도가 상승하였다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VR기기 설치 후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짧은 점, 1회성 이용자가 다수인 점, VR기기 이용자가 음주운전 체험 시 비음주 상태 설정에서도 운전대가 민감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VR게임 경험자의 본 프로그램에 대해 현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한 점 등에서 한계가 나타남.¹¹⁸⁾
- 이와 함께,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장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집중력 분산,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극들의 제한성, 가상현실경험에 의한 부작용(사이버멀미, 지각운동장애, 낮은 각성상태, 편두통 등) 발생, 고정된 가상현실 프로그램 세트 구성은 다양한 상황에 요구되는 유연한 통제력 제한 등의 단점¹¹⁹⁾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사업’의 성과와 한계,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연구 등에서 나타난 단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수형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처우와 더불어 재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118) 「2018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성과보고서(총괄)」

- 동 사업은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상의 이유로 2020년까지 수행되고 현재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119) 연성진·류창현, 「분노형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의 가상현실치료(VRT)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12

사. 범죄 예방 활동

(1) 소년원생 수용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소년원생수용 사업(1632-300)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제공하여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400만원(0.3%) 증액 편성된 269억 7,100만원임.

<2025년도 소년원생수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소년원생수용	24,565	26,887	26,971	84	0.3

(나) 출원생 외래진료비 지원 활성화 필요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 제5조제1항¹²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

1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고, 동조 제2항¹²¹⁾은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¹²²⁾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하며,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전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¹²³⁾

한편, 2020. 10. 20. 개정된 개정 보호소년법 제20조의3¹²⁴⁾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지정법무병원¹²⁵⁾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12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122)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2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

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1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25) 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춘천·나주·부곡병원 등 5개 기관

있도록 하였음. 이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출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최대한 원만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에 따라 법무부는 동 사업의 구호및교정비(320-06)로 출원생 외래진료비 예산을 매년 편성·집행하였음. 다만, 2022년 및 2023년은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각각 47만원 및 427만원이 집행되어 실효집행률은 0.4% 및 3.7%로 나타났고, 2024년 예산은 그간의 집행부진을 고려하여 1억원 감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9월 기준 216만원이 집행되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최근 3년간 출원생 외래진료비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구호및교정비 (320-06)	편성액	—	115,000	115,000	15,000
	집행액	—	473	4,266	2,155
	집행률(%)	—	0.4	3.7	14.4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출원생 외래진료는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소년원 출원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무상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5개의 지정법무병원에 한정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부모 등 보호자의 관리가 미흡한 점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은 정신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위탁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시간상 제약¹²⁶⁾이 있어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원 이후의 사후관리가 중요함. 이를 고려하여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제1항¹²⁷⁾은 지원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의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로 길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출원생 외래진료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탁소년의 출원 시에 보호자교육을 통해 동 제도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이에서 나아가 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출원생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봄.

- 2025년도 출원생 외래진료비는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법무부는 출원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6)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12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방법)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로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다) 임상연구비 등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 법무부는 2025년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급식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매년 1,320만원을,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명목으로 5,8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2025년도 소년원생수용 사업 중 일반수용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편성액
[210-01]일반수용비		
15. 급식관리위원회 참가비	11기관*1명*100,000원*12회=	13,200
18.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58,103,000원=	58,103

*자료 :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법무부는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에 의사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의사 임상연구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편성액
[260-01]일반연구비		
1. 의사 임상연구비		118,560
가. 탁월	2과제*10,032,000원=	20,064
나. 우수	9과제*9,120,000원=	82,080
다. 보통	2과제*8,208,000원=	16,416

*자료 :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상의 사업은 다음의 측면에서 예산 조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급식관리위원회 수당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은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예규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서 급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¹²⁸⁾ 동 예규는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 직위자 또는 영양·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¹²⁹⁾ 이에 따라 각 소년원에 설치된 급식관리위원회는 1~2명의 외부위원을 두고 있으며, 당해 사업에 급식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음.

128)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2조(기능)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식의 품종선택과 그 수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선택된 품종과 수량에 대한 함유 영양량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29)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3조(구성) ①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 "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국 소년원의 급식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급식관리위원회 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서울소년원	7	5	2
부산소년원	9	7	2
대구소년원	7	6	1
광주소녀원	10	8	2
전주소녀원	7	5	2
대전소년원	7	5	2
청주소녀원	7	6	1
안양소년원	6	5	1
춘천소년원	6	4	2
제주소녀원	7	5	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8	6	2
총계	81	62	19

*자료 : 법무부

그런데 최근 3년간 급식관리위원회 개최횟수 및 수당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1,320만원의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2년에 130만원, 2023년에 225만원 등으로 실효집행률은 매년 20%도 미치지 못하였음.

〈급식관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및 수당 집행 내역〉

(단위 : 회,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회의 개최횟수	103	106	99
수당편성액	13,200	13,200	13,200
수당집행액	1,300	2,250	1,900

*자료 : 법무부

이는 외부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2023년의 경우 106회를 개최하였으나 외부위원 수당 집행건수는 19건으로 외부위원 참석률이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위원 참석이 저조해졌고, 그 종료 후에도 낮은 참석률이 유지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2022. 4. 18.)된지 2년 이상이 흘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 예산도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바, 법무부는 외부위원의 회의참석률 저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집행을 개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무부는 2025년 예산안에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명목으로 2024년 예산과 동일 규모인 5,81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소년원생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마스크·진단키트 등의 구입 예산으로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편성·집행된 것임.

그런데 2022. 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4급까지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¹³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의 편성·집행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 관리	편성액	—	—	69,542	58,630	58,103
	집행액	—	—	106,850	51,441	23,018
	집행률(%)	—	—	153.6	87.7	39.6

*자료 : 법무부

9월까지의 집행을 기준으로 2024년도 집행액을 추산하면 약 3,070만원(집행률 52.8%)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5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집행추이일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원생의 의료비 예산은 동 사업의 구호및교정비(320-06)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해당 예산 또한 2023년 이후 집행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

1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소년원생 비급여 의료비¹³¹⁾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구호및 교정비 (320-06)	편성액	260,066	260,066	260,066	260,066	426,660
	집행액	419,738	588,099	820,682	224,136	312,726
	집행률(%)	161.4	226.1	315.6	86.2	73.3

*자료 : 법무부

따라서,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은 2025년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의사 임상연구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되, 의사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훈령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르면, 임상연구비는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의무직 공무원의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있음.¹³²⁾

131) 소년원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부분

132)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2조(연구비 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을 위하여 매년 1억 1,856만 원을 편성었는데, 2022년 집행액은 5,472만원, 2023년 집행액은 6,566만원으로 집행률이 각각 46.1% 및 55.3%에 그치는 등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최근 5년간 의사 임상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일반 연구비 (260-01)	탁월	과제수	2	1	1	2	평가등급 12월 결정
		집행액	21,888	10,944	10,944	21,888	
		비율(%)	18.3	12.5	20.0	31.4	
	우수	과제수	8	6	4	4	
		집행액	72,960	54,720	36,480	36,480	
		비율(%)	66.7	62.5	66.7	57.1	
	보통	과제수	2	3	1	1	
		집행액	14,592	21,888	7,296	7,296	
		비율(%)	15.0	25.0	13.3	11.5	
	총계	과제수	12	10	6	7	6
		집행액	109,440	87,552	54,720	65,664	27,360**
		편성액	118,560	118,560	118,560	118,560	118,560
		집행률(%)	92.3	73.8	46.2	55.4	23.1

*자료 : 법무부

** (2024년 9월) 현재 임상연구 계획이 승인, 중간평가 완료 연구과제(6개)에 대해 평가등급 우수에 해당하는 연구비의 50%(4,560천원)를 각 의무관에게 지급

이는 소년원 의무관의 정원 대비 현원이 56.5%로 결원율이 높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사료됨.

〈각 소년원의 의사(의무관)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	서울심
정원 (23)	2	2	2	2	2	3	2	2	2	2	2
현원 (13)	1	1.5	0.5	1	1	2.5	1	2	0.5	0.5	1.5

*자료: 법무부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당 0.5명으로 표기

따라서, 법무부는 소년원 내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관
충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임상연구비는 2025년도 집
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사업(7002-106)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피치료감호자를 수용관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900만원(1.6%) 증액 편성된 330억 360만원임.

<2025년도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29,710	32,507	33,036	529	1.6

(나) 유희병동 운영 재개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

-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¹³³⁾에 따른 치료감호 시설로서,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운영되고 있음.

1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국립법무병원 개요

1. 설립근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 설립일 : 1987. 11. 3.
3.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4. 시설 : 총 25개 병동, 건물면적 51,261m²
5. 임무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 법원·검찰·경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

국립법무병원은 총 25개¹³⁴⁾의 병동이 있고, 치료감호 최대 수용정원은 총 1,200명임. 그러나 간호인력 등의 부족으로 10개 병동이 유휴 상태이고, 실제 운영 중인 병동의 정원은 총 846명임.

〈국립법무병원 병실현황 및 수용인원 현황〉

병동명 (총 25병동)	정원(명)	현재원 (총 801명)	병동면적(m ²)	1인당 수용면적(m ²)**
검사	40	7	216	5.4
11	36	유휴	"	6
12	36	유휴	"	"
13	10	유휴	"	21.6
22	36	유휴	"	"
23	36	유휴	"	"
31	30	유휴	"	7.2
32	30	23	"	7.2
52	85	91	504	5.93
53	85	90	"	"
54	82	88	"	6.15
55	82	90	"	"
56	84	91	"	6
61	38	27	216	5.68

134) 국립법무병원은 본래 17개의 병동을 운영 중이었으나 2023. 11. 신축 병동 준공에 따라 8개의 병동이 추가되었음.

62	38	37	"	"
63	38	유휴	"	"
64	38	유휴	"	"
71	47	47	625	13.3
72	47	47	"	"
73	47	42	"	"
74	47	47	"	"
81	47	27	"	"
82	47	47	"	"
83	47	유휴	"	"
84	47	유휴	"	"

*자료 : 법무부

**정원 기준

- 현재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은 총 801명으로 실제 운영 중인 병동의 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에도 현재 운영 중인 다수의 병실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¹³⁵⁾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1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3]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에 따라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이 입원실의 면적기준을 강화한 것은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의료인 등 종사자의 안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법무병원은 현행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현행 법령상의 입원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희병동의 운영 재개가 필요한데, 현재 간호인력상으로는 유희병동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일반병동(50명 이하) 기준 1개 병동의 최소 운영 인력은 15명이고, 확장병동(120명 이하)의 최소 운영 인력은 23명임.

<국립법무병원 일반병동 및 확장병동의 최소 운영 인력 수>

(단위 : 명)

구분	일근 (09:00~18: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9:00)	비번	휴무	합계
일반병동	3	3	3	3	3	15
확장병동	3	5	5	5	5	23

*자료 : 법무부

따라서, 국립법무병원의 25개 병동을 모두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의 수는 415명¹³⁶⁾에 달하고, 그 외 5급 이상 중간관리자 간호사 3명과 간호업무 외에 병동업무 지원을 위한 과 서무, 병동 수용 사고 관련 업무, 외부병원 호송 및 입원환자 감호 등에 배치된 17명의 간호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430명 이상의 간호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립법무병원의 간호인력은 정원 323명 대비 현원은 306.5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휴병동 운영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증원이 필요함.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간호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합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충원율
2020	141	124.5	158	155	299	279.5	93.5
2021	141	130.5	158	148.5	299	279	93.3
2022	148	133.5	163	157	311	290.5	87.3
2023	160	145.5	163	158	323	303.5	94.0
2024. 9.	160	147.5	163	159	323	306.5	94.9

자료: 법무부

특히, 간호인력 정원은 2023년 11월 신규병동 준공으로 총 8개의 병동이 증가하였음에도 2022년 대비 12명이 증원되었을 뿐인바, 이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유휴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

136) 각각 23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한 확장병동 5개(병동 52, 병동 53, 병동 54, 병동 55, 병동 56)에 대하여 총 115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각각 1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한 일반병동 20개에 총 300명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도합 41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함.

력 소요 예산의 반영 등 국립법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의사 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동 법률은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한 치료감호시설로 국립법무병원 및 지정법무병원을 규정¹³⁷⁾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무부는 1987년부터 국립법무병원을 개청하여 운영 중인데,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대비 실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는 2024년 9월말 기준 7명이고, 피치료감호자 수용 현원은 801명으로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114명임.

1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치료감호시설로 국립법무병원 및 지정법무병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감호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국립법무병원이 유일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정·현원 및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
정원	15	15	15	15	15
현원	8.5	5.5	8	8.5	7
정신과 의사 총원율	56.7%	36.7%	53.3%	56.7%	46.7%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	1,038	935	825	814	801
정신과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	122	170	103	96	114

*자료 : 법무부

- 「치료감호법」 및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¹³⁸⁾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립법무병원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담당의사로 지정하고, 그 담당의사는 피감호자의 출소 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¹³⁹⁾

138) 법무부훈령 제1487호

13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4조(치료의 기본방향) 피감호자에 대한 치료는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담당의사) ① 소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담당의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의사는 피감호자의 출소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한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⁴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등은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음.¹⁴¹⁾

- 최근 5년 동안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으로 규정한 60명을 매년 초과하였는데, 2024년의 경우에도 114명으로 나타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법무부는 임금인상·처우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청한바 있음.

14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1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국립법무병원의 의료 인력 확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634-300)	제도 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5년동안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는 매년 1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인 60명에 맞지 않는 등 피 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유희병동 및 신설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 추가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충원률은 2022년도의 경우 87.3%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임금인상·처우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공무원 보수지침상의 기준연봉의 250~350%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민간 정신과 의사의 급여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¹⁴²⁾ 국립법무병원이 읍·면지역(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하여 근무여건 및 정주여건이 좋지 못하며, 범죄성향이 있는 범법정신질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이 높다는 입장임.

〈예산 각목명세서상 정신과 의사 평균 기본급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안)
기본급(연봉)	89,803	113,547	166,881	184,548
전년대비 증감률	—	26.4	47.0	10.6

*자료 : 법무부

142) 법무부에 따르면 2024. 9. 기준 국립법무병원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1천만원 수준임.

〈정신건강의학과 근무의사 연평균 임금〉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정신건강의학과	200,507	223,686	235,815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가 열악할 경우 피치료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정수준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국립법무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무경감, 연구·교육기능 강화 등의 처우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전자감독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전자감독 사업(1635-301)은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및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는 장치와 감독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2,000만원(13.6%) 증액 편성된 368억 4,700만원임.

〈2025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전자감독	28,783	32,427	36,847	4,420	13.6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 기준 마련 필요

-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사업은 전자감독(1635-301)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자감독대상자를 24시간 위치추적하기 위한 장치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 시스템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사업은 매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7억 9,982만원 감액된 41억 5,198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자감독장치 구입 예산 세부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편성액
[430-01]자산취득비		
1. 전자감독장치 구입	2,306세트*1,800,510원=	4,151,976

*자료 :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현재 법무부는 발목형 및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¹⁴³⁾을 받은 자에 대해 부착하는 것인바, 해당 장치의 보유수량은 2021년 4,950세트에서 2024년 말 5,947세트로 예상되어 매년 증가추이를 보여왔음.

〈최근 5년간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현황〉

(단위:대)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제작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2021년	4,521	2,229	6,750	1,800	4,950
2022년	4,950	2,300	7,250	1,601	5,649
2023년	5,649	2,150	7,799	1,623	6,176
2024년 (예상)	6,176	2,000	8,176	2,229	5,947
2025년 (예상)	5,947	2,000	7,947	2,300	5,647

*자료: 법무부

14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0년 2월 개정된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¹⁴⁴⁾에 따른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장치¹⁴⁵⁾로, 현재 1,260개를 보유·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현황〉

(단위:대)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제작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2021년	0	1,260	1,260	0	1,260
2022년	1,260	0	1,260	0	1,260
2023년	1,260	0	1,260	0	1,260
2024년 (예상)	1,260	500	1,760	500	1,260
2025년 (예상)	1,260	0	1,260	500	760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각 유형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수 추이를 살펴 보면,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0년 이후 4,000명 내외를 유지 중이고,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200명 내외를 유지 중임.

14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145)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 기존의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였음.

〈최근 5년간 각 유형별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자감독 대상자(계)	4,052	4,316	4,421	4,188	4,270
발목형 전자장치	4,052	4,096	4,205	3,924	4,087
손목형 전자장치	—	220	216	264	183

* 자료: 법무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자 대비 보유수량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145%로 나타났고,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수요대비 보유수량이 과도한 부분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현재 부착대상자에 대한 수량 외에도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가 필요하며, 재처리를 위한 배송, 장치상태점검, 재처리 대기 및 재처리 진행, 정상작동여부 테스트 중인 전자장치 등을 고려하여 예비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최근 5년간 재처리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량**〉

(단위: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발목형	3,389	3,789	4,285	4,000	3,749
손목형	—	—	300	822	586

* 자료: 법무부

**재처리 소요일수는 평균 35일(5주)

-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현재 부착 대상자에 대한 수량 외에도, 신규 소요나 장치 교체 및 재처리 등을 위한 예비수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적정수량 이상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는 제작·관리 비용과 기술노후화에 따른 폐기비용 확대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적정 보유 수량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실제로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최초제작 당시 실제 소요를 과대평가하여 부착대상자 대비 6배의 수량이 제작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였는바, 사업관리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 및 재처리 전자장치의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처리소요기간, 보호관찰기관 간 예비수량의 분배, 비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아. 특별감찰관활동

(1) 예산안 개요

-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¹⁴⁶⁾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특별감찰관 인건비(1802-150), ② 특별감찰관 기본경비(1818-250), ③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를 지원하는 특별감찰활동(1831-300)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특별감찰관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000만원(4.4%) 감액된 8억 7,400만원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특별감찰관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000만원(14.7%) 감액된 2억 3,200만원, 특별감찰관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800만원, 특별감찰관활동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4억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5년도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특별감찰관 인건비	—	272	232	△40	△14.7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98	238	238	—	—
특별감찰관활동	530	404	404	—	—
합 계	628	914	874	△40	△4.4

146)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도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무실 이전 적극 추진 필요

-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전원¹⁴⁷⁾이 결원인 상태이며, 파견공무원 2명¹⁴⁸⁾과 공무원직(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실제 특별감찰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사무실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2023년도 “특별감찰활동” 사업에서는 3인이 근무하는 264평의 사무실¹⁴⁹⁾ 임차를 위해 연간 5억 2,900만원, 월평균 4,400만원의 임차료·관리비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유사한 수준의 임차료·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음.
- 이러한 예산낭비는 특별감찰관실의 전원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2018년도 이후부터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 임차료·관리비의 실집행 소요가 당초 임차료·관리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자, 연례적으로 특별감찰관실 결원 시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 사업의 인건비 등을 전용하여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집행해 왔음.

147)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 별표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차관급) 1명, 특별감찰관보(고위공무원단) 1명, 감찰담당관 6명(3·4급 상당 1명, 5급 상당 5명)로 구성(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2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음(법 제10조제1항).

148) 행정안전부 1인, 조달청 1인

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임차 관련 비용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합계
2016년	9	321	176	506
2017년	9	330	180	519
2018년	10	427	186	623
2019년	10	526	191	727
2020년	10	542	197	749
2021년	11	558	203	772
2022년	—	349	169	518
2023년	—	356	173	529

* 자료: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관활동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383	—	368	—	751	749	195.5	—	2
2021	364	—	409	—	773	772	212.1	—	1
2022	399	—	127	—	526	519	130.1	—	7
2023	399	—	138	—	537	530	132.9	—	7

- 2025년도 “특별감찰관활동” 사업에 편성된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억 8,800만원, 1억 1,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나, 과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 중인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를 전용하여 당초 편성된 임차료·관리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예산 낭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2023년-2025년 특별감찰관실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4.7월말)							2025 예산 안
	예산 액	예산 현액	집행 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 산	예산 현액	집행 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예산 현액	집행 액			
공공요금 및 제세	105	173	173	－	0	116	116	104	116	104	－	－	116
임차료	288	357	356	－	1	288	288	204	288	204	－	－	288

- 한편, 특별감찰관실의 사무실 임차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년
도 및 2020년도 결산 과정에서 임차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최근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
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
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도한 사무실 임
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최근 5년간 특별감찰관활동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구 분	시정요구명 (유형)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20 19 결 산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 개선 필요 (제도개선)	○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특 별감찰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매년 편성 된 관련 예산 중 필수 소요경비를 제외한 상당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며, 6~7 억 규모의 사무실 임차관련 예산(임차보 증금·임차료·관리비)이 지출되는 등 예 산 집행상 문제가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감찰관 기능 이 사실상 마비되어 약 26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의 장기간 불용으로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업무범 위를 고려하여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 결하고 <u>관련 예산의 불용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할 것</u>

2020 결산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에 대한 조치 필요 (제도개선)	○ 특별감찰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7억 규모의 사무실 임차관련 예산(임차보증금·임차료·관리비)을 포함하여 매년 8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음	○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임차관련 예산 지출 등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2021년 내로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023 결산	특별감찰관 장기공석으로 인한 과도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 개선 필요 (주의)	○ 특별감찰관은 공석이고, 사무실 유지·관리 인력 3인(과건2인, 공무원1인)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으로 전용하여 연간 5억 2,900만원을 264평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 -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임차 등 준비가 가능하고,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임.	○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 과도한 사무실 임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

* 자료: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 STATS)

-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2023년 국회 결산 심사 이후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와 정부청사 사무실 이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서울 지역에 정부청사 공실이 예상되어 내년도 하반기 입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¹⁵⁰⁾ 다만,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기간¹⁵¹⁾은 2025년 1월 10일에 만료되는데, 특별감찰관실은 사무실의 정부청사 이전 전까지는 현 사무실의 임차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임대인과 연장조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특별감찰관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청사 사무실 이전 협

150) 특별감찰관실은 기존 정부청사 입주기관의 이전일정 지연 가능성, 특별감찰관실 이전을 위한 사무실 최소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사무실 이전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임.

151) '22.01.11.~'25.01.10.

의를 지속하여 내년도 하반기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무실 임차료 과다 등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 법무교육훈련

(1)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5131-301)은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과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800만원(1.7%) 감액한 15억 7,700만원임.

<2025년도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 운영 및 개선	1,642	1,605	1,577	△28	△1.7

(나)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지연 해소방안 및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 법무부는 외국법제에 대해 연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법무·검찰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외국에 파견 중인 법무협력관(검사)등을 통해 한인검사협회(KPA) 소속 한인 법조인을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비상임연구위원의 임금·고용부담금·임차료·항공료 등 총 7,408만원을 편성하였음.

〈비상임연구위원 관련 예산안〉

(단위: 천원)

예산비목	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일용임금	비상임연구위원보수	5,000,000원*6월*2회=	60,000
임차료	비상임연구위원 주거 임차료	2명*3,500,000원=	7,000
국외업무여비	비상임연구위원 항공료 등	7,083,000원=	7,083
	총 계		74,083

자료:법무부

- 비상임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 내에서 근무하면서 법무·검찰 행정 업무 및 법무연수원 교육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자국 형사사법시스템과 비교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하거나 신입검사 교육 등 원내 강의 및 대검찰청 등에 세미나 참석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현황〉

이름	직책	위촉기간	주요 업무
□□ Kim (92.08)	베트남 하노이 인민검찰원 검사	2021. 11. 8. ~ 2022. 2. 7(3월)	베트남 인민검찰청 시스템 및 형사재판 심리
◇◇ Park (85.12)	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검찰청 검사	2022. 8. 8. ~ 2023. 2. 7(6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한 검사의 책임
○○ Choi (91.02)	前호주 NSW주 검찰청 검사 영국 법무부 소송전담 변호사	2023. 4.17. ~ 2023. 7.31(3월)	호주NSW주 검찰의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조△△ (87.06)	前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카운티 검찰청 검사	2023. 8.16. ~ 2024. 2.15(6월)	미국 형사절차에서 Criminal Defendant의 진술과 자백의 합법적인 수집 방법과 증거로서의 사용

자료:법무부

- 그런데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예산은 6개월, 2명으로 편성하였는데, 위촉 실제 현황을 보면 2021년과 2023년의 경우 위촉 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위촉 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8월까지도 비상임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등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용액 발생 등 매년 집행 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비상임연구위원 관련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임금	고용부담금	임차료	항공료
2022년	예산액	60,000	4,560	7,200	7,000
	집행액	26,921	2,224	5,836	3,152
	집행률	44.9	48.8	81.1	45.0
2023년	예산액	60,000	4,560	7,200	7,083
	집행액	45,997	3,825	3,134	5,025
	집행률	76.7	83.9	43.5	70.9
2024년 8월	예산액	60,000	5,000	7,000	7,083
	집행액	7,586	850	—	—
	집행률	12.6	17.0	—*	—**

* 서울고검에서 법무부명의로 매입한 죽전소재 관사를 사용하여 2024년 임차료 집행액 발생하지 않음

** 2023년 입국 시 왕복항공권으로 항공료 집행되어 2024년 항공료 집행액 발생하지 않음

자료: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비상임연구위원 위촉기한 종료 전부터 LA법무협력관을 통해 한인검사협회(KPA)에 모집안내문 등을 배포하였고, 2023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형사법컨퍼런스에서도 법무연수원

의 모집공고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본국에서의 경력단절 우려 및 낮은 보수 지급으로 인해 지원 희망자가 줄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원활한 위촉을 위해 주한일본대사관의 법무협력관에게도 모집공고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선진 유럽 희망자 모집을 위한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힘.

- 법무부는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공백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집홍보 등 위촉활동을 계획하고 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¹⁵²⁾에 따르면, 비상임연구위원은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 뿐만 아니라 교수·부교수·조교수도 위촉대상이 되므로 위촉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한인 법조인 위촉이 어렵다면 국내 법조인 등의 위촉을 검토하거나,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예산의 집행 실적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연구위원) ① 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차.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1)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7032-303) 사업은 법무부 본부 및 각 소속 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및 청년인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1억 1,400만원 (11.7%) 증액된 20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10,487	17,993	20,107	2,114	11.7

(나) 청년인턴 사업 개요 및 법무부 청년인턴 운용 현황

- 청년인턴 사업은 국내·외 청년들에게 일 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법무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2023년 2,000명 채용을 시작으로 4년 간('23~'26년) 총 1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채용 규모를 5,000명으로 확대하였음.¹⁵³⁾

153) 2024년 6월말 기준 46개 중앙행정기관에 4,235명의 청년인턴이 활동 중임(일부는 활동 종료). - 국무조

- 법무부는 2023년 4월 각급 소속기관별로 총 2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운영하였고, 2024년에는 운영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하였음.¹⁵⁴⁾ 2023년에는 청년인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¹⁵⁵⁾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전용 및 내역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였고, 2024년에는 인건비(일용임금), 활동지원비(일반수용비), 교통비(국내여비), 4대보험료(고용부담금) 등으로 39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음.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 계획을 보면, 채용 규모는 2024년과 동일한 300명 규모이며, 활동지원비 확대 편성 및 교통비 절감 편성 등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5,700만원 가량 증액된 41억 2,400만원이 편성됨.

〈법무부 청년인턴 2024년 예산 및 2025년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	비목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인건비	일용임금(110-03)	3,338,700	3,396,000	57,300
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210-01)	26,763	194,832	168,069
교통비	국내여비(220-01)	225,820	152,000	△73,820
4대보험료	고용부담금(320-09)	375,899	381,000	5,101
합 계		3,967,182	4,123,832	156,650

* 자료: 법무부

정실 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소식지 발행」, 2024. 7. 26.

154)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임.

155) 범정부 청년인턴 운영계획은 2023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23년 1월에 수립되었음.

(다)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의 효과적 충원·운영을 위한 배정
기준 등 개선 필요

○ 2024년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인 300명의 청년
인턴을 선발하여 법무부 본부 및 지역별 소속기관 등 총 143개 기
관에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인턴 모집
및 채용 현황을 보면, 목표 인원을 원활하게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2023년 및 2024년 청년인턴 채용 실적을 보면,

2023년의 경우 배정인원 200명 중 18%인 36명이 채용 후 근무를
포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약만료까지 근무한 인원은 배정인원 대
비 16명 부족한 184명이었음.

2024년의 경우 배정인원 303명 대비 9월말 기준 총 292명이 채용
되었으나, 이 중 36명이 근무를 포기하였고, 10월 이후 추가 채용
이 없다는 전제하에 최종 근무인원은 배정인원 대비 84.5%인 256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청년인턴 채용 실적〉

(단위: 명)

연도	배정인원	총 채용인원	채용 후 근무포기	계약만료까지 근무인원
2023	200	220	36	184
2024. 9월말	303	292	36	256(예상)

* 자료: 법무부

- 다음으로, 2024년 청년인턴 모집·지원 및 선발 현황을 보면, 첫 채용 절차(1차 공고)에서 목표한 충분한 청년들을 모집·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1차 공고 기준 143개 전체 기관에 걸쳐 307명 모집에 42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1.37대 1로 낮게 나타났고, 그 결과 최종 선발 인원은 155명으로 채용 목표의 절반(50.5%)을 달성하는데 그쳤음.

〈법무부 2024년 청년인턴 모집·지원 및 선발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공고기관 수	모집인원 (a)	지원인원 (b)	경쟁률 (b/a :1)	선발인원 (c)	총원률 (c/a)
1차 공고	143	307	420	1.37:1	155	50.5
2차 공고	73	141	364	2.58:1	104	73.6
3차 공고	17	36	86	2.39:1	18	50.0
4차 공고	4	15	27	1.8:1	13	86.7
5차 공고	1	2	6	3:1	2	100.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 결과, 전체 채용기관의 절반 이상(73개)이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7개 기관은 3차 공고, 4개 기관은 4차 공고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례를 보면, 6명의 청년인턴 배정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5차 공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인턴 선발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고 횟수가 늘어나고 실제 채

용시기가 지연될 경우, 당초 1인당 6개월로 계획한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며,¹⁵⁶⁾ 이 경우 인턴 인건비 및 운영비가 불용될 수 있음.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청년 인턴 1인 당 실제 평균 근무월 수는 4.96개월로 목표 대비 1개월 가량 차이가 났음.

또한 소속기관 별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가 반복됨에 따라 채용 진행 및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일상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음.

- 이처럼 청년인턴 지원 경쟁률이 높지 않고, 다수의 소속기관에서 채용 절차가 반복되는 등 법무부가 청년인턴의 원활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정부 전체 차원의 채용 목표 인원을 먼저 정한 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근무인원·조직규모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탑-다운 방식’의 인턴 배정으로 인한 법무부의 채용 목표와 일선 소속기관의 인턴 채용 수요 간 괴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타 부처들과 비교하였을 때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비선호 현상, 교정시설·보호관찰소 등 일부 법무부 소속기관이 상대적으로 비도심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

156) 매년 4분기 기업 공채 시즌을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중도 퇴직 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지면 중도 근무포기자 비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파이낸셜뉴스, 「“공부만 하다가 월급 받았어요”...세금이라고 막 쓴 ‘정부 청년인턴’」, 2024. 10. 14. 기사 참조

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별 청년인턴 채용 인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였고, 이로 인해 비도심지역 및 기관에 수요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하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지역별로 위치한 소속기관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청년에게도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낮은 지원률, 반복된 채용으로 인한 일선 소속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음.

즉, 지역별 안배에 대한 고려 외에도, 사업 시행 후 2년 간의 채용 실적, 소속기관별 모집·선발 현황, 소속기관의 실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인턴 수요’와 ‘기관별 채용인원’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관별 배정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실제 채용 진행 과정에서 미달된 기관의 배정인원을 지원률이 높은 기관에 재배정하는 등 청년인턴의 신속한 채용 및 탄력적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2024년 집행실적 및 2025년 집행계획을 고려한 청년인턴 운영 예산(활동지원비 및 교통비) 감액 조정 필요

-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 예산의 비목별 내역을 보면, 청년인턴 활동지원비 명목의 일반수용비(210-01)는 1억 9,483만원이 편성되어 2024년 대비 7배 이상 증액(628.0%)되었음. 반면, 교통비 명목의 국내여비(220-01)는 2024년 대비 7,382만원(△32.7%) 감액된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종합하면,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청년인턴 운영 예산은 2024년 2억 5,258만원 대비 9,425만원이 증액(37.3%)된 3억 4,683만원이 편성되었음.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 예산(활동지원비 및 교통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비목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210-01)	26,763	194,832	168,069
교통비	국내여비(220-01)	225,820	152,000	△73,820
합 계		252,583	346,832	94,249

* 자료: 법무부

2025년 청년인턴 운영 예산의 증액 및 구성 변경에 대해 법무부는 2024년 사업 운영과정에서 활동지원비가 크게 부족(인턴 1인당 9만원 수준)하여 인턴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추진이 어려웠던 반면, 인턴 업무 특성상 출장소요가 많지 않아 교통비(국내여비)는 상대적으로 집행 수요가 적었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는 여비를 감액하고 일반수용비를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2025년 대폭 증액 편성된 청년인턴 활동지원비의 상세 내역을 보면, 근무 예상인원 300명을 기준으로 물품구입(인당 10만원), 프로그램 및 교육(인당 34만원) 비용과 함께, ‘채용위원 위촉비’ 명목으로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 활동지원비(일반수용비) 편성 상세 내역〉

(단위: 천원)

세부항목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인턴활동 물품구입비	30,000	300명 × 10만원
인턴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	102,000	300명 × 34만원
채용위원 위촉비	64,350	3명 × 143개기관 × 15만원
단수조정	△1,518	
합 계	194,832	

* 자료: 법무부

그런데, 물품구입 인당 단가 10만원, 프로그램 및 교육 비용 인당 단가 34만원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고, 어떤 종류·유형의 인턴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등,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또한, 채용위원 위촉비(6,435만원)의 경우 법무부 143개 소속기관별로 청년인턴 채용시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¹⁵⁷⁾으로, 실제 청년인턴 활동지원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며, 2024년의 경우 인턴 채용 외부위원 수당은 일반 공무원·공무직 채용과 마찬가지로

157) 서류심사(1명), 면접심사(1명), 채용점검위원회(1명) 등 기관 당 3명의 외부위원 참여를 전제로 함.

* 채용점검위원회 : 채용 절차가 전반적으로 근거 규정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

가지로 각 실국 기본경비에서 충당하고 있음.

- 한편, 2024년 9월말 기준 청년인턴 운영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인건비(일용임금)와 달리 활동지원비(일반수용비)와 교통비(국내여비)는 집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됨. 활동지원비의 경우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교통비의 경우 1.3% 집행에 그치고 있음.

2024년 법무부 청년인턴의 상당수가 3월~5월에 채용되어 근무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이후 운영예산 집행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¹⁵⁸⁾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 예산(활동지원비 및 교통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

항목	비목	2024년 예산	집행액 (2024. 9월말)	집행률
인건비	일용임금(110-03)	3,338,700	2,492,581	74.7
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210-01)	26,763	0	0.0
교통비	국내여비(220-01)	225,820	2,875	1.3

* 자료: 법무부

-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예산 중 활동지원비(일반수용비)는 2024년 대비 7배 가량 증액되었음에도, 단가 산정근거 및 세부 집행 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기본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 채용위원 심사료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인턴 프로그램 및 교육비 일부(50%, 5,100만원)와 채용위원 위촉비

158) 법무부는 활동지원비의 경우, 2024년에는 편성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인턴 프로그램 등 실제 활동에 집행하지 않고 인턴 활동 종료 후 수료행사 등에 집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충분한 활동지원비를 편성하여 적극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6,435만원)는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교통비(국내여비)는 2024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 인턴 활동 종료가 임박한 시점인 9월말 현재까지 1.3% 집행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감액 조정(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편성, 3,900만원 감액)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법무행정정보화(7034-500) 사업은 법무정보시스템, 형사사법시스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교정정보시스템 등 법무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법무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구입·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 6,800만원(6.1%) 증액된 41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행정정보화	40,858	39,117	41,485	2,368	6.1

(나) 신규 도입된 전산장비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 법무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산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를 리스계약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입한 기존 전산장비에 대한 당해 연도 리스료, 2025년 신규 도입하는 전산장비 리스료를 포함하여 53억 8,636만원이 편성되었음.

〈전산장비 도입 리스료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비고
2019년 도입분	592,000	—	2024년 종료
2020년 도입분	1,128,511	577,658	2025년 종료(6개월분만 편성)
2020년 추가도입분	679,067	521,488	2025년 종료(9개월분만 편성)
2021년 도입분	1,140,132	1,160,400	리스료 갱신분 반영
2022년 도입분	1,194,512	1,194,512	
2023년 도입분	<u>1,126,000</u>	<u>567,373</u>	실제 리스료 반영
2024년 도입분	<u>377,322</u>	<u>754,644</u>	2024년에는 6개월분만 편성
2025년 도입분	—	610,281	2025년에는 6개월분만 편성
합 계	6,237,544	5,386,356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전산장비 도입 리스계약을 관행적으로 연말에 체결해왔고, 이에 따라 차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당해연도 신규 리스계약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당초 신규 리스 규모를 11억 2,600만원(1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리스 규모는 5억 6,737만원(1년 기준) 수준에 그쳤음.¹⁵⁹⁾ 그럼에도 2023년 리스 계약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2024년 예산에도 실제 리스 규모가 아닌 11억 2,600만원이 반영된 것임.

이에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전산

159) 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존 리스계약 갱신분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2023년 신규 전산장비 도입 규모가 축소됨.

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기고, 예산안 제출 이후 체결되는 리스계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실제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주의)를 채택한바 있음.¹⁶⁰⁾

-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면, 2024년 신규 도입 장비에 지급한 실제 리스료를 2025년 예산안에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0월 29일 체결된 2024년도 신규 도입 전산장비 리스료는 3억 6,981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3억 7,732만원 대비 75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음. 2024년 예산에는 6개월분만 편성되었고, 2025년부터는 1년치 리스료가 전액 반영되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2024년 도입분 리스료(7억 5,464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용도 추가된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목적 자산취득비의 세부 편성내역 조정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은 보호관찰·치료감호 시설 내 보호소년, 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 접근 기회를 부여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기기를 활용한 정보화교육·전문교

160) 2024년 8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의결

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취업, 진학 등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임. 2025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 3억 3,680만원, 자산취득비 1억 5,965만원 등 총 4억 9,645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비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2025년)
일반수용비 (210-01)	336,800	336,800	• 정보화교육 강사료 244,800 • 자격시험 수수료 55,000 • 정보화교육 소모품 등 6,000 • 정보화교육 교재비 등 15,000 • 푸르미방송 촬영 및 자료관리 소모품 등 16,000
자산취득비 (430-01)	159,651	159,651	• 전산단말기(110만원×100대) 110,594 • 노트북(123만원×4대) 4,947 • 단말인쇄기(67만원×12대) 8,083 • 비디오프로젝터(250만원×2대) 5,027 • 노후 방송장비 등 교체 31,000
합 계	496,451	496,451	

* 자료: 법무부

-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대상인 10개 소년원과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등 12개 기관의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2025년 신규 도입 대상이 되는 내용연수 경과물량은 각각 전산단말기(PC) 46대, 단말인쇄기(프린터) 4대, 프로젝터 9대로, 각 기기별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7,578만원임.
- 따라서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2025년 자산취득비 실소요액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분(3,100만원) 포함 1억 678만원으로,

편성된 1억 5,965만원보다 5,287만원 가량 적음.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대상기관(12개소)이 보유한 전산기기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 분	'18년 이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준 내용연수 경과물량	단가	교체 소요 예산
PC	16	10	20	106	122	53	50	109	46	110만원	50,600
노트북	0	0	0	0	0	0	0	1	0	123만원	-
프린터	3	1	0	3	6	5	2	2	4	67만원	2,680
프로젝터	9	1	1	2	2	0	5	2	9	250만원	22,500
2025년 총 교체 소요 예산											75,780

주) 각 전산장비별 내용연수는 PC(5년), 노트북(6년), 프린터(6년), 스캐너(6년), 프로젝터(8년)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5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SBC (Server-Based Computing) 시스템”¹⁶¹⁾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 구입 후 남은 자산취득비를 SBC 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 집행하겠다고 설명함.

현재 SBC 시스템에 사용되는 윈도우10은 제조사(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기술 지원이 2025년 10월 종료될 예정인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법무부가 제출한 SBC 시스템 업그레이드 견적서 상 소요예산은 6,611만원으로, 전산장비 구입 잔액을 활용할 경우 예산이 부족할

161) 컴퓨팅 자원과 애플리케이션을 중앙 집중화하여 관리하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소년원 내 정보화교육장 PC에서 사용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개별 PC가 아닌 SBC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보안·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접속하든지 일관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우려가 있음(예산 편성액 대비 1,324만원 초과).

〈용도 추가에 따른 2025년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자산취득비 예산 소요 내역〉

(단위: 천원)

2025년 예산안 기준		용도 추가 후 소요 내역	
항목	예산안	항목	소요액
• 전산단말기(110만원× <u>100대</u>)	110,594	• 전산단말기(110만원× <u>46대</u>)	50,600
• 노트북(123만원× <u>4대</u>)	4,947		
• 단말인쇄기(67만원× <u>12대</u>)	8,083	• 단말인쇄기(67만원× <u>4대</u>)	2,680
• 비디오프로젝터(250만원× <u>2대</u>)	5,027	• 비디오프로젝터(250만원× <u>9대</u>)	22,500
• 노후 방송장비 등 교체	31,000	• 노후 방송장비 등 교체	31,000
		• SBC 시스템 win11 업그레이드	<u>66,110</u>
합 계	159,651	합 계	172,89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 따라서 2025년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자산취득비는 추가된 용도를 반영하여 세부 산출내역을 조정해야 하며, SBC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전산장비 구매 수량 및 노후 방송장비 교체 물량 조정 등을 통해 당초 편성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기관운영 기본경비

(가) 예산안 개요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는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 등 법무부 본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 해당하며,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5,400만원(8.8%)이 증액된 4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2,791	4,034	4,388	354	8.8

(나) 연합뉴스 구독료 신규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법무부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스구독서비스 구독을 위해 2025년 2,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연합뉴스 구독료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하여 연합뉴스와 구독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각 기관에 뉴스단말기 및 PC 웹서비스(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 모바일 서비스(연합뉴스 모바일 뉴스리더) ID를 제공해왔으나,

2023년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기능 수행(비인기 언어·국가의 뉴스 번역, 특파원 파견 등¹⁶²⁾)에 대한 국비지원을 제외한 뉴스구독료 지원은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사업(사업코드 1431-300) 예산은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축소·편성되었음.

〈문체부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예산액	32,800	32,800	27,860	5,000	5,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법무부는 뉴스구독서비스에 대한 법무부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모바일서비스(뉴스리더) 구독료로 2,57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정부가 연합뉴스 구독료 지원을 전면 폐지하게 된 배경은 IT·인터넷 기술 및 미디어 산업의 급격한 발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누구나 포털, SNS를 통해 쉽게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도 굳이 연합뉴스 서비스를 통하지 않아도 뉴스 검색 및 언론 모니터링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임.

그럼에도 법무부가 연합뉴스 구독료를 별도로 신규 편성한 것은

162) 일반 언론사에서 제공·파견하지 않는 비인기 언어 및 국가에 대한 해당 언어 뉴스번역 및 특파원 파견 등

정부 차원의 뉴스구독 폐지 방침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인터넷·SNS 발달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뉴스 접근성, 민간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구독서비스¹⁶³⁾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3) 뉴시스(프라임 뉴시스), 뉴스1(뉴스1 커넥트), 뉴스핌(통신 플러스)

2. 교도작업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개요

-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정신 함양 및 기술교육과 습득이라는 교화목적을 달성하고, 자체수요품 충족과 생산제품의 염가 제공을 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교도작업특별회계법」(1961년 제정)에 따라 1962년부터 운용되어 온 것임.¹⁶⁴⁾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교도작업에 의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도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일평균 20,400여명의 수형자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1,23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5,100만원(2.6%) 증액되었는바,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잡수입이 2억 6,900만원(7.2.9%) 감액되었고, 세계잉여금 28억 2,800만원(43.1%)과 예탁이자수입 9,200만원(3.5%)이 증액되었음.

164) 이후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은 「교도작업관용법」과 통합되어 2008. 12. 1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 1. 1. 시행됨.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예산안 (B)	증감 (B-A)	(B-A)/A
계	124,214	120,529	123,680	3,151	2.6
기타경상이전수입	106	103	103	—	—
교도소 수입	67,902	64,343	64,343	—	—
잡수입 등	2,264	369	100	△269	△72.9
전년도 세계잉여금	8,349	6,560	9,388	2,828	43.1
예탁원금 회수	44,000	46,500	47,000	500	1.1
예탁이자 수입	1,593	2,654	2,746	92	3.5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23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5,100만원(2.6%) 증액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도작업사업은 제품생산·판매를 위한 재료비 및 운송비 등 34억 5,400만원(5.9%)이 증액되었고, 시설보완 사업은 작업장 신·증축 공사비 등 건설비 조정으로 5억 7,800만원 (12.9%) 감액되었음.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계	113,046	120,529	123,680	3,151	2.6
교도작업	55,899	58,651	62,105	3,454	5.9
직업훈련	3,920	4,164	4,399	235	5.6
시설보완	5,693	4,475	3,897	△578	△12.9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382	404	444	40	9.9
소속기관기본경비	152	195	208	13	6.6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47,000	52,640	52,627	△13	△0.0

나. 주요 검토사항

◆ 세 출 ◆

(1) 직업훈련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직업훈련 사업(1535-301)은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3,500만원(5.6%) 증가한 43억 9,900만원임.

〈2025년도 직업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직업훈련	3,920	4,164	4,399	235	5.6

(나) 학점은행제 훈련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의종류의 연 관성 및 훈련기관 간의 형평성 유지 필요

- 법무부는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훈련 직종 도입 등 변화를 모색하고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산업기사 이상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였고, 2025년에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임.

〈 학점은행제 소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학위취득 기준 〉

- 전문학사 80학점(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반선택 20학점)
- 학사 140학점(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반선택 50학점)

- 이에 따라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에서 학점은행제 확대 시행을 위한 초빙강사료·교재비 등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학점은행제 직업훈련 강사료 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학점은행제 강사수당	—	227	227	100
학점은행제 교재구입비	—	23	23	100
총 계	—	250	250	100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2023년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화성직업훈련 교도소 등 9개기관, 14개 훈련과정, 59개 강의에 대해 교육기관 평가인정을 획득하였고, 향후 3개 기관, 5개 훈련과정, 13개 강의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확대 추진하여 총 12개 기관, 24개 훈련과정, 336개 강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학점은행제 훈련과정 현황〉

구분	신청기관	훈련과정	강의종류	취득 학점
2024년 시행기관	화성직훈 (교)	용접	용접공학, 용접구조설계	6
		한식조리	컴퓨터개론, 전기공학입문	6
		통신선로	정보통신개론, 전기공학입문	6
		건축	건축구조 I, 건축적산학	6
		자동차정비	자동차새시, 자동차전기전자 I	6
	서울남부 (교)	패션비즈니스	패션디자인론, 패션머천다이징, 패션제품생산관리	9
	원주(교)	건축일반시공	건축CAD I	3
	대구(교)	용접	용접공학, 용접구조설계, 전기용접실습 I	9
	전주(교)	건축시공관리	건축법규, 건축시공 I, 건축설계 I, 건축제도 I, 건축제도 II	15
	순천(교)	건축목공	건축계획 I, 건축구조 I, 건축제도 I, 건축제도실습 I	12
		식품조리	디자인론, 식품학, 제과제빵실습 I, 조리이론, 한식조리실습 I	15
소계	6개기관	11개 과정		
2025년 시행예정	포항(교)	용접	용접공학, 특수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실습 I	12
	대전(교)	전산응용 기계설계	CAD실습 I, CNC공작법, 치공구, 기계공작법 I, 기계요소설계 I, 기계요소설계 II, 기계재료, 기계제도 I, 기계제도 II, 기계제도실습, 전산응용설계 I, 전산응용설계 II, 전산응용설계실습 I, 전산응용설계실습 II, 제도기초실습	48
	청주(교)	컴퓨터 응용기계	CAD실습 I, CAM실습 II, CNC공작법, 공작기계기초실습, 기계공작법 I, 기계요소설계 I, 기계재료, 기계제도 I,	24
총계	9개 기관	14개 훈련과정	59개 강의	93

* 자료: 법무부

- 학점은행제 훈련과정 선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¹⁶⁵⁾에 따라 소장이 정하고 있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 중 양성(기능사 자격취득), 향상(산업기사 자격취득), 고급(기사 자격취득) 중에서 향상(산업기사) 이상 직업훈련 과정을 학점은행제 운영과정으로 선정하고, 학점인정 강의 1과목 이상을 우선 수강(1과목당 3학점)하도록 하여 출소 후 학업 연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

〈학점은행제 훈련과정 별 수강생 현황〉

신청기관	훈련과정	수강생 현황	이수기간
화성직훈(교)	용접	30	24. 1월 ~ 25. 12월
	한식조리	4	24. 1월 ~ 25. 12월
	통신선로	10	24. 1월 ~ 25. 12월
	건축	5	24. 1월 ~ 25. 12월
	자동차정비	13	24. 1월 ~ 25. 12월
서울남부(교)	패션비즈니스	14	24. 1월 ~ 25. 12월
원주(교)	건축일반시공	17	24. 1월 ~ 25. 12월
대구(교)	용접	12	24. 1월 ~ 25. 12월
전주(교)	건축시공관리	13	24. 1월 ~ 25. 12월
순천(교)	건축목공	10	24. 1월 ~ 25. 12월
	식품조리	12	24. 1월 ~ 25. 12월

* 자료: 법무부

- 학점은행제 운영에 있어 기관 별 훈련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¹⁶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72호)

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첫째, 훈련과정 중 학점은행제 강의종류 간의 연관성이 부족한 바, 훈련과정에 적합한 강의종류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직업훈련과정 중 “한식조리” 과정에 ‘컴퓨터개론’과 ‘전기공학입문’이라는 학점은행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 훈련과정과 강의종류 간의 연관성이 떨어짐.¹⁶⁶⁾ “한식조리” 훈련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¹⁶⁷⁾ 과정에 따르면, 가정전문학사 중 식품조리전공, 관광전문학사 중 호텔조리전공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바, 식품조리전공이나 호텔조리전공과 연관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훈련자의 학점 취득과 학업 성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둘째, 교도소별 학점운영제 개설 강의 수에 차이가 있는 바, 유사한 학점은행제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자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학점은행제 훈련과정은 현재 운영 중인 직업훈련 과정에 학점인정 과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훈련과정 “용접”의 경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6학점, 대구교도소의 경우 9학점, 포항교도소의 경우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동일한 훈련과정이 기관마다 강의종류와 학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또한, 2025년 시행예정인 대전교도소의 “전산응용기계설계”는 48학점, 청주교도

166) 법무부는 취득 학점 중 교양과목 학점이 있으므로 해당 강의를 교양과목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힘.

167)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소의 “컴퓨터응용기계” 훈련과정의 경우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타 훈련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바, 동일한 훈련과정에서 또는 훈련기관 간 취득학점의 격차는 수용자의 집체훈련시 특정 훈련기관에만 집중 신청하거나 훈련자의 학점 취득 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직업훈련의 학점은행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과 직업훈련내 훈련과정의 강의종류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훈련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개설할 필요가 있고, 직업훈련기관 간 훈련과정 이수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가. 기금 개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은 일반 회계전입금, 변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에 지출되고 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448억 7,700만원으로 2024년도(1,370억 5,400만원)에 비하여 7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음.

수입 항목 중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은 벌금 수납액 8%를 기준으로 88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정부예금회수에 56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나 지출 사업의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별 2025년도 계획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에서 2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29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유자금운용 사업에서 21억 8,800

만원이 증액되었음.

〈수입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액	2025년도 계획안	2024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37,054	144,877	7,823	5.7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17	730	313	75.1
변상금 및 위약금	1,797	1,719	△78	△4.3
기타경상이전수입	2,717	3,164	447	16.5
정부예금회수	46,002	50,502	4,500	9.8
일반회계전입금	86,121	88,762	2,641	3.1

〈지출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액	2025년도 계획안	2024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37,054	144,877	7,823	5.7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7,060	40,005	2,945	7.9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51,546	54,540	2,994	5.8
기금운영비	48	48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500	2,230	△270	△10.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9	15	△34	△69.4
여유자금운용	45,851	48,039	2,188	4.8

나. 주요 검토사항

◆ 수입 ◆

(1) 기타재산이자수입

(가) 계획안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을 세입조치한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3억 1,300만원(75.1%) 증액 편성된 7억 3,000만원임.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기타재산이자수입	1,540	417	417	730	313	75.1

(나) 여유자금 회수 규모를 고려한 세입 증액 편성 필요

- 동 사업은 계획안 산출 시 연례적으로 “최근 3개년 수납액 평균”을 산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경우 2021-2023년도 수납액 평균 수준인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3년 간 예산 편성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등〉

연 도	금 액(원)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4억 1700만원	최근 3년(2019~2021) 수납액 평균(2.49억원) 수준 요구
2024계획(수정)	4억 1700만원	최근 3년(2020~2022) 수납액 평균(2.67억원) 수준 요구
2025계획안	7억 3,000만원	최근 3년(2021~2023) 수납액 평균(7.3억원) 수준 요구

* 자료: 법무부제공 자료 가공

- 그러나,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초과 수납되고 있는데, 2022년도는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31.9%이었고, 2023년도에는 369.3%까지 급증하여 계획액과 수납액 간의 차이가 11억원 이상 발생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7월 말 기준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2.4%, 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는 4억 2,700만원으로 나타남.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A)						
2020년도	426	426	171	152	35.7	88.9	19	—
2021년도	426	426	111	99	23.2	89.2	12	—
2022년도	417	417	558	550	131.9	98.6	8	—
2023년도	417	417	1,570	1,540	369.3	98.1	30	—
2024 년도	7월말 기준	417	926	844	202.4	91.1	82	—
2025년도(안)	730	730	—	—	—	—	—	—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 가공

- 이는 최근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¹⁶⁸⁾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부터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입액 규모가 급증하면서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5년간 수납액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	국고보조금 이자	합계		
	수납액	수납액	계획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2019년도	438	58	426	496	116.4
2020년도	92	60	426	152	35.7
2021년도	52	47	426	99	23.2
2022년도	502	48	417	550	131.9
2023년도	1,399	141	417	1,540	369.3
2024년도 (7월말 기준)	680	164	417	844	202.4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기금의 2025년도 계획안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5억원 증액된 약 505억 2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하고 있는데,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계획안(7억 3,000만원)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바, 기타재산이자 수입의 계획안을 증액편성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68) 법무부는 여유자금 위탁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중 당해연도 회수 여유자금 규모에 비례하는 만큼을 당해연도 평가수익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	—	—	4,800	4,800	—	100.0	—	—
2022	1,916	1,916	1,916	9,900	9,900	516.7	100.0	—	—
2023	14,805	14,805	14,805	31,500	31,500	212.8	100.0	—	—
2024	46,002	46,002	46,002	47,000	47,000	102.2	100.0	—	—
2025(안)	50,502	50,502	—	—	—	—	—	—	—

* 자료: 법무부

- 기준금리가 3.5% 수준이었던 2023년도에는 315억원 규모의 여유자금이 회수되어 13억 9,900만원의 평가수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2025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담 주간운용사의 분석¹⁶⁹⁾을 참고하여 연평균 기준금리가 2.85%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¹⁷⁰⁾ 계획안대로 505억 200만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약 18억 2,600만원¹⁷¹⁾의 평가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해 평가수익금을 포함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2025년도 계획안 7억 3,000만원은 매우 적은 수준임.
- 법무부는 통상적인 편성 근거대로 최근 3년 평균 수납액인 7억

169)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전담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2024년 10월 11일 금리인하(3.5%→3.25%) 이후, 2025년도 2차례 이상 추가 인하로 2025년도 말 기준 금리를 2.5%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음.

170)참고로, 법무부는 2023년도까지 여유자금 전액을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였으나, 여유자금 규모 급증으로 2024년도부터 여유자금 중 28.6%를 기대수익률이 높은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므로, 2023년도와 비교할 때 자산포트폴리오의 변경으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대수익률이 방어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171) 13억 9,900만원*(505억200만원/315억원)*(2.85%/3.5%)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유자금 회수 규모 급증으로 2023년도 결산액 15억 4,000만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여유자금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5억원 증액되어 역대 최대규모인 약 50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계획안에 따른다면 2025년도에도 대규모 여유자금 회수가 이루어져 평가수익금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가 편성한 7억 3,00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평가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금의 경우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계획액과 결산 시 수납액의 구조적인 차이가 반복되는 경우 기금의 거시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 급증한 기금 여유자금 규모와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세입 조치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 규모를 고려하여,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이 포함된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세입 계획액을 최소 2023년도 결산액 수준으로 증액 조정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일반회계전입금

(가) 계획안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91-911)은 벌금 수납액의 8%를 세입조치한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26억 4,100만원(3.1%) 증액 편성된 887억 6,200만원임.

<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일반회계전입금	94,200	86,121	86,121	88,762	2,641	3.1

(나) 법정전입금에 따른 정산절차 이행 및 벌금 예산안과의 연계 편성 필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¹⁷²⁾은 정부로 하여금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

17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20.>

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벌금 수납예상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획액(안)으로 편성해왔으며,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1년도	106,054	$[1,249,575(5\text{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1.032 \times 0.08]$
2022년도	94,200	$[1,177,500(3\text{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0.08]$
2023년도	94,200	$[1,188,900(5\text{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0.99 \times 0.08]$
2024년도	86,121	$[1,076,507\text{백만원}(3\text{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0.08]$
2025년도(계획)	88,762	$[1,109,529\text{백만원}(3\text{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0.08]$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일반회계전입금의 계획액(안)은 실제 법정전입금액과 계획안 간의 차액을 산식에 반영하여 정산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금액만큼의 재원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된 2025회계연도 벌금 및 과료 예산안과 연계되지 못하고 상이한 산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먼저,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편성 시 실제 법정전입된 금액의 정산절차를 반영하지 않아 법령이 기금에 납입하도록 한 금액과 실제 납입된 금액 간의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회계전입금의 계획안 편성 당시 예측한 벌금수납예상액과 연도말 실제 집행된 벌금액 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 세입으로 납입하

기 위해서는 실제 법정 전입금액을 정산하여 일반회계전입금계획액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적임.¹⁷³⁾

- 이에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2011년) 이후 2011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매년 연도말 확정되는 법정전입금액과 당초 편성한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액 간의 차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순차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2013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을 편성할 때 “법정전입금액(전전년도 벌금수납액×법정전입비율×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전전년도 전입금 차액”이라는 산식을 사용하여 전전년도 전입금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도록 편성하였음.

〈2013년도~2018년도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3년도	52,397	[1,261,965백만원(2011년 벌금수납액)×0.05(벌금전입비율)×1.0095(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11,300백만원(2011년 전입금 차액)]
2014년도	53,006	[1,227,714백만원(2012년 벌금수납액)×0.05(벌금전입비율)×0.972(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6,661백만원(2012년 전입금 차액)]
2015년도	86,014	[1,331,409백만원(2013년 벌금수납액)×0.06(벌금전입비율)×1.04075(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2,874백만원(2013년 전입금 차액)]
2016년도	94,856	[1,394,096백만원(2014년 벌금수납액)×0.06(벌금전입비율)×1.014(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10,039백만원(2014년 전입금 차액)]
2017년도	80,110	[1,348,957백만원(2015년 벌금수납액)×0.06(벌금전입비율)×1.017(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2,203백만원(2015년 전입금 차액)]
2018년도	80,110	[1,362,766백만원(2016년 벌금수납액)×0.06(벌금전입비율)×1.01706(4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3,051백만원(2016년 전입금 차액)]

* 자료: 법무부

173)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201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의 산출 산식을 변경하여 2017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전입금 차액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인 계획액을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되, 매년 발생하는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 기금 납입액 간 차이(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최소 27억원, 최대 243억원)가 5년이상 정산되지 않았음.

〈최근 5년 간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별 금	계획액(A)	1,511,440	1,664,996	1,424,025	1,424,025	1,677,985	1,139,679	1,091,646
	수납액(B)	1,230,209	1,162,450	1,083,496	1,143,747	1,020,899	1,064,874	1,242,814
	수납률	85.4	69.8	76.1	80.3	60.8	93.4	113.8
일 반 회 계 전 입 금	계획액(C)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94,200	94,200
	수납액(D)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94,200	94,200
	법정전입금액 (E=B*법정납입비율 ¹⁷⁴) (B*6%)	77,413	69,747	65,010	68,625	81,672	85,190	99,425
	법정전입금액과 수납액의 차이 (D-E)	2,697	10,363	17,430	13,815	24,382	9,010	-5,225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 정산 규정 부재 등으로 2019회계연도부터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¹⁷⁵⁾은 명확히 정부로 하

174) 과거 동법 시행령에서는 전입 비율을 6%로 정하고 있었으나,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액의 감소 추이와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2018년 1월 시행)”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 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전입비율을 종전의 6%에서 8%로 상향하였고, 2021회계연도 계획액부터 8%의 전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여금 “집행된 벌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획안과 법정전입금액 간 차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음.

-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는 2023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법정전입금 관련 법령준수를 위한 정산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¹⁷⁶⁾

○ 다음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일반회계의 벌금 및 과료 예산안과 범죄 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간 연계·편성이 되지 아니하여 계획안의 편성 근거 및 정합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음.

- 즉, 법령이 정한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는 “집행된 벌금 수납액×8%”이므로, 연도말 벌금 수납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인 벌금 및 과료 예산안과 이를 기준으로 한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이 연계·편성되어야

17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176) 2023회계연도 법제사범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시정요구명: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지적사항: 법정 전입금액(집행된 벌금액 × 8%)이 아닌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여,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 기금납입금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결산 시 법령에서 정부로 하여금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집행된” 벌금액에 8%를 곱한 금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

함. 그러나 2025년도 벌금 및 과료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23년 수납액 수준인 전년대비 22.6%로 증액 편성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은 최근 3년 간 벌금수납액 평균 수준인 전년대비 3.1%로 증액 편성되어, 두 사업의 계획안 편성에 있어 연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2023-2025회계연도 벌금 및 과료와 일반회계전입금 편성 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벌금 및 과료 예산안 편성 근거	일반회계전입금 편성 근거
2023 년도	최근 3년(2019~2021) 수납액 평균 수준 1,091,091	최근 5년(2017~2022) 평균 벌금수납액 수준 94,200 [1,188,900 ('17년 1,342,139 + '18년 1,215,520 + '19년 1,137,471 + '20년 1,179,379 + '21년 1,069,936) / 5] × 0.08
2024 년도	전년 수준 1,091,091	최근 3년(2020~2022) 평균 벌금수납액 수준 86,121(△8,079) [1,076,507 ('20년 1,143,747 + '21년 1,020,899 + '22년 1,064,874) / 3] × 0.08
2025 예산 안	수납 증가 추세 고려, ' 23년 수납액 수준 1,337,329	최근 3년(2020~2023) 평균 벌금수납액 수준 88,762(2,641) [1,109,529('21년 1,020,899 + '22년 1,064,874+ '23년 1,242,814) / 3] × 0.08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한 계획액과 법정전입금액 간 차액 정산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과 벌금 및 과료 예산안 산출·편성을 연계함으로써, 계획안의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지 출 ◆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가) 계획안 개요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은 범죄피해자 상대 상담과 경제·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지원하고,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위탁운영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3억 4,300만원(1.6%) 증액 편성된 214억 4,200만원임.

〈2025년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115	21,099	21,099	21,442	343	1.6

- 동 사업은 ①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을 지원·운영하기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스마일센터 운영”(스마일센터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법무부 직접수행, 신규), ② 범죄피해자에게 치료 및

자립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경찰청 직접수행),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민간경상 보조), ③ 범죄피해 현장정리를 지원하고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현장정리”(경찰청 직접수행), “범죄피해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지원사업” 등 8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각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2023년도		2024년도 (24년 7월 말)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합 계	17,270	17,115 (16,788)	21,099	13,379 (10,225)	21,442	343	1.6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	—	3,100	753	1,343	△1,757	△56.7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3,855	3,855 [3,840]	4,516	3,118 (2,119)	5,267	751	16.6
스마일센터 운영	8,263	8,150 (7,837)	8,335	6,353 (4,431)	8,571	236	2.8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3,503	3,465	3,300	2,008	4,413	1,113	33.7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508	508 (508)	708	530 (303)	708	—	—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396	409	235	409	—	—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	412	412	309 (289)	412	—	—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320	329	320	71	320	—	—

(나)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종사자 교육의 집행 및 실적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2개의 교육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의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를 교육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이하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이라고 함) 예산 1억 5,000만원(400명×375,000원)이 편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는 법무부 산하 위탁운영기관인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법무부 등록법인¹⁷⁷⁾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를 교육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이하 “센터 종사자 교육”이라고 함) 예산 5,000만원(100명×500,000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두 사업 최근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안 편성 기준 대비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이 축소 운영되는 등 교육실적이 미흡하고, 실

1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일부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교육의 실적 및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먼저,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의 2024년도 계획액 및 2025년도 계획안 1억 5,000만원(400명×375,000원)은 400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 교육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상·하반기 각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산 편성기준 대비 실제 교육규모가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 간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종사자 교육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구분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센터 종사자 교육
2023 년도	계획액	—	5,000만원 = 160명 × 312,500원
	집행액	—	7,273만원 = 61명 × 1,192,295원
2024 년도	계획액	1억 5,000만원 = 400명 × 375,000원	5,000만원 = 160명 × 312,500원
	집행액	1억 5,000만원 = 300명(예정) × 500,000원	5,000만원 = 140명(예정) × 357,143원
2025년도 계획안		1억 5,000만원 = 400명 × 375,000원	5,000만원 = 100명 × 500,000원

* 자료: 법무부

- 다음으로, ‘센터 종사자 교육’의 2024년도 계획액 5,000만원(160명×312,500원)은 160명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140명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 사업 또한 예산 편성기준 대비 실제 교육규모는 축소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동 사업은 2023년도에도 160명을 기준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 과정에서는 당초 편성 예산을 초과하여 7,273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실제 교육 이수인원은 61명(고급교육 19명, 연수교육 42명)으로 계획 대비 50% 미만이었 고, 계획 대비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기본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 며, 고급교육은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축소 실시하였음. 그럼에도 법무부는 예산을 초과하여 계약한 당초 전적대로 7,273만원의 대금 을 정산없이 용역업체에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발생시킨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집행방식을 개선 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음.¹⁷⁸⁾

- 따라서 법무부는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과 ‘센터 종사자 교육’ 사 업은 예산 편성 시 제출된 계획보다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점, 관 련 교육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의 국회 시정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적 및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78) 202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시정요구명: 예산 과다집행 및 정산절차 미이행 등 개선 필요

시정요구 유형: 주의

지적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 5,000만원을 초과 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7,273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타 내역사업 예산을 혼용 집행 하였으며,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미흡한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예산혼용이 재 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 예산을 “홍보·협의·점검 등”의 일반용역비로 단일 편성하며, 계약 체결 시 구체적 인 정산사항을 명시하여 수행용역 대비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가) 계획안 개요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사업은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을 대상으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이전비·임시숙소 숙박비 또는 민간경호를 지원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20억 9,400만원(60.8%) 증액 편성된 55억 4,000만원임.

〈2025년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2,521	3,446	3,446	5,540	2,094	60.8

- 동 사업은 신변보호장치(법무부-경찰청·검찰청 직접수행), 이전비 지원(법무부-검찰청 직접수행), 임시안전숙소(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직접수행) 및 민간경호지원(법무부-경찰청 직접수행)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내역사업별 2025년도 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2023년도		2024년도 (24년 7월 말)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합 계	3,564	2,521	3,446	1,798	5,540	2,094	60.7
신변보호장치	2,404	1,375	2,045	1,100	2,362	317	15.5
이전비지원	200	200	200	158	200	—	—
임시안전숙소	960	960	1,201	540	528	△673	△56.0
민간경호지원	—	—	—	—	2,450	2,450	순증

(나) 신변보호장치 예산 감액 및 임시안전숙소 예산 증액 조정 필요

- 동 세부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신변보호장치” 사업의 집행을 부진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미흡평가를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2025년도 동 세부사업 예산의 내역사업별 계획안을 살펴보면, 집행이 부진했던 신변보호장치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1,700만원(15.5%) 증액되어 23억 6,200만원이고, 임시안전숙소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7,300만원(56%) 감액되어 5억 2,800만원이며, 신규 내역사업인 민간경호지원 사업예산이 24억 5,000만원 편성되면서, 동 세부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보다 오히려 20억 9,400만원 증액(60.7%)된 5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에 대해 법무부 및 경찰청은 “신변보호장치” 사업은 신형 장비 도입 과정에서 2023년만 일시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했을 뿐, 2024년부터는 전액 정상집행이 가능하며, 매년 일정금액이 장비사용료로 소요되어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하므로, 임시안전숙소 예산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 내에서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피해자 1인당 지원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① 2024년도 현재 신변보호장치 보유대수 대비 지급실적을 고려할 때, 현재 보유분만으로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변보호장치 신규 확보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감액조정이 필요하고, ② 운용실적이 매우 미흡한 경찰청 보유분은 축소하고 경찰청 사업과 통합·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며, ③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실수요 대비 과소 편성된 “임시안전숙소” 사업에 재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먼저, 최근 5년 간 위치확인장치 보유대수 및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보유기기 1대당 지급횟수는 연간 최대 3.67회이므로, 2025년도에 신규구매 없이 2024년도 보유분 7,872대로 28,890건 정도의 신청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추산되어 연내 지급수요 17,000여건 이상¹⁷⁹⁾에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25년도 경찰청의 신규 장치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3억 5,758만원(1,268대×282,000원)

179) 2024년도 8월까지 지급건수(11,482)를 바탕으로 2024년 연도말 기준 지급실적을 예측하면 17,223건(11,482/8개월*12개월)임. 여기에 전년대비 증가율을 곱하여 2025년도 연내 수요를 예측하면 약 17,766건[17,223건*(17,223건/16,697건)]정도 일 것으로 보임.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6년 간 위치확인장치 보유 및 지급 실적〉

(단위: 대,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월)	2025
보유 대수 (A)	계	2,471	2,472	3,872	3,872	10,172	7,872	9,140
	경찰청	2,300	2,300	3,700	3,700	10,000	7,700	8,968
	검찰청	171	172	172	172	172	172	172
신규 구매 대수	계	2,300	172	1,400	—	6,300	—	1,268
	경찰청	2,300	—	1,400	—	6,300	—	1,268
	검찰청	—	172	—	—	—	—	—
폐기 대수	계	2,050	171	—	—	—	—	—
	경찰청	2,050	—	—	—	—	2,300	—
	검찰청	—	171	—	—	—	—	—
지급 대수 (B)	계	7,089	6,831	11,007	14,223	16,697	11,482	—
	경찰청	7,057	6,801	10,989	14,208	16,690	11,480	—
	검찰청	32	30	18	15	7	2	—
기기1 대당 지급 횟수 (B/A)	계	2.87	2.76	2.84	3.67	1.64	1.46	—
	경찰청	3.07	2.96	2.97	3.84	1.67	1.49	—
	검찰청	0.19	0.17	0.10	0.09	0.04	0.01	—

* 자료: 법무부

- 또한, 검찰청이 확보·운용중인 172대의 신변보호장치는 2023년과 2024년 지급 실적이 각각 연 7회, 연 2회(8월말 기준)여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검찰청 보유분 172대를 축소하여 최대 4,850만원(172대×28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되,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변보호장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 보유분과 통

합·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끝으로, 임시안전숙소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실수요 대비 과소 편성되어,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예산 9억 4,600만원으로는 7,038건(10,971박)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2억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집행추이상 전년에 대비하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2025년도 계획안에서는 전년대비 6억 7,000만원(56%) 감액된 5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실수요 대비 과소편성으로 보임. 따라서 앞서 감액조정을 검토한 예산의 최대치인 4억 608만원을 활용하여 실수요 대비 과소편성된 임시안전숙소 사업 예산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 간 임시안전숙소 사업 계획액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액	집 행 액	지원건수
2020년	475	475	4,668건 (7,385박)
2021년	595	627	6,569건 (9,979박)
2022년	682	682	6,954건 (10,202박)
2023년	960	946	7,038건 (10,971박)
2024. 9월	1,201	734	5,499건 (9,482박)

* 자료: 경찰청

- 종합하면, 2025년도 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변보호장치 사업의 경찰청 장치 1,268대 추가 확보 예산 및 검찰청 보유분 172대 운용 예산의 합계인 최대 4억 608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임시안전숙소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민간경호지원사업의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민간경호지원” 사업은 고위험 범죄피해자 350명을 선정하여 피해자별로 14일(1일 10시간) 동안 민간경호원 2인의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경찰청 일반회계에 연 7억원 규모로 편성된 시범사업이었으나, 2025회계연도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3.5배 증액된 24억 5,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수도권 100명에서 전국 350명으로 확대되었음.

〈민간경호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전국 고위험 범죄피해자 350명**
- **(지원 기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아래와 같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의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는 경우
 - 가해자 체포·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교도소 출소 등을 앞둔 경우
 - 가해자가 수사기관 출석, 재판 등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우
 - 가해자가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협 언동을 보였으나 도주·잠적하는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체포·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 추가피해 위험이 커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필요한 사유 등을 시도경찰청 승인 요청 공문에 상세히 기재하여 경찰서장 결재 후 송부
- **(지원 기간) 14일 이내**로 하고(가해자 구속 등 위험 해소시 조기 종료), 필요시 시도경찰청과 협의하여 1회(14일 이내) 연장 가능

※ 민간경호는 장기간 지원이 곤란하므로 신속한 위험 해소를 위해 △가해자 수사(체포·구속·유치 등) △피해자 거소 이전 등 적극 추진
- **(경호 시간) 민간경호인 2인 하루 10시간 지원을 기준으로** 하되, 자영업·회사원·학생 등 피해자의 신분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절차)** ① 안전조치 신청(피해자) → ② 위험성 판단(담당 수사관) → ③ 안전조치 심사위 개최 및 지원 결정(사건 담당 과장 주관) → ④ 시도경찰청 승인 → ⑤ 경호계획 수립(피해자·수사관·피해자보호담당·경호업체 참여) → ⑥ 경호 지원 개시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동 사업은 ①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지원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 건당 비용은 매우 높아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및 비용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② 민간경호원의 책임한도 및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과소·과잉대응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③ 일부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민간경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 없이 대폭 확대할 경우 사업체계의 분절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에 대한 신중한 접근·분석 후 확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대폭 확대되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데, 범죄피해자 발생건수 대비 지원대상·기간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 건당 소요비용이 매우 높은바,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의 적정성·지속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023년도의 경우 연간 10만 건 이상이고 증가하는 추세임.¹⁸⁰⁾ 반면, 동 사업을 통해 민간경호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연간 350명 정도이고, 범죄피해자 중 극소수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이어서,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0) <최근 5년 간 연도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건수>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9월
스토킹 신고	4,515	14,509	29,565	31,824	23,181
교제폭력 신고	49,225	57,305	70,790	77,150	64,246

* 자료: 경찰청

- 무엇보다도, 집행방식에 있어 스톱·교제폭력 범죄는 발생기한을 정하기가 곤란함에도 동 사업은 14일 동안, 하루 10시간이라는 일시적·제한적 서비스에 700만원의 비용을 제공하며, 1개월 기준으로는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경호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찰공무원의 월 인건비 수준¹⁸¹⁾과 비교할 때 높은 단가를 보임.
- 고비용이 소요되고 지원대상이 한정적인 동 사업의 특성은 범죄피해자 등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타 내역사업들과 비교하는 경우 더욱 명확해짐. 2025년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계획안 중 민간경호지원사업은 소요예산 비중이 44.2%로 가장 높으나, 지원인원 비중은 전체의 1.6%인 350명에 그쳐 소요예산 대비 지원인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등 비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인원	인당 평균지원금액	총 예산 (2025년도 계획안)
민간경호지원	14일간 일 10시간 민간경호 원 2인이 경호	350명 (1.6%)	700만원	24억 5,000만원 (44.2%)
신변보호장치	긴급신고·위치전송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최대 6개월 제공	16,690명 (75.9%)	14만 1,522만원	23억 6,200만원 (42.6%)
이전비지원	보복범죄를 피하기 위한 거주 이전 비용지원	200명 (0.9%)	100만원	2억원 (3.6%)
임시안전숙소	보복범죄를 피하기 위해 1-5일 간 숙박업소 임시거주 비용지원	4,743명* (21.6%)	11만 1,322원	5억 2,800만원 (9.5%)
계		21,983명 (100%)	25만 2,013원	55억 4,000만원 (100%)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 가공

(임시안전숙소 사업의 경우 2023년도에 1건(명) 당 평균 1.523박을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 계획안(7,223박 지원)에 따른 예상지원인원 산출)

18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순경 1호봉의 월지급액은 187만 7000원이고, 가장 높은 치안정감(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 다음의 두 번째 상위 계급) 23호봉의 월지급액은 773만 9,200원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피해자 보호·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비용효율성 및 지원의 형평성을 충실히 고려해야하므로, 신변보호 강화사업 예산 중 44.2%를 활용하여 1.6%의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사업의 내재적인 한계인 민간경호원의 책임한도 및 제한된 권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민간경호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공권력 행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음. 반면, 과잉경호나 사생활침해 등 권한 남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음. 또한, 민간경비업체는 정규직 배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경호원이 배치될 경우¹⁸²⁾ 책임성 및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음.

182) 과업내용서

제10조(배치 인원) ① 경호대상자 1명당 배치 인원은 2인 이상을 1조로 하여 1개조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경호원은 경호업체의 정규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직원이 아닌 경호원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조별로 1명 이상은 반드시 정규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 끝으로, 이미 일부 지자체가 유사한 민간경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나 추진체계를 점검하지 않은 채 사업을 확대할 경우 사업집행의 통일성·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서울, 부산, 경남, 광주, 울산, 전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민간경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2025회계연도 계획안에 따라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경호지원 사업 추진 현황 비교〉

구분	경찰청	서울청	부산청	경남청	광주청	울산청	전북청
운영시기	'23. 6월~	'23. 10월~	'23. 10월~	'23. 6월~	'24. 4월~	'24. 7월~	'24. 9월~
지원대상	최종 불문 고위험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최종 불문 고위험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최종 불문 고위험 피해자
지원기간	14일 이내 (14일 연장 可)	7일 이내 (7일 연장 可)	5일 이내 (5일 연장 可)	3일 이내 (15일 연장 可)	10일 이내 (연장 불가)	7일 이내 (10일 연장 可)	7일 이내 (7일 연장 可)
사업예산	7억원 (경찰청)	2억 2,000만원 (자치단체)	5,000만원 (자치단체)	5,600만원 (자치단체)	1억원 (관내기업 조성기금)	5,800만원 (자치단체)	3,000만원 (적십자 기탁금)

* 자료: 경찰청

- 특히, 2023년도 및 2024년도 경찰청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수도권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평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2025년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추진할 경우, 분절적인 사업추진은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 통일성·효율성 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편성된 민간경호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확대 이전에 기존 시범사업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기금 재원 중 배정 비중은 높으나, 비용 대비 지원인원이 매우 한정적인 사업에 제기되는 지원요건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 등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동 사업은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 계획안 개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1136-305)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비전담 국선변호사 수당 지원, 관련 교육·홍보·점검을 수행하는 보조·직접 병행¹⁸³⁾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9억 3,500만원(7.4%) 증액 편성된 134억 9,500만원임.

〈2025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4	12,560	12,560	13,495	935	7.4

- 동 사업은 ①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 및 배치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운영”(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경상보조), ② 비전담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지급하는 “국선변호사 수당”(법무부 직접수행), ③ 국선변호사 대상 전문화 교육,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¹⁸³⁾ 국선전담변호사 채용·교육 등 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간경상보조(100%)형태로 수행하며, 그 외 사업은 법무부가 직접수행함.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교육, 홍보, 점검”(직접수행)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각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2023년도		2024년도 (24년 7월 말)		2025년 계획안 (B)	증감 (B-A)	(B-A)/ A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합 계	9,707	9,704 (9,237)	12,560	7,603 (6,303)	13,495	935	7.4
국선변호사 수당	5,415	5,412	7,585	3,889	7,585	—	—
교육, 홍보, 점검	59	59	59	27	59	—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4,233	4,233 (3,766)	4,916	3,687 (2,387)	5,851	935	19.0

(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체계 재검토를 통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예산 일부 감액 조정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사업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 및 배치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함.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억 3,500만원(19%)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건비 증액분임.

- 법무부는 2013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당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월급여를 법원의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 수준에 맞추어 6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월급여는 10년 이상 동결되어왔

음. 이에 2025년도 계획안은 법원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의 보수체계와 같이 경력에 따른 보수 인상 방식을 도입하여, 2년 미만은 월 600만원, 2년 이상 4년 미만은 월 700만원, 4년 이상은 월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 및 2025년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계획액(안) 편성내역>**

(단위: 천원)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내역	산출근거	금액	내역	산출근거	금액	
가.인건비		3,581,960	가. 인건비		4,338,360	756,400
1) 기존 43명	43명*6,010,000원*12월=	3,101,160	1) 2년 미만	25명*6,010,000원*12월=	1,803,000	
2) 증원 10명	10명*6,010,000원*8월=	480,800	2) 2년 이상 4년 미만	13명*7,010,000원*12월=	1,093,560	
			3) 4년 이상	15명*8,010,000원*12월=	1,441,800	
나.고용부담금		718,993	나.고용부담금		848,294	129,301
1)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400,463	1)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486,764	86,301
가) 기존 43명	43명*6,010,000원*12월*11.18%=	346,710	가) 2년 미만	25명*6,010,000원*12월*11.22%=	202,297	
나) 증원 10명	10명*6,010,000원*8월*11.18%=	53,753	나) 2년 이상 4년 미만	13명*7,010,000원*12월*11.22%=	122,697	
			다) 4년 이상	15명*8,010,000원*12월*11.22%=	161,770	
2)퇴직금 적립	53명*6,010,000원=	318,530	2)퇴직금 적립		361,530	43,000
			가) 2년 미만	25명*6,010,000원=	150,250	
			나) 2년 이상 4년 미만	13명*7,010,000원=	91,130	
			다) 4년 이상	15명*8,010,000원=	120,150	

-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과 비교 시 초임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이 없어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신규 채용 지원률이 저조한 등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2025년도 계획안에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서도 경력에 따른 보수 인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경험이 축적된 우수인력을 유지하여 전문적이고 연속성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용 계약을 맺고 대부분 공단 각 지부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동일 경력 대비 공단 소속변호사의 보수 수준과 비교할 때 금년도에 반영된 보수 인상 수준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
- 2025년도 계획안에 반영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연봉과 공단 소속변호사(다급)의 연봉을 비교할 때, 1년차(1호봉)는 900만원, 2년차(2호봉)는 1,800만원, 4년차(호봉)는 2,50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함. 또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고용 재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기제변호사와 연봉을 비교하더라도, 1년차는 200만원, 2년차는 1,200만원, 4년차는 2,200만원 가량의 연봉 차이가 발생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임기제변호사 간 연봉 비교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025년도 계획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다급 소속변호사(호봉제) (2023년도 지급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변호사 (2023년도 지급기준)	
1년차	72,000,000원	1호봉	62,827,296원	1년차	70,000,000원
2년차	84,000,000원	2호봉	65,853,484원	2년차	71,960,000원
3년차	84,000,000원	3호봉	68,961,908원	3년차	72,607,640원
4년차	96,000,000원	4호봉	70,953,828원	4년차	73,624,147원
5년차	96,000,000원	5호봉	73,014,356원	5년차	74,875,757원
6년차	96,000,000원	6호봉	76,334,076원	6년차	76,747,651원
7년차	96,000,000원	7호봉	78,504,780원	7년차	79,050,081원
8년차	96,000,000원	8호봉	80,724,012원	8년차	80,986,808원
9년차	96,000,000원	9호봉	82,974,156원	9년차	82,970,985원
10년차	96,000,000원	10호봉	85,262,922원	10년차	85,003,774원
11년차	96,000,000원	11호봉	87,570,004원	11년차	87,086,366원

* 자료: 법무부

- 또한, 2023년도 공단의 다급 소속변호사(1호봉~30호봉) 평균연봉은 약 91.4백만원, 나급 소속변호사(1호봉~28호봉) 평균연봉은 110.7백만원, 가급 변호사(1호봉~14호봉) 평균연봉은 144.4백만원이며, 현재 공단은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부족 문제로 향후 호봉제는 폐지하고 직무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동일 경력 대비 공단 소속·임기제변호사의 보수수준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 기준 연차를 조정하는 등 보수체계를 재검토하여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인상분을 일부 감액 조정함으로써,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공단 소속변호사와 임기제변호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